

행정자료를 활용한 서울시의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연구(2차 연도)



### 연구책임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실장

#### 연구진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김동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서준영 가천대대학교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원

최혜은 가천대대학교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원

이혜림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배세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팀장

## 행정자료를 활용한 서울시의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연구(2차 연도)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에 대한 평가

2020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서울시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연구의 1차연도 보고서에 이어서 2021년에 2차연도 보고서를 진행하게 되었다. 1차연도 보고서에서 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서울시의 소득분포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소득분배를 위한 연구자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1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주로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인구주택총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인구학적 대표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국세통계연보와의 비교를 통해서 건강보험 공단 자료가 각 소득의 소득자 수를 얼마나 많이 포괄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하지 만 1차연도 연구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것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국세청의 소득 파악률 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 파악률이 차이가 없다면, 그 소득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경험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정보가 과연 조사자료를 대체할 만큼 신뢰하고 정확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1차연도 보고서에서도 확인해보지 못했던 건강보험공

단 자료의 소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 공식 소득분배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주로 비교했다. 가계금융복지조 사는 2010년부터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5년 귀속소득부터는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행정 정보를 제공 받아 조사자료를 보완했다. 가계금융복지조 사의 고소득층에 대한 표본(sampling) 오류가 있지만(김낙년, 2020), 조사자료와 행 정자료의 결합으로 인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정확도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받 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김 낙년(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대한 비교 가능하게 소득을 조작적 정의를 했다. 건 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비교한 결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파악 문제 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과 자활급여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소득 평균에 비해서 낮다. 둘 째,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사업소득 평균이 모든 분위에서 낮다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소득을 낮게 신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 다. 셋째, 낮은 금융소득자 비율의 문제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확인가능한 금융 소득자의 비율은 61.1%이지만, 건강보험공단자료에서 확인가능한 금융소득자의 비 율은 0.7%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청이 모든 금융소득자의 금융소 득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금융소득 중 2천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 에만 과세를 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고 있다. 2019년 소득자료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천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까지 포함함으 로써 금융소득자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소득분배와 관련 된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 득 자료를 이용할 때,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주요 인구집단에 대한 심층 분석

1차연도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소득분포 현황을 보여주 었다면,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주요 인구집 단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주요 인구집단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청년 가구로 선정하였다. 서울시의 1인 가구의 숫자가 다른 지역자치단체보다 많으며,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청년 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1인 가구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서울시의 1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로 확인했을 때, 청년층의 1인 가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1인 가구의 경제적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인 가구의 연령을 고려해서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소득분포를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례 수의 한계로 1인 가구와 연령을 교차해서 분석하기 제한적이지만 사례 수가 많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소득분포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분석 결과, 1인 가구중에서 가장 취약한 연령 집단은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집단이다. 그리고 30대와 40대 1인 가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외로 50대 1인 가구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의 청년 집단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청년 가구 특성이 청년의 경제적 상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연령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청년 가구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이 소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소득과 관련 된 연구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조사자료에서 적은 사례 수로 분석할 수 없었던 것을 많은 사례 수를 이용해서 세부 하위 집단으로 구분 해서 더 세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큰 장점이다.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한계와 가능성

2차연도 보고서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소득 비교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소득정보가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앞서 서술하였듯 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의 정보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정보보다 신뢰도가 부 족하다. 둘째, 가처분소득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는 가계금 융복지조사와 다르게, 시장소득과 일부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가처분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세금과 사회보험료와 같은 정보들이 필요한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는 해당 정보들이 부재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소득분배와 관련된 연구에 활용되기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되어 야 할 부분은 가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OECD의 기준에 따라서 가구를 정의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수집된 가구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소득분배 연구의분석자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구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은 매우 높다. 첫째, 행정자료로서 사례 수가 많다. 맞춤형 DB 신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최대사례 수가 천만 명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례 수가 4만명에서 5만명인 것에 비하면,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사례 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널 자료로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같이 장기간의 패널로 활용될 수 없다. 그리고 패널조사자료 중에서도 탈락(attrition)없이 이렇게 많은 사례 수를 패널로 구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행정자료 혹은 다른 조사자료와 의 결합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의 결합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목차

01.서론	2
1_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_건강보험공단 자료 소개	5
3_연구 방법	8
02.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16
1_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개념 비교	16
2_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개념 비교	22
3_인구·사회적 특징 비교	24
4_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균등화 개인 총소득 평균 비교	36
5_개인 특성별 균등화 총소득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37
03.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교	41
1_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득개념 비교	41
2_인구·사회적 특징 비교	43
3_근로소득 10분위별 근로소득 평균	45
04.서울시 소득 분포 추이	50
1_소득원천별 개인소득 분포 추이	50
2_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분포 추이	57
3_서울시 소득원천별 소득분배 추이	62
05.서울시 1인 가구의 소득분배 현황	68
1_서울시 1인 가구에 관한 연구	68

2_가구원 수와 연령의 교차분석	71
3_개인 기준 가구원 수별 균등화 평균소득	77
4_1인 가구 연령대별 균등화 평균소득 시계열 추이	79
06.서울시 청년층 소득 분포	84
1_서울시 청년층의 소득에 관한 연구	84
2_서울시 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징	87
3_청년 개인의 총소득과 균등화 총소득 분포	92
4_청년 가구 유형과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분포	100
5_청년 개인 특성별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102
07.부동산 자산 분포 추정	106
1_건보 자료상의 자산자료의 이해	106
2_건보 자료상의 부동산 자산 분포	111
3_부동산 총자산의 원천별 요인 분해	121
4_자산 분위별 전체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127
5_소결	133
08.소득 이동성 분석	136
1_서론	136
2_분석 지표와 자료	141
3_분석 결과	147
09.결론 <del></del>	153
1_주요 발견 요약	153
2_연구의 의의와 한계	163
참고문헌	166

# 표 목차

[丑	1-1]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재산DB와 국세청의 소득 정의 비교	Ĝ
[丑	2-1]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원천별 소득금액 출처	17
[丑	2-2] 가계금융복지조사 보완 행정자료 및 보유기관	19
[丑	2-3]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 변수 비교	21
[丑	2-4] 가구주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24
[丑	2-5]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26
[丑	2-6] 가구주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총소득)	28
[丑	2-7] 가구주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근로소득)	29
[丑	2-8] 가구주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사업소득)	30
[丑	2-9] 가구주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금융소득)	30
[丑	2-10] 가구주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공적연금소득)	31
[丑	2-11]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	32
[丑	2-12]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근로소득)	34
[丑	2-13]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사업소득)	34
[丑	2-15]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금융소득)	35
[丑	2-16]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공적연금소득)	35
[丑	2-17] 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개인 균등화 총소득 평균 비교	36
[丑	2-18] 개인 특성별 균등화 총소득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37
[丑	2-19] 소득원천별 균등화 소득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38
[丑	2-20] 소득원천별 균등화 소득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만 60세 이상)	39
田	3-1]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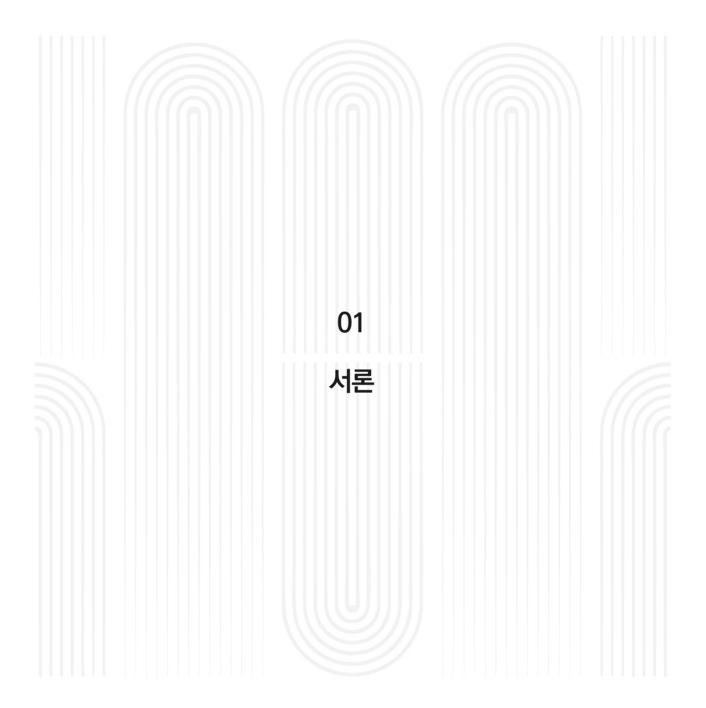
[표 3-2]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근로소득 평균 비교	44
[표 3-3] 10분위별 근로소득 평균(근로소득자만, 성별)	45
[표 3-4] 10분위별 근로소득 평균(근로소득자만, 연령, 건강보험공단 자료)	46
[표 3-5] 10분위별 근로소득 평균(근로소득자만, 연령, 경제활동인구조사)	46
[표 4-1] 근로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근로소득자, 서울)	51
[표 4-2] 근로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근로소득자, 전국)	51
[표 4-3] 사업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사업소득자, 서울)	52
[표 4-4] 사업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사업소득자, 전국)	52
[표 4-5] 금융소득·기타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금융·기타소득자, 서울)	53
[표 4-6] 금융소득·기타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금융·기타소득자, 전국)	53
[표 4-7] 공적연금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공적연금소득자, 서울)	55
[표 4-8] 공적연금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공적연금소득자, 전국)	55
[표 4-9] 총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총소득자, 서울)	56
[표 4-10] 총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총소득자, 전국)	56
[표 4-11] 가구 근로소득의 시계열 추이(서울)	57
[표 4-12] 가구 근로소득의 시계열 추이(전국)	57
[표 4-13] 가구 사업소득의 시계열 추이(서울)	59
[표 4-14] 가구 사업소득의 시계열 추이(전국)	59
[표 4-15] 가구 금융소득의 시계열 추이(서울)	60
[표 4-16] 가구 금융소득의 시계열 추이(전국)	60
[표 4-17] 가구 총소득의 시계열 추이(서울)	61
[표 4-18] 가구 총소득의 시계열 추이(전국)	61
[표 4-19] 균등화 개인 총소득의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변화(서울)	62
[표 4-20] 균등화 개인 총소득의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변화(전국)	62
[표 4-21] 균등화 소득원천 추가에 따른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변화(2016년~2018년	, 서울) 64
[표 4-22] 균등화 소득원천 추가에 따른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변화(2019년, 서	1울) 64
[표 4-23] 균등화 소득원천 추가에 따른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변화(2018년, 2019년,	, 전국) 65
[표 5-1]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의 교차표(서울, 가구)	71
[표 5-2]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의 교차표(서울, 가구)	72
[표 5-3]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의 교차표(전국, 가구)	73

[표 5-4]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의 교차표(전국, 가구)	73
[표 5-5] 가구원 수와 개인 연령의 교차표(서울)	75
[표 5-6] 가구원 수와 개인 연령의 교차표(전국)	76
[표 5-7] 가구원 수별 평균 균등화 소득(서울)	77
[표 5-8] 가구원 수별 평균 균등화 소득(전국)	78
[표 5-9] 1인 가구 연령별 균등화 평균 소득원천 시계열 추이(서울)	79
[표 5-10] 1인 가구 연령별 균등화 평균 소득원천 시계열 추이(전국)	81
[표 6-1] 서울시 청년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87
[표 6-2] 서울시 청년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구 유형 교차표	88
[표 6-3] 서울시 청년 개인의 연령과 가구원 수 교차표(주민등록세대)	89
[표 6-4] 서울시 청년 개인의 연령과 가구원 수 교차표(인총가구)	89
[표 6-5] 서울시 청년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90
[표 6-6] 서울시 청년 가구의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 교차표	91
[표 6-7] 서울시 청년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	92
[표 6-8]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청년 전체, 주민등록	93
[표 6-9]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청년 전체, 인총가구	94
[표 6-10]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청년 가구주, 주민성	등록) 95
[표 6-11]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청년 가구주, 인총	7구) 96
[표 6-12]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청년 가구원, 주민성	등록) 96
[표 6-13]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청년 가구원, 인총	7구) 96
[표 6-14] 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개인 특성 비율(주민등록세대)	97
[표 6-15] 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개인 특성 비율(인총가구)	98
[표 6-16] 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개인 특성 비율(주민등록세대)	99
[표 6-17] 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개인 특성 비율(인총가구)	99
[표 6-18] 서울시 청년 가구의 유형별 소득 평균(총소득)	100
[표 6-19] 청년 가구 총소득 10분위별 소득원천 평균 소득(주민등록세대)	101
[표 6-20] 청년 가구 총소득 10분위별 소득원천 평균 소득(인총가구)	101
[표 6-21] 청년 개인 특성별 균등화 총소득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102
[표 7-1] 부동산 총자산 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125
[표 8-1] 표보이 자녀아 브(아버지)이 축생여도아 여력	147

[丑	8-2]	소득에	대한	OLS	탄력성	추정	결과	1						148
[丑	8-3]	소득에	대한	OLS	탄력성	추정	결과	2(통제	변-	수 포함)				148
[丑	8-4]	소득에	대한	OLS	탄력성	추정	결과(	가구자(	산	설명변수	포함)			149
[丑	8-5]	소득에	대한	OLS	탄력성	추정	결과(	가구자(	산	설명변수	포함,	통제변수	포함)	149
[丑	8-6]	지역별	OLS	추정	결과									150
[丑	8-7]	소득 1	00 분	위에	대한 O	LS 틴	력성	추정 걸	결과	ł				151
[丑	8-8]	소득 1	00 분	위에	대한 O	LS 틴	력성	추정 걸	결과	(통제변수	· 포함)	)		151

# 그림 목차

[그림 7-1] 서울시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 대비 재산세 과세표준액 비율(%) 추이	110
[그림 7-2]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액 규모(백만 명, 억 원)	111
[그림 7-3] 서울시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액 규모(백만 명, 억 원)	112
[그림 7-4] 서울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액 규모(백만 명, 억 원)	113
[그림 7-5] 서울시 건축물의 보유자 수 및 불평등도 추이	114
[그림 7-6] 서울시 건축물의 분위별 점유율(%) 및 배율(배) 추이	115
[그림 7-7] 서울시 토지의 보유자 수 및 불평등도 추이	116
[그림 7-8] 서울시 토지의 분위별 점유율(%) 및 배율(배) 추이	117
[그림 7-9] 서울시 주택의 보유자 수 및 불평등도 추이	118
[그림 7-10] 서울시 주택의 분위별 점유율(%) 및 배율(배) 추이	119
[그림 7-11] 서울시 부동산 총자산의 보유자 수 및 불평등도 추이	120
[그림 7-12] 서울시 부동산 총자산의 분위별 점유율(%) 및 배율(배) 추이	121
[그림 7-13] 서울시 건축물의 자산 분위별 전체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130
[그림 7-14] 서울시 토지의 자산 분위별 전체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131
[그림 7-15] 서울시 주택의 자산 분위별 전체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132
[그림 7-16] 서울시 부동산 재산의 자산 분위별 전체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133
[그림 8-1] 계층 간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137
[그림 8-2] 해외 기관들이 제시한 한국의 사회이동성 지표	138
[그림 8-3] OECD와 Worldbank가 제시한 한국의 사회이동성 지표	139
[그림 8-4] OECD와 Worldbank가 제시한 한국의 사회이동성 지표	140



1\_연구의 배경과 목적 2\_건강보험공단 자료 소개 3\_연구 방법

## 0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 ㅇ 최근 국내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음.
  - 국외에서는 일찍이 여러 행정기관의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많은 사례수의 정확한 자료로 양질의 양적 자료를 구축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한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실천하고 있음(김승연 외, 2020; 유종성 외, 2020).
  - 국내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지만(유종성 외, 2020),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 그리고 2020년 8월 개인정보보 호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함께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여러 행정기관의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수급 실태를 확인하는 시도가 있었고(이현주외, 2019),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예상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였음(손병돈 외, 2017).
  - 그리고 2020년 본 보고서의 1차연도 보고서의 경우에, 서울연구원과 가천대학교 불평등연구소가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과 재산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소득과 재산의 빈곤과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였음 (김승연 외, 2020).
- ㅇ 기존의 다른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달리.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

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1차연도 보고서는 큰 의의가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직장 가입자의 소득 정보와 국세 청의 과세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인별로 정 리하여 소득재산DB를 구축하였음.
- 1차연도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재산DB를 이용하여 서울 시의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한 첫 연구성과물로서 의미가 있음.
- 1차연도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재산DB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의 소득과 재산의 분포 시계열 추이를 보여주었음.
-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많은 조사자료들은 시군구 단위까지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고, 지역 정보가 제공되어도 각 시군구에 속한 사례 수가 적어서 값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건강보험 공단 자료는 행정자료로서 분석 가능한 대상자 수가 많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 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의 분석도 가능함.
- 1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장점을 살려서, 서울시의 지역구별 소득분배 및 재산분배 현황을 분석한 연구로서, 기존의 조사자료로 분석이 불가능했던 분석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었음.
-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의의와 한계를 도출하여, 국내의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이바지를 하였음.
- 1차연도 보고서가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이용하여 전 반적인 소득과 재산의 분배 현황을 보았다면, 2차연도 보고서인 본 보고 서는 1차연도 보고서에서 더 나아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도를 고취시키고자 함.
  - 1차연도 보고서가 국세청의 소득신고자 현황과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 및 가구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 현황에 더 초점을 맞춰서 평가할 예정임.
  - 구인회 외(2019)의 연구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합한 행정자료를 평가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조사자료인 가계금융복지

조사와 비교하였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조사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비교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예정.
- 1차연도 보고서에서는 2006년~2018년의 서울시, 전국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었음. 2차연도 보고서인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시의 주요한 인구집단인 1인 가구와 청년 가구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그리고 재산 불평등과 소득 이동성에 대한 정교하고 심층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임.
- 1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주민등록세대를 중심으로 가구 단위 분석을 진행하였음.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주민등록세대 뿐만 아니라, 인구주택 총조사와 유사한 가구 개념을 적용하여 가구 단위 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 2) 연구의 목적

- 2차연도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1차연도 보고서의 연장 선상에서, 건강보험 공단 자료의 소득정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불평등과 소 득분배 현황을 확인하는 것임.
  - 우선, 2차연도 보고서는 행정자료인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조사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정보에 대한 평가를 할 것임.
  - 둘째, 1차연도 보고서와의 연장 선상에서 2019년 자료 분석을 추가하여, 최근 소득분배 현황의 시계열 추이를 확인할 것임.
  - 셋째, 서울시의 주요 인구집단인 1인 가구와 청년 가구의 소득분배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재산 불평등과 소득 이동성에 대한 고급통계 분석 분석을 진행할 것임.

## 2 건강보험공단 자료 소개

#### 1) 건강보험공단 자료

-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여러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민에 대한 장기간 패널데이터로 구축 가능하고, 국내 유일의 소득 관련 장기 패널데이터 자료 임.
  -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산정을 위해 여러 기관으로부터 소득과 재산, 인 구 및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관리함.
  - 이러한 정보들을 인별·연별로 정리하여 전국민에 대한 소득관련 패널데이 터인 인구사회경제DB와 소득재산DB를 구축하였음.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는 건강보험공단자료와 달리 패널 데이터가 아니며,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자료는 사회보장 현급급여 신청자에 한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통계청과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와 달리,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전국민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확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포괄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가구(세대) 개념과 소득개념은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정의를 따름.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가구(세대)는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통계청의 조사 자료의 가구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서술할 예정임.
  -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다른 조사자료와 달리, 가구 자료와 개인 자료로 구분되지 않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기본 형태는 모두 개인 자료이며, 연구자가 가구주(세대주) ID를 이용하여, 가구 자료로 구축해야 함.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과 재산은 자료를 제공받은 국세청 과세자료

의 기준과 정의를 따름. 따라서 조사자료에서 사용하는 소득의 개념과 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2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임.

- 건강보험공단은 NHISS(National Health Insurance Sharing Service)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표본과 연구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
  - NHISS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축한 표본에 대한 자료(DB)를 제 공하기도 하지만, 연구자가 특별히 신청한 표본에 대한 자료도 구축해 서 제공해주고 있음.
  - 연구자가 연구를 원하는 표본과 변수를 바탕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됨. 자료제공 승인이 나면, 2~3개월 동안 자료 구축 기간을 거쳐서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자료를 제공 받게 됨.
  - 이렇게 제공받은 자료는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건강보험 분석 센터에 서만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 분석 센터로 방문해서 분석해야 함.

### 2) 1차연도와 2차연도의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대상 비교

- ㅇ 2차연도인 본 보고서는 1차연도 보고서의 분석 대상과 차이가 있음.
- 0 1차연도 분석 대상
  - 서울시에 한 번이라도 거주한 적이 있는 개인 전수 자료 2006년부터 2018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전국민 1% 주민등록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 2006년, 2010년, 2014년,2018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o 2차연도 분석 대상
  - 서울시 및 전국 단위 분석
    - 서울시 2% 주민등록 세대주와 소속 세대원 2019년
    - 전국민 1% 주민등록 세대주와 소속 세대원 2019년
    - 서울시 2% 주민등록 세대주와 동일 주소(동단위)의 친족(1촌, 2촌 배우자, 2촌, 2촌 배우자) 2019년

- 전국민 1% 주민등록 세대주와 동일 주소(동단위)의 친족(1촌, 2촌 배우자, 2촌, 2촌 배우자) 2019년
- 사회이동성 분석
  - A. 전국 1985년생~1990년생 출생자 개인 5%의 2003년~ 2019년
  - B. 전국 1955년생~1995년생 출생자 개인 1%의 2003년~ 2019년
  - C. 전국 1985년생~1990년생 출생자 개인 5%의 친족(1촌, 1촌 배우자, 2촌, 2촌 배우자)의 2003년~2019년
  - D. 전국 1955년생~1995년생 출생자 개인 1%의 친족(1촌, 1촌 배우자, 2촌, 2촌 배우자)의 2003년~2019년
  - A와 C의 모든 세대원의 2003년~2019년
  - B와 D의 모든 세대원의 2003년~2019년
- 0 1차연도 보고서와 2차연도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차이가 있음.
  - 1차년도 보고서에서는 서울시 전수자료를 이용하였지만,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서울시 2% 세대주와 소속 세대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2차연도 보고서에서 2% 표본으로 신청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 가능한 사례 수가 1,000만 명인데,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작년과 달리 동일주소(동단위) 친족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많은 표본을 신청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음.
  -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차연도 보고서와 달리,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친족(1촌, 1촌 배우자, 2촌, 2촌 배우자)을 분석 대상에 포함을 시켰음. 현실에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친족관계가 변화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친족은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친족관계를 맺은 대상들은 모두 친족으로 간주됨.
    -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자녀와 함께 세대 구성을 한 경우에는 현재 기준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는 가족 이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친족관계에서는 여전히 친족으로 간주됨.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관계인지, 혼인관계인지 구분할 수 없음.
    -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친족은 시간과 무관하게, 한번 친족관계를 맺은 모든 대상자들은 친족에 포함됨.

- 그리고 서울시와 전국 단위 분석에서 '동일주소(동단위)'라는 친족의 범위를 설정하였음. 주민등록세대는 함께 동거 중이더라도, 사회보장 급여 신청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세대 분리를 한 한 경우 다른 세대로 간주함. 따라서 행정적으로 세대 분리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동일주소에 거주하면서 친족관계에 있는 대상을 새로운 가구 개념으로 적용하여 분석할 예정임
  -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정확한 주소와 친족관계를 이용해서 조사 대상 자의 가구 구성을 보완함.
  -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주소정보는 '동 단위'까지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동일한 동에 거주하는 친족을 인구주택총조사와 유사한 가구개념으로 정의해서 분석할 것임.
-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소득이동성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을 별도로 신청 하였다는 점에서 1차연도 보고서와 차이가 있음.
  - 소득 이동성 연구에서 주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정하고, 해당 분석 대상의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일반적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5년생~1990년생의 5% 표본과 1955년생
    부터 1995년생의 1% 표본을 따로 신청하여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음.
- 본 보고서는 2차연도 분석 자료를 주로 활용하되, 시계열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1차연도 분석 자료를 일부 사용할 예정임.

## 3 연구 방법

## 1)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에 대한 평가

- 1차연도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표본을 검증하거나, 시계열, 지역별 전반
  적인 소득분포를 보여주었음
  - 각 소득원천별로 소득자 수를 국세청의 통계자료와 비교하면서 건강보

험공단 자료의 표본을 검증하였음.

-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원수별 비율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가 구원수별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가구개념의 차이에 의한 가구원수별 비 율의 차이에 대해서도 검토
- 하지만 1차연도 보고서에서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수집한 소득값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차연도에서는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 표 조사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 의 소득에 대한 검증하고자 함.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된 자료임. 다만,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연계된 총 연금액으로 기초연금과 사적연금은 포함하지 않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은 소득 공제 이전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공적연금소득 등 6개 범주의 과세소득으로 정의됨. 국세청의 '종 합소득금액'과 비교할 때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및 연금소득 공제가 되지 않은 금액으로 시장소득에 더 가까운 개념임.

[표 1-1]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재산DB와 국세청의 소득 정의 비교

구분	소득재산 DB	국세청 소득금액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급액+귀속법인세	총수입급액+귀속법인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총공적연금액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득재산DB 소개 내부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 조사자료로서 공신력이 있으며, 2016년 귀속소득부터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등의 다양한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를 받아, 조사자료를 보완하여, 그 정확성이 더 높아졌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보완으로 정확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표 본 오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표본 오 류 문제로, 최상위층 금융소득 포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김낙년, 2020).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의의와 한계도 있음(유종성 외, 2021).
  - 국세청은 최근까지 인별 소득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세통계연 보는 분리과세된 세목별로만 통계를 제공하여 인별 총소득의 분포 를 알 수 없었으나,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인별로 종합소득신고금액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정보를 포 함아여 제공하고 있음.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공제 지언의 소득을 제공하며, 사업소 득은 종합소득신고금액뿐 아니라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종합소득 신 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 사업소득까지 인별로 통합된 자료를 제공 함.
  -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전수자료에서 임의추출한 표본자료이기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처럼 표본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최상위층의 금융소득을 초함한 소득의 정확한 파악에는 장점이 있음.
  - 다만, 비과세소득은 물론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 금융소득(2 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2019년부터 1천만원 이하로 변 경됨), 기타소득 등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행정자료의 특성상 비공식부문의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파악되지 않으며,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등 다른 공적이전소득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 따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을 비교함으로 써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의의와 한계를 더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이 이를 위해, 대략적인 분석 계획은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대상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비교

- 이후에, 본격적으로 두 자료의 소득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의 소득 평균을 각 소득원천별로 비교하고 각 인구·사회 집단 별로도 소득 평균을 비교할 예정.
- 총소득 기준으로 10분위로 분류한 후, 각 분위의 소득원천별 평균을 구해서 각 분위와 각 소득원천 평균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비교함.
- 마지막으로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을 두 자료를 통해 서 분석한 후 비교할 예정.
- 추가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도 비교하는데, 경 제활동인구조사에는 근로소득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중 심으로 인구·사회 집단별 소득평균과 분위별 평균을 비교할 예정

## 2) 1차연도 보고서와 2차연도 보고서 비교(시계열)

- ㅇ 1차연도 보고서의 연장 선상에서 2019년 자료를 추가해서 분석 진행
- ㅇ 2017년부터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o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원천별 시계열 추이와 소득분배 양상을 확인할 예정

## 3) 서울시의 1인 가구와 청년 가구에 대한 심층 분석

- o 1차 연도 보고서에서 건보공단 자료를 이용한 전반적인 대상에 대한 분석 이 이루어졌음.
- o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서울시에서 주요한 인구집단인 1인 가구와 청년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 및 소득분배 현황을 확인할 예정
- ㅇ 서울시 1인 가구에 대한 분석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의 전반적인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국의 가구원 수와 연령별 교차 분석을 진행.
  - 그리고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균등화 소득원천의 평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1인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

에 있는지 분석

- 마지막으로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서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한 후에, 각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소득원천별 평균을 분석하여 어떤 연령대의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지 분석
- 이 서울시 청년 가구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보여주고, 가구원 수와 가구유형(청년 가구 주, 청년 가구원)에 대한 분포도 분석.
  -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구의 특성(가구원 수, 가구유형)의 교차분석을 통해서 청년 가구의 특징을 확인
  -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구 특성에 따른 각 소득원천별 평균 분석
  - 총소득 기준 10분위로 분류한 후, 각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각 소 득원천별 평균을 분석
  - 마지막으로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구특성(가구원 수, 가구유형)을 고려하여. 소득분배지표에서 차이가 있는 확인

## 4)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분석

- 각 장의 목적에 따라서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을 분석할 예정이나, 본 보고서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기존 학계에서 통용되는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과는 차이가 있음
  - 일반적으로 지니계수와 상대빈<del>곤율을</del> 산출할 때에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워칙임.
  -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변수로는 가처분소득을 만들 수가 없음.(충분한 공적소득이전 정보, 사적이전정보, 세금 및 다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정보 등이 없기 때문)
  - 또한 시장소득도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비공식부문과 사적인전은 물론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사용 가용한 소득변수들의 합인 총소

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을 산출할 예정임.

- 국가 공식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건보공단 자료 자체에서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의 양상과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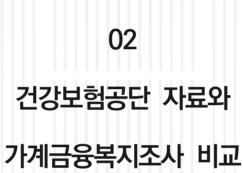
## 5) 부동산 자산 분포 추정

- ㅇ 지니계수의 원천별 요인 분해
  - 소득 또는 자산 원천별로 불평등을 분해하는 작업은 경제적 추세를 이 해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처럼 소득 또는 자산 원천별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작업은 불평등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임(Sastre and Trannoy, 2002).
  - 소득 또는 자산 원천별 요인 분해 방식은 다양하지만, 널리 쓰이는 것이 바로 Shorrocks(1982)의 요인 분해 방식임.
- ㅇ 소득분위별 부동산 총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영향 함수
  - 비조건부 분위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재중심 영향 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에 주목함.
  - RIF는 특정 관측치가 분포 통계량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이 상치(outlier)를 탐색하여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됨.

## 6) 소등 이동성 분석

- ㅇ 소득탄력성과 소득상관관계, 순위상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세대 간 탄력성(intergenerational elasticity, IGE)과 세대 간 상관관계 (intergenerational Correlation, IGC)
  - IGE는 '평균으로의 회귀 정도'를 포착한다면, IGC는 '지위 이동성'을 포착한다고 볼 수 있음.

- ㅇ 순위 상관 Rank-rank slope or Spearman Rank Correlation
  - 순위가 모집단 자체보다는 외부 벤치마크에 기초하여 고정될 때에는,  $\rho$ 는 스피어만 상관관계라기보다는 rank-rank slope이라고 할 수 있음.



1\_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개념 비교 2\_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개념 비교 3\_인구·사회적 특징 비교 4\_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균등화 개인 소득원천 평균 비교 5\_개인 특성별 균등화 총소득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 02.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 1\_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개념 비교

## 1)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개념

-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다양한 행정자료들을 종합해서 정리하여 개인과 가구에 대한 소득 자료를 구축하였음.
  -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자료는 '개인 단위'로 구축되어 있으며, 가구 단위 소득 자료는 주민등록세대 정보 혹은 건강보험증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 가능함.
  - 소득 자료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정보,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연 말정산 정보, 직장가입자 퇴직중간정산 정보, 그리고 5대 공적연금의 정 보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국민연금소득, 직역연금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7개의 소득원천을 포함함.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각 소득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행정기관
  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로서, 소득공제 이전의 과세소득에 해당함.
  - 각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소득 정보들은 수집된 시기와 귀속 시기들이 다양하고 차이가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자료들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인별, 연별 자료를 구축하였음.
  - 근로소득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자료를 우선해서 이용하고, 직장가입자 중에서 신고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 대표 여부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연계하여 근로소득을 보정함.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음.

-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장 대표의 경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자료와 종합소득세 정보를 이용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정보를 이용하였음. 그리고 사업소득에는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소득 외에도 임대를 통한 소득, 즉 임대소득도 포함된 개념임.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지만, 2천 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천 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2019년 소득 자료부터는 해당 기준이 변경되어 1천 만원 이하의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 정보가 포함되지 않음.
-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소득 외의 모든 소 득을 포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저작권 수입, 수수료, 상금 등이 있음
- 국민연금·직역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직역연금공단의 연금 지급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음.

[표 2-1]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원천별 소득금액 출처

구분	개인 사업장 대표자	법인 사업장 대표자	비대표자	비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직장가입자 정산 종합소득세	직장가입자 정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장가입자 정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금소득	연금소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득재산DB 소개 내부자료

## 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개념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06년에 가계자산조사(5년주기)를 시작으로 2010 년에는 가계금융조사(1년주기), 2012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1년주기)로 발전하여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6년부터 우리나라 공식 소득분배지표가 되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6년(귀속시점)부터 국세청,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제공받아 보완한 소득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표1 참조).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와 개인을 기준으로 소득 자료를 수집하지만, 개인 수준의 소득 자료는 원격접근서비스(RAS)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o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하는 각 소득들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통계청, 2019)
  -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임 금과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며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의 총액을 의미
  - 사업소득: 사업이나 상점의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지식 또는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사업수입(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이자 등 비용과 사업체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를 차감한 금액을 조사
  - 재산소득: 가구의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이자, 관리비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조사
  - 공적 이전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사회보장 수혜금
  - 사적이전소득: 가구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등
    - 가구간 이전소득: 따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부모, 자녀가구와 친지,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민간·비영 리단체로부터 장학금·구호금 등의 형태로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행정자료 조사 항목 행정자료 보유기관 근로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국세청 근로소득 보건복지부 일용근로소득, 자활급여 사업소득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국세청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국세청 금융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종합소득세) 국세청 공적연금 연금지급액 각염관등 기초연금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출산장려금, 한부모가족아동양육수당 등 여성가족부 아동수당 포함) 공적이전소득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국토교통부, 장애인연금 등) 교육부 기초생활보장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사급여, 장제급여 국세청

[표 2-2] 가계금융복지조사 보완 행정자료 및 보유기관

출처: 통계청(2019)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근로·자녀장려금

#### 3)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개념 비교

o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정보는 각각 장·단점이 있음.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장점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조사자료에 비해서 많은 사례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임. 조사자료는 직접 방문해서조사 대상자들에게 질문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많을 수 없는데,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경우에는 따로 방문해서조사할 필요가 없어, 사례 수의 제한이 없음.
-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두 번째 장점은 정보의 정확성이 높다는 점임. 국세청을 비롯한 여러 행정기관의 정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는 조사자료보다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가 더 적음.
- 하지만 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는 한 가지 단점이 존재함. 행정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수집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래서 접근 가능한 행정 기관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변수에도 차이가 발생함.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자료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비

해서 큰 장점이 하나 있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6년 소득자료부터 는 국세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행정자료에 접근하여 설문 조사 자료 결과를 보완하고 있음. 따라서 조사자료이기는 하지만, 측정오류 (measurement error)가 크지 않음.

- 두 번째 장점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비해서, 이용 가능한 변수의 범위가 포괄적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개인 간의 소득 이전인 '사적이전소득'을 파악할 수 없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해당 정보를 설문을 통해서 수집가능 하고, 그 외에 학력과 일자리 상황에 대한 정보도 이용 가능함.
- 그럼에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한 가지 단점은 건강보험공단자료에 비해서 사례 수가 적다는 점임. 이러한 이유로, 세부적인 인구집단이 주요 연구대상일 경우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는 분석에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분석에 한계가 있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개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개념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이 1대 1로 상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상응하지 않는 경우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임.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하는 일용 근로소득과 자활급여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사업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업소득을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사업소득에는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업소득은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업소득을 임대소득과 합친 것으로 재정의해서 분석할 예정임.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기타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원천과 매치되는 것은 찾기 어려움. 하지만 김낙년(2016)의 연구에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의 성격에 가깝게 간주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임.

-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1천 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모든 금융소득 이 파악되어서 보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2-3]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 변수 비교

	가계금융복지조사	건강보험공단 자료
	근로소득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자활급여 제외)
	사업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 기타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기타재산소득(개인연금 등)	
	공적연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
	양육수당	
공적이전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포함)	
소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보장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 2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개념 비교

### 1)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가구개념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세대 정보를 제공 받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자료 인구사회경제DB의 가구 구성 정보로서 제공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세대는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민 등록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는 개념임.
  - 주민등록세대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 지가 다르면, 다른 세대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가구의 개념과 차이가 있 음. 한편, 친족이면서 동일한 주소지이더라도, 세대 분리를 한 경우에 는 다른 세대로 구분되기도 함.
  -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공단자료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 가구 구성해서 가구 단위 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 추가로 본 보고서에서는 주민등록세대와 다른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구 구성을 해서 가구 단위 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의 정의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로, 주민등록세대에서 동일한 주소지 이면서 세대 분리로 인해 다른 세대로 구분되더라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정의에서는 하나의 가구로 간주됨.
  - 이러한 가구 정의에 따라서 가구 구성을 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동일주소(동 단위)와 친족 관계 정보를 이용하여, 세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구가 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을 하였음.
  - 인구주택총조사는 구체적인 주소 정보를 이용해서 동일 주소인 친족들을 하나의 가구로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주소 정보는 '동 단위'밖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와 차

이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구주택총조사와 유사한 가구개념으로 가구 구성을 했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의의가 있음.

#### 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개념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개념은 행정자료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의 가구 개념과 차이가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정의는 '1인 또는 2인 이상 모여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로 건강보험공단의 주민등록세대와는 차이가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학업 및 취업으로 인해 부모와 비동거하는 자녀가 있어도 해당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간주하지만,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모와 비동거하는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에는 부모와 다른 세대로 간주하게 됨.
  - 인구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에는 주소와 친족 관계를 이용해서, 엄밀한 가구 정보를 구축하지만,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목적은 소득 및 지출 파악과 소득분배지표를 분석하기 위한 것 이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와 달리 주소와 친족관계 정보를 이용해서 가구 정보를 구축하지 않음. 따라서 주민등록세대와의 차이와 마찬가 지로, 학업과 취업으로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인구주택총 조사에서는 다른 가구로 간주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동일한 가구 로 간주함.
  - 따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개념이 유사하지 만, 주소와 친족관계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본 분석에서 가구개념의 기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임.

# 3 인구·사회적 특징 비교

#### 1) 인구·사회적 특징 비교

[표 2-4] 가구주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단위: 가구, %)

			건강도	L험DB					
구	분	주민등록/	네대 기준	인총가	구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체	226,243	100.0	226,343	100.0	18,064	100.0		
서벼	남	152,882	67.6	152,940	67.6	13,370	74.0		
성별	여	73,361	32.4	73,403	32.4	4,694	26.0		
	0-19	241	0.1	241	0.1	0	0.0		
	20-29	14,221	6.3	14,226	6.3	370	2.0		
	30-39	34,832	15.4	34,868	15.4	1,928	10.7		
연령	40-49	47,699	21.1	47,714	21.1	3,423	18.9		
	50-59	53,796	23.8	53,852	23.8	4,163	23.0		
	60-69	40,102	17.7	40,121	17.7	3,954	21.9		
	70+	35,352	15.6	35,321	15.6	4,226	23.4		
	1명	89,902	39.7	78,800	34.8	4,490	24.9		
	2명	49,797	22.0	47,259	20.9	5,671	31.4		
가구원수	3명	40,994	18.1	41,124	18.2	3,508	19.4		
	4명	34,600	15.3	37,004	16.4	3,432	19.0		
	5명 이상	10,950	4.8	22,156	9.8	963	5.3		

- o 위의 표는 가구 기준으로 인구·사회적 특징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비교하였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가구(세대) 기준은 앞의 절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주민등록세대 기준과 동일주소 친족(인구주택총조사와 유사한 개념) 기준으로 나눠서 분석하였음.
  -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에서 주민등록세대 기준과 인총가구 기준의 비율 차이는 없으나, 가구원 수는 차이가 있음.
  - 주민등록세대는 같이 동거하고 있더라도 행정상 다른 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구분이 되는 반면에, 동일 주소 친족은 동일 한 세대로 간주함. 따라서,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는 1인 가구의 비율

- 이 39.7%인 것에 비해, 인총가구 기준으로는 34.8%로 약 4.9%p 차이가 남.
- 이러한 결과는 주민등록세대 기준이 1인 가구(세대)를 현실보다 과대대 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행정자료에서 주민등록세대를 이용함 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인구·특징을 비교하면, 남성 가구주인 경우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67.6%인 것과 달리, 가계금 융복지조사에서는 74.0%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별 비율에 대해 두 자료를 비교하면, 건강보험공 단 자료가 30-39세의 비율이 4.7%p 더 높고,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7.4%p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가구원 수의 비율도 크게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큰 차이가 확인되는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에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4.9%인 것에 비해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가구(세대) 기준에 따라 각각 39.7%, 34.8%로 큰 차이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높았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주와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가구 개념의 차이 때문임.
  - 앞의 절에서 서술하였듯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학업과 취업으로 동거하지 않지만, 소득과 소비를 함께 하는 경우에 동일 가구로 간주함.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1인 가구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3인 가구, 4인 가구로 분류됨.
  - 30-39세의 청년들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부모 가구와 동일한 가구로 분류되어 그 비율이 10.7%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부모 가구와 분리된 가구로 분류되어 15.4%로 나타나는 것임.

#### [표 2-5]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단위: 명, %)

			건강도	변험DB		(LTI- 6, 70)		
7	분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	구 기준	가계금융	복지조사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체	508,834	100%	568,252	100%	45,095	100.0	
서벼	남	258,855	50.9	277,847	48.9	21,677	48.1	
성별	여	249,979	49.1	290,405	51.1	23,418	51.9	
	0-19	87,412	17.2	104,516	18.4	8,063	17.9	
	20-29	67,620	13.3	74,101	13.0	4,657	10.3	
	30-39	70,082	13.8	78,586	13.8	4,987	11.1	
연령	40-49	81,042	15.9	91,544	16.1	6,673	14.8	
	50-59	85,440	16.8	91,955	16.2	7,354	16.3	
	60-69	62,789	12.3	68,310	12.0	6,716	14.9	
	70+	54,449	10.7	59,240	10.4	6,645	14.7	
	1명	90,122	17.7	112,205	19.8	4,490	10.0	
	2명	99,594	19.6	115,098	20.3	11,342	25.2	
가구원수	3명	122,982	24.2	138,483	24.4	10,524	23.3	
	4명	138,400	27.2	142,740	25.1	13,728	30.4	
	5명 이상	57,736	11.4	59,726	10.5	5,011	11.1	
	총소득	286,810	56.4 <sup>1)</sup>	312,680	55.0	35,611	79.0	
소득자수	근로소득	186,841	36.7	203,396	35.8	20,732	46.0	
	사업소득	107,787	21.2	118,590	20.9	10,802	24.0	
	금융소득	3,666	0.7	4,053	0.7	27,535	61.1	
-	공적연금	45,482	8.9	48,012	8.4	6,359	14.1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년(2019년 귀속소득)

주 1): 전체 사례 수 대비 소득자 수의 비율을 의미함.

- o 위의 표는 개인 단위로 분석한 인구·사회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주민등록세대 기준과 인총가구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움.
  -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비교했을 때, 성별과 연령의 비율 차이는 뚜렷하지 않음. 다만, 7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가계금융 복지조사는 14.7%인 것에 비해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10.4~10.7%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원 수의 비율도 앞서 살펴본 가구 단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1인 가 구의 비율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확연하게 차이 가 남.
- ㅇ 가구 단위 분석과 달리 개인 단위 분석에서는 각 소득원천의 소득자 수와

- 그 비율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비교하였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총소득자의 비율은 55.0~56.4%인 반면에, 가계 금융복지조사의 총소득자는 79.0%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비율보다 20%p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세부 소득별로 구분해서 확인하면, 건강보험공단 자료 근로소득자의 비율은 35.8~36.7%이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비율은 46.0%로, 약 10%p 내외 차이가 났음.
- 사업소득자의 비율은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20.9~21.2%,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24.0%로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
- 금융소득자의 비율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0.7%에 불과하지만, 가계 금융복지조사에서는 61.1%로 약 60%p 차이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금융소득은 과세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인 1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만 확인이 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모든 금액의 금융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1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례 수만 확인하면, 570명으로 전체 사례의 1.3%에 불과함. 1.3%는 건강보 험공단 자료의 금융소득자의 비율인 0.7%보다 많은 수치임.
- 마지막으로 공적연금 소득자의 비율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8.4~8.9%로 확인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14.1%로 그 비율이 더 높음.

#### 2) 가구 기준 인구·사회적 특징별 소득 평균 비교

[표 2-6] 가구주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총소득)

(단위: 천 원)

				(211-22)
_	ы	건강보	L험DB	713170HTITU
7	분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체	39,559	42,321	55,838
가구주	남	46,821	49,512	64,905
성별	여	24,426	27,337	26,159
	0-19	2,944	3,273	0
	20-29	23,267	24,665	33,014
기그ㅈ	30-39	42,553	45,763	61,011
가구주 연령	40-49	50,534	53,803	74,473
55	50-59	51,000	52,658	73,499
	60-69	35,185	37,627	48,772
	70+	16,155	20,360	19,536
	1명	18,128	18,298	17,599
	2명	32,967	32,676	40,437
가구원수	3명	55,731	53,998	70,755
	4명	74,107	71,745	87,480
	5명 이상	75,779	77,515	94,512

- 가구 기준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총소득의 평균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비교하였음.
  - 전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비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총소득이 약 1천만 원~2천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평균 총소득 이 2,443만 원~2,734만 원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691만 원으로 비슷하였음.
  - 그리고 70세 이상 가구주 가구와 1인 가구도 여성과 유사하게, 건강보 험공단 자료의 총소득 평균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총소득 평균이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원천별로 비교 분석을 하였음.

[표 2-7] 가구주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근로소득)

(단위: 천 원)

_	н	건강보	기계구이버리포니	
7	분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체	30,789	32,917	37,909
가구주	남	36,286	38,353	44,112
성별	여	19,332	21,591	17,602
	0-19	2,765	3,035	0
	20-29	21,372	22,493	27,693
기그ㅈ	30-39	37,484	39,884	49,815
가구주 연령	40-49	41,423	43,831	53,987
58	50-59	40,696	41,987	53,290
	60-69	22,187	24,188	26,621
	70+	8,505	11,787	6,499
	1명	14,399	14,657	11,217
	2명	23,069	23,273	21,468
가구원수	3명	44,387	42,867	50,551
	4명	59,729	57,421 66,206	
	5명 이상	58,108	59,042	61,119

- 위의 표는 가구 기준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근로소득의 평균을 건강보험
  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비교한 것임.
  - 총소득의 평균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비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소득 평균이 높은 편임.
  - 하지만,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평균에 비해 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그리고 70세 이상 가구주 가구와 1인 가구 또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비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소득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 가구주 가구, 70세 이상 가구주 가구, 1인 가구의 근로소득 평균 은 총소득 평균과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 사의 평균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달리, 일용근로 소득과 자활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평균 근로 소득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있음.

#### [표 2-8] 가구주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사업소득)

(단위: 천 원)

				(EII E E)
7	분	건강도	L험DB	가계금융복지조사
Т	正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기계급용복시소시
전	체	6,521	7,001	13,503
가구주	남	7,705	8,183	15,804
성별	여	4,055	4,540	5,973
	0-19	179	238	0
	20-29	1,746	2,005	4,966
가구주	30-39	4,572	5,134	9,947
기구구 연령	40-49	8,509	9,133	18,459
28	50-59	9,077	9,376	17,448
	60-69	7,047	7,417	13,414
	70+	3,241	3,931	6,084
	1명	2,856	2,781	4,194
	2명	5,795	5,753	11,708
가구원수	3명	8,564	8,366	15,861
	4명	12,069	11,643	18,123
	5명 이상	14,744	14,389	29,108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년(2019년 귀속소득)

#### [표 2-9] 가구주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금융소득)

(단위: 천 원)

				(27) 2 2)	
_	분	건강도	L험DB	가계금융복지조사	
Т	世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기계급용복시조사	
 전	체	638	726	2,001	
가구주	남	780	861	2,305	
성별	여	343	444	1,008	
	0-19	0	0	0	
	20-29	114	120	247	
가구주	30-39	351	484	1,100	
기구구 연령	40-49	432	541	1,770	
119	50-59	807	837	2,188	
	60-69	932	966	2,549	
	70+	825	1,019	2,162	
	1명	227	220	797	
	2명	826	731	2,386	
가구원수	3명	738	722	2,089	
	4명	1,202	1,271	2,366	
	5명 이상	1,009	1,610	2,852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년(2019년 귀속소득)

o 위의 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비교하되, 가구 기준 인구·사회적 특성별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의 평균을 비교한 것임.

- 사업소득 평균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비해 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금융소득 평균도 마찬가지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음. 금융소득의 이러한 차이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의 금융소득은 1천 만원 이상의 금융소득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표 2-10] 가구주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공적연금소득)

(단위: 천 원)

		건강보	L험DB	
7	분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전	체	1,611	1,678	2,424
가구주	남	2,050	2,116	2,684
성별	여	696	764	1,576
	0-19	0	0	0
	20-29	34	46	108
기그ㅈ	30-39	148	263	149
가구주 연령	40-49	170	299	257
28	50-59	421	457	573
	60-69	5,020	5,057	6,188
	70+	3,585	3,626	4,790
	1명	646	640	1,391
	2명	3,278	2,921	4,874
가구원수	3명	2,042	2,043	2,253
	4명	1,109	1,414	786
	5명 이상	1,921	2,477	1,432

- 가구 기준 인구·사회적 특성별 공적연금소득 평균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하였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비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공적연금소득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공적연금소득이 더 낮은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가구원 수가 4명 혹은 5명 이상일 때임.
  - 가구소득은 가구 개념의 차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개인 단 위 소득을 통해서, 가구 개념의 차이 영향을 줄이고자 함.

#### 3) 개인 기준 인구·사회적 특징별 소득 평균 비교

[표 2-11]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

(단위: 천 원)

			건강보험DB				
<b>-</b>	구분		주민등록세대 기준		구 기준	가계금융	복지조사
'	E .	총소득	균등화 총소득	총소득	균등화 총소득	총소득	균등화 총소득
전	체	17,599	29,373	16,870	29,659	21,142	39,917
성별	남	23,923	32,204	23,019	32,452	30,202	40,425
성필	여	11,052	21,017	10,988	21,848	12,429	39,429
	0-19	155	31947	152	30948	255	40,131
	20-29	12,403	32818	12,196	32375	10,570	44,741
	30-39	26,585	32217	25,759	32508	30,231	39,283
연령	40-49	31,555	32214	30,331	32564	40,880	43,094
	50-59	27,240	32461	26,547	32495	38,151	45,254
	60-69	16,393	24050	15,859	25008	23,906	34,641
	70+	5,984	14376	5,766	16689	9,488	22,185
	1명	18,142	18,128	17,106	18,298	17,599	17,599
	2명	16,484	23,311	15,716	23,106	20,218	28,593
가구원수	3명	18,577	32,176	17,466	31,176	23,585	40,850
	4명	18,527	37,054	18,156	35,873	21,870	43,740
	5명 이상	14,372	32,959	14,202	32,988	18,070	41,212

- o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개인 기준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과 가계금 용복지조사의 소득 평균을 비교할 때에는 개인소득뿐만 아니라 균등화 개 인소득도 함께 확인할 것임.
  - 균등화 개인소득을 분석에 포함시킨 이유는 개인소득에 비해서 균등화 개인소득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보기 위함인데, 이러한 변화량은 가구 내에서의 소득 재분배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임.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인 총소득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높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설문 조사를 통한 소득정보를 행정자료(과세자료) 로 보완했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전체 개인소득 평균은 1,687만 원~1,759만 원인 것에 반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인소득 평균은

- 2,114만 원으로 약 400~5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음.
- 하지만 다른 인구집단과 달리, 20세~29세와 가구원 수가 1명인 개인 의 총소득 평균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약간 더 높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개인 총소득 평균과 균등화 개인 총소득 간의 차이가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차이보다 큰 것으로 확인됨.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개인 총소득 평균과 균등화 개인 총소득 간의 차이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차이보다 적은 이유는 가구 개념의 차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1인 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임.
  -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면, 가구소득을 통해 균등화했을 때 재분배되는 소득이 적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 총소득의 하이가 크지 않게 됨.
- 총소득에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이 차이가 나 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 표와 같이 각 소득원천별로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근로소득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약 간 낮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음.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건강보험 공단 자료에서 일용근로소득과 지활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 균 차이가 거의 없음.
  - 총소득 평균에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한 소득원천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임.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금융소득 평균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낮은 이 유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1천 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사업소득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낮은 이유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설명 가능한 한 가지 가설은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축소 보고를 하지 않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업소득 평균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사업

#### [표 2-12]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근로소득)

(단위: 천 원)

			건강부	L험DB			
_	н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	구 기준	가계금융	복지조사
Ť	분	근로소득	균등화 근로소득	근로소득	균등화 근로소득	근로소득	균등화 근로소득
전	체	13,699	22,928	13,121	23,070	14,711	27,976
성별	남	18,546	25,056	17,854	25,160	20,702	28,404
성글	여	8,679	16,645	8,593	17,226	8,950	27,565
	0-19	124	26,018	120	24,639	136	29,044
	20-29	11,404	27,047	11,183	26,550	9,589	32,732
	30-39	23,631	27,029	22,811	26,914	25,056	30,234
연령	40-49	25,908	26,005	24,881	26,047	29,555	30,867
	50-59	21,086	25,583	20,474	25,601	26,516	32,195
	60-69	8,524	14,619	8,219	15,935	11,023	18,818
	70+	1,761	8,417	1,696	10,560	2,061	10,959
	1명	14,415	14,399	13,445	14,657	11,217	11,217
	2명	11,534	16,312	11,130	16,456	10,734	15,180
가구원수	3명	14,796	25,627	13,920	24,749	16,851	29,186
	4명	14,932	29,864	14,628	28,710	16,551	33,103
	5명 이상	11,021	25,242	10,898	25,080	11,672	26,596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년(2019년 귀속소득)

#### [표 2-13]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사업소득)

(단위: 천 원)

							(11) 11 2)
			건강보	L험DB		기계그으	복지조사
78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	구 기준	/ /1108	サインス
Т	구분		균등화 사업소득	사업소득	균등화 사업소득	사업소득	균등화 사업소득
전	[체	2,901	4,874	2,792	4,961	5,077	9,603
성별	남	3,882	5,332	3,740	5,422	7,764	9,565
성글	여	1,885	3,523	1,884	3,674	2,492	9,639
	0-19	20	5,308	20	5,275	10	9,930
	20-29	912	4,869	924	5,895	793	10,058
	30-39	2,776	4,106	2,757	4,323	4,672	7,242
연령	40-49	5,371	5,541	5,159	5,644	10,372	10,796
	50-59	5,433	5,811	5,339	5,793	10,170	10,930
	60-69	3,846	4,840	3,727	4,849	7,592	9,494
	70+	1,416	2,746	1,372	3,123	3,293	6,235
	1명	2,856	2,856	2,792	2,781	4,194	4,194
	2명	2,897	4,098	2,724	4,068	5,854	8,279
가구원수	3명	2,855	4,945	2,694	4,830	5,287	9,158
	4명	3,017	6,035	2,959	5,821	4,531	9,062
	5명 이상	2,796	6,424	2,747	6,147	5,564	12,693

#### [표 2-14]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금융소득)

(단위: 천 원)

			건강도	L험DB		JIN OHTIT II		
7	분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가계 <del>금융</del> 복지조사				
Т	亡	금융소득	균등화 금융소득	금융소득	균등화 금융소득	금융소득	균등화 금 <del>융</del> 소득	
전	체	284	471	289	523	691	1,261	
성별	남	364	529	351	575	702	1,362	
- 경달 	여	201	300	230	377	680	1,165	
	0-19	11	402	12	501	108	977	
	20-29	87	504	90	506	185	1,371	
	30-39	179	349	192	440	500	962	
연령	40-49	268	349	286	441	936	1,114	
	50-59	499	507	515	534	1,207	1,481	
	60-69	565	678	595	675	1,411	1,849	
	70+	464	586	459	628	1,136	1,623	
	1명	226	227	265	220	797	797	
	2명	413	584	410	517	1,193	1687	
가구원수	3명	246	426	239	417	696	1,206	
	4명	301	601	297	636	592	1,183	
	5명 이상	191	440	200	694	551	1,264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년(2019년 귀속소득)

#### [표 2-15]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공적연금소득)

(단위: 천 원)

							(LTI - Z - Z)
			건강보	L험DB		기계그으	サゴス ル
			네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7	분	공적연금 소득	균등화 공적연금 소득	공적연금 소득	균등화 공적연금 소득	공적연금 소득	균등화 공적연금 소득
전	체	716	1,101	669	1,105	663	1,077
성별	남	1,130	1,288	1,074	1,296	1,034	1,095
	여	288	549	282	572	307	1,059
 연령	0-19	0	219	0	535	2	181
	20-29	0	398	0	425	3	580
	30-39	0	734	0	832	2	846
	40-49	8	320	7	432	17	317
	50-59	223	560	219	566	258	648
	60-69	3,459	3,914	3,318	3,550	3,880	4,480
	70+	2,344	2,628	2,240	2,379	2,998	3,369
가구원수	1명	645	646	603	640	1,391	1,391
	2명	1,639	2,318	1,452	2,065	2,437	3,447
	3명	681	1,179	614	1,180	751	1,301
	4명	277	554	272	707	196	393
	5명 이상	364	855	358	1,069	283	659

## 4 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균등화 개인 총소득 평균 비교

[표 2-16] 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개인 균등화 총소득 평균 비교

(단위: 천 원)

	건강보		
구분	주민등록세대	인총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1분위	0	0	2,719
2분위	1,688	2,035	10,255
3분위	6,354	7,338	16,751
4분위	12,758	13,454	22,294
5분위	18,907	19,319	27,598
6분위	25,042	25,292	32,864
7분위	31,840	32,055	38,876
8분위	40,203	40,294	47,026
9분위	52,502	52,508	58,824
10분위	104,691	104,315	100,131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년(2019년 귀속소득)

주: 위의 값은 각 자료와 가구 기준별 10분위를 나눈 후, 각 분위별 총소득 평균을 의미함.

- o 균등화 개인 총소득을 10분위로 분류한 다음, 각 분위에 속하는 개인들의 균등화 총소득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비교하였음.
  -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1분위에 속한 개인의 총소득은 0으로 값이 없지만, 가계금 융복지조사는 1분위임에도 불구하고 총소득의 평균값이 272만 원이 있음.
  - 한편,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 득 파악이 더 잘되는 것을 알 수 있음. 10분위의 균등화 총소득 평균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더 높음.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 오류로 인해서 최상위층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김낙년(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

# 5\_개인 특성별 균등화 총소득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표 2-17] 개인 특성별 균등화 총소득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건강보험DB							
					가계금융	복지조사		
7	분	주민등록	네대 기준	인종가-	인총가구 기준		1 1120 1 12 1	
•	_	지니계수	상대 빈 <del>곤</del> 율	지니계수	상대 빈 <del>곤</del> 율	지니계수	상대 빈 <del>곤</del> 율	
전	체	0.535	32.2	0.525	31.1	0.369	17.1	
성별	남	0.509	27.6	0.500	26.7	0.362	15.9	
	여	0.604	45.6	0.586	43.4	0.376	18.2	
연령	0-19	0.490	25.5	0.497	27.1	0.361	14.9	
	20-29	0.478	23.5	0.479	24.0	0.332	11.0	
	30-39	0.452	22.4	0.448	22.0	0.318	11.8	
	40-49	0.514	28.2	0.505	27.2	0.355	12.9	
	50-59	0.540	30.1	0.531	29.2	0.342	11.5	
	60-69	0.583	41.5	0.567	39.2	0.379	23.7	
	70+	0.723	64.6	0.685	58.6	0.525	52.6	
가구원수	1명	0.695	57.8	0.691	57.4	0.584	61.0	
	2명	0.607	44.5	0.603	44.7	0.462	39.1	
	3명	0.482	24.3	0.490	26.2	0.356	16.1	
	4명	0.447	17.9	0.458	19.9	0.323	9.4	
	5명 이상	0.468	21.9	0.469	22.0	0.367	14.1	

-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인 특성별 균등화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을 비교하였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중위값은 주민등록세대 기준 2,197만 원, 인총가 구 기준 2,227만 원이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값은 3,367만 원임.
  -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비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값이 더 높으며, 결국 중위값의 50%에 해당되는 빈곤선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더 높음.
  - 일반적으로 빈곤선이 높을수록 상대빈곤율이 높은데, 가계금융복지조 사의 빈곤선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빈곤선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건강보험공단 자료보다 더 낮음.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이 없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

임.

- 특히,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일용근로소득과 자활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는 무소득자로 분류가 됨.
- 그리고 앞의 분석에서 꾸준히 지적되었듯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사업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업소득보다 매우 낮음.
-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정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평균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소득보다 낮음.
- 한편,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상위층에 대한 소득 파악은 가계금융복지 조사보다 더 잘 되기 때문에, 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불평등 정도를 보 여주는 지니계수가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높음.

[표 2-18] 소득원천별 균등화 소득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건강도	브험DB		기게그이버지지니	
구분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	구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b>十</b> 正	지니계수	상대 빈 <del>곤</del> 율	지니계수	상대 빈 <del>곤</del> 율	지니계수	상대 빈 <del>곤</del> 율
근로소득	0.591	42.3	0.579	41.4	0.476	38.7
+사업소득	0.551	34.6	0.539	33.5	0.381	20.2
+금융소득	0.554	34.3	0.543	33.3	0.382	19.1
+공적연금소득	0.535	32.2	0.525	31.1	0.369	17.1

- 각 소득원천을 추가했을 때, 변화하는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을 건강보험
  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비교하였음.
  - 근로소득만 고려했을 때,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지니계수는 0.579 ~ 0.591이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0.476임.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상대빈곤율은 41.4% ~ 42.3%인 반면에, 가계금융복지조사는 38.7%임.
  - 사업소득을 추가하였을 때,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

율의 변화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변화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됨. 일례로, 상대빈곤율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7.7%p~7.9%p 감소하였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8.5%p가 감소하였음.

- 금융소득을 추가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0.2%p~0.3%p 감소하였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1%p 감소하는데 기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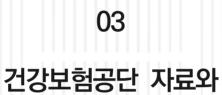
[표 2-19] 소득원천별 균등화 소득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만 60세 이상)

		건강도		7171170	HTITII	
구분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	구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12	지니계수	상대 빈 <del>곤</del> 율	지니계수	상대 빈 <del>곤</del> 율	지니계수	상대 빈 <del>곤</del> 율
근로소득	0.750	59.0	0.712	54.8	0.629	65.1
+사업소득	0.716	50.6	0.678	47.0	0.516	48.0
+금융소득	0.718	50.0	0.682	46.4	0.500	44.9
+공적연금소득	0.649	40.7	0.622	39.2	0.450	36.8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년(2019년 귀속소득)

- [표 2-21]은 [표 2-20]과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되, 분석 대상을 만 60세 이상으로 한정하였음.
  - [표 2-20]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금융소득을 추가하였을 때의 감소 효과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크다는 점임.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금융소득의 상대빈곤율 감소효과가 1.1%p였던 것에 비해, 만 60세 이상 대상으로는 3.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공적연금소득을 추가하였을 때,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가계금융 복지조사보다 더 큰 폭으로 상대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 됨.

-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교

1\_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득개념 비교 2\_인구·사회적 특징 비교 3\_근로소득 10분위별 근로소득 평균

# 03.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교

# 1\_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득개념 비교

- o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자료의 주요 목적임.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2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민들의 경제활 동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달리, 취업 및 근로, 실직 및 휴직과 같은 경제활 동 상태에 관한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또한,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로서 개인의 경제활동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의 기본 단위는 개인 단위임.
- o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년에 본조사 이외에 총 5개의 부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5월에 고령층 부가조사와 청년층 부가조사가 진행되고, 8월에 근로형 태별 부가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진 행됨.
  - 각 부가조사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가 차이가 있으며, 조사하는 내용과 질문 또한 차이가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에서 소득 및 임금에 관해서 질문하는 조사는 8월 에 진행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유일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조사하는 소득 및 임금 개념
  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과는 차이가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소득 및 임금을 파악하는 질문은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까?"임.
  -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은 앞장에서 서술하였듯이, 국세 청의 행정자료로서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일용근로소득과 자활급여를 제외한 연간소득임.
  -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소득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일용근로소득과 자활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소득은 3개월 월 평균 소득인 것에 반해,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은 연간소득임.
  -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에서 조사한 소득을 비교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소득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소 득으로 변환할 예정임.
- ㅇ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과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은 차이가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가 있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조사 대상은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건강보험공단과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건강보 험공단의 분석 자료를 '15세 이상' 국민으로 제한하여 경제활동인구조 사의 표본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2 인구·사회적 특징 비교

[표 3-1]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단위: 명, %)

					(211 0, 1-)
구분		건강보험DB(주[	민등록세대 기준)	경제활동	인구조사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체	446,638	100.0	60,159	100.0
성별	남	226,885	50.8	28,131	46.8
	여	219,753	49.2	32,028	53.2
연령	15-19	25,216	5.6	3,316	5.5
	20-29	67,620	15.1	6,348	10.6
	30-39	70,082	15.7	7,549	12.5
	40-49	81,042	18.1	10,585	17.6
	50-59	85,440	19.1	11,680	19.4
	60-69	62,789	14.1	10,175	16.9
	70+	54,449	12.2	10,506	17.5
소득자수	근로소득	186,841	41.8	25,455	42.3

-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임.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0.8%, 49.2%이지 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46.8%, 53.2%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반면에,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비해서, 60대와 70세 이상인 개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자의 비율은 41.8%이고 경제활동인구조 사의 근로소득자의 비율은 42.3%로 차이가 거의 없음.

[표 3-2]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근로소득 평균 비교

(단위: 천 원)

			(= 11 = 2)	
_	н	건강보험DB	경제활동인구조사	
7	분	근로소득	근로소득	
	[체	15,606	14,635	
성별	남	21,160	19,632	
	여	9,872	9,798	
연령	15-19	429	769	
	20-29	11,404	12,583	
	30-39	23,631	22,449	
	40-49	25,908	22,692	
	50-59	21,086	18,991	
	60-69	8,524	7,961	
	70+	1,761	1,503	

- 인구·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개인의 근로소득 평균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비교하였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전체 근로소득 평균은 1,561만원이고,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전체 근로소득 평균은 1,464만원으로 건강보험공단 자료 의 평균 근로소득이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남성 평균 근로소득은 2,116만원으로,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남성 평균 근로소득인 1,963만원보다 높음.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여성 평균 근로소득은 987만원이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여성 평균 근로소득은 979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
  - 15세에서 19세, 그리고 20세에서 29세까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평균 근로소득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평균 근로소득보다 높지만, 그 이후 연령부터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평균 근로소득이 더 높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평균 근로소득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평균 근로 소득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두 자료의 근로소득의 분 포를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 절에서는 분위별 근로소득 평균을 비교하였음.

## 3 근로소득 10분위별 근로소득 평균

[표 3-3] 10분위별 근로소득 평균(근로소득자만, 성별)

(단위: 천 원)

						<u> </u>
	건강보험DB			경제활동인구조사		
구분	전체	성	별	저귀	성	별
	신세	남	여	전체	남	여
1분위	3,554	3,602	3,513	5,871	5,848	5,881
2분위	9,835	9,864	9,811	15,111	15,487	14,925
3분위	16,087	16,059	16,109	20,748	20,772	20,736
4분위	21,140	21,120	21,155	23,682	23,761	23,613
5분위	25,046	25,073	25,025	26,359	26,461	26,257
- 6분위	30,500	30,625	30,351	29,729	29,762	29,675
7분위	37,643	37,732	37,468	34,417	34,521	34,169
8분위	47,901	47,995	47,639	40,245	40,338	39,951
9분위	64,583	64,586	64,576	49,266	49,192	49,533
10분위	116,846	118,699	107,793	77,211	77,910	73,833

-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
  에 속한 개인들의 평균 근로소득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비교하였음.
  - 낮은 소득 분위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 로소득 평균이 더 높음.
  - 그리고 6분위 이상부터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 평균이 경제활 동인 구조사의 근로소득 평균보다 더 높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비교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낮은 소득 분위의 평균 소득이 다른 조사자료보다 낮고, 높은 분위의 평균 소득은 다른 조사자료보다 더 높음.
  - 이러한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낮은 소득 분위의 소득 파악이 완 전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줌.
- 남성과 여성의 근로소득 평균 차이가 두 자료 모두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남성과 여성의 근로소득 평균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함.

#### [표 3-4] 10분위별 근로소득 평균(근로소득자만, 연령, 건강보험공단 자료)

(단위: 천 원)

	건강보험DB 연령							
구분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1분위	2,674	3,482	3,738	3,716	3,661	3,595	3,345	
2분위	9,515	9,742	9,860	9,931	9,917	9,829	9,606	
3분위	16,306	16,117	16,129	16,083	16,054	16,074	15,973	
4분위	21,192	21,155	21,107	21,137	21,162	21,146	21,070	
5분위	25,189	25,096	25,172	25,013	25,026	24,877	24,790	
6분위	29,812	30,412	30,640	30,560	30,421	30,361	30,203	
7분위	36,547	37,510	37,741	37,757	37,555	37,388	37,386	
8분위	43,590	47,411	47,863	48,152	48,063	47,445	47,958	
9분위		62,318	63,482	64,969	66,146	64,515	63,499	
10분위		93,128	104,360	115,623	117,166	147,218	215,25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년,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 [표 3-5] 10분위별 근로소득 평균(근로소득자만, 연령,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 원)

							(611 6 6)		
	경제활동인구조사								
구분				연령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1분위	5,727	6,024	6,989	7,291	7,198	6,302	4,040		
2분위	15,004	15,116	15,129	15,203	15,116	15,150	14,491		
3분위	20,370	20,789	20,747	20,763	20,823	20,645	20,297		
4분위	23,623	23,625	23,732	23,746	23,723	23,586	23,189		
5분위	25,243	26,335	26,516	26,405	26,281	26,143	25,565		
6분위	30,000	29,664	29,719	29,747	29,781	29,751	29,486		
 7분위	32,976	33,862	34,311	34,709	34,596	34,548	34,649		
8분위	42,000	39,807	40,198	40,331	40,439	40,062	40,045		
9분위	48,000	47,820	48,862	49,519	49,778	49,047	48,927		
10분위	78,903	80,161	73,672	75,667	78,807	84,408	115,342		

- [표 3-4]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 10분위별 각 연령의 근로소득 평균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3-5]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소득 10분위별각 연령의 근로소득 평균을 보여주고 있음.
  - 두 개의 표를 비교해보면, 낮은 분위에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 득 평균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소득 평균보다 낮음.
  - 하지만 6분위를 기점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 소득 평균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소득 평균보다 높아짐.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낮은 분위에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소득 파악이 떨어지지만, 높은 분위에서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분위에 속한 개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인데,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1분위에 속한 개인은 연령에 따른 근로소득 평균의 변화가 크지 않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확인한 10분위의 평균 근로소득은 경제활동인 구조사의 10분위 평균 근로소득보다 큰 차이로 높음.
- 그리고 10분위의 경우, 다른 분위와는 다르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 평균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04 서울시 소득 분포 추이

1\_소득원천별 개인소득 분포 추이 2\_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분포 추이 3\_서울시 소득원천별 소득분배 추이

# 04. 서울시 소득 분포 추이

# 1\_소득원천별 개인소득 분포 추이

- 1차연도 보고서에 이어서,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새로 신청한 2019년 자료를 추가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서울시와 전국의 개인소득 분포 추이를 확인하였음.
  - 서울시 자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고, 전국자료는 서울시와 동일한 시기의 사용 가능한 자료가 2018년과 2019년밖에 없어서 2018년과 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만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각 소득의 소득자 수와 소득자의 비율,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했음.
  - 2016년부터 시계열 추이를 분석한 이유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선되고 난 이후의 소득 분포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임.
  - 다음절부터는 개인소득 분포 시계열 추이뿐 아니라 가구소득 분포 시계 열 추이, 그리고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의 변화 추이도 확인할 예정임.
- 1차연도 보고서에서는 2016년~2018년까지 서울시 전수 자료와 전국 1% 표본을 사용했고,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2019년 서울시 2% 표본과 전국 1% 표본을 사용하였음.
  - 2016년~2018년과 2019년의 서울시 표본 숫자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자 수보다는 소득자 비율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것임.

#### 1) 근로소득

[표 4-1] 근로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근로소득자, 서울)

(단위: 명, %, 천원)

78	20세 이상 성인 근로소득자						
구분	근로소득자 수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6	3,617,755	42.7	39,846	26,169			
2017	3,679,382	43.6	40,614	26,892			
2018	3,756,937	44.5	41,606	27,798			
2019	74,889	45.8	42,811	29,11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주: 2019년 기준 실질소득 기준

[표 4-2] 근로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근로소득자, 전국)

(단위: 명, %, 천원)

78		20세 이상 성	인 근로소득자	
구분	근로소득자 수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8	185,600	42.7	34,691	26,455
2019	185,463	44.0	37,525	27,69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 o 서울시 근로소득자의 비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6년에는 42.7%였던 근로소득자 비율은 2017년에는 43.6%, 2018 년에는 44.5%, 2019년에는 45.8%로 꾸준히 약 1%p씩 증가하고 있 음.
  -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2019년 기준 실질소득으로 전환하였고, 2016 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이를 보았을 때,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매년 100만원씩 증가하고 있음.
- 전국 근로소득자의 비율은 2018년에 42.7%였고, 2019년에는 44.0%로 증가하였음.
  - 그리고 평균소득은 약 300만원 증가하였고, 중위소득은 100만원정도 높아졌음.
  -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어서, 노동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었음. 하지만 위의 분석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근로소득자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높아졌지만, 근로소득자의 비율이 감소 하는 경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물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일용근로소득자의 소득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노동 수요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는 존재함.
- 또한, 국세청의 소득 파악 능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 또한 국세청의 소득 파악 능력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2) 사업소득

[표 4-3] 사업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사업소득자, 서울)

(단위: 명. %. 천원)

				(E11, 8, 70, E2)
78				
구분	사업소득자 수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6	1,998,766	23.6	17,053	4,247
2017	2,127,635	25.2	16,563	4,166
2018	2,210,320	26.2	16,284	4,096
2019	46,203	28.2	15,750	3,98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주: 2019년 기준 실질소득 기준

[표 4-4] 사업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사업소득자, 전국)

(단위: 명, %, 천원)

78	20세 이상 성인 사업소득자			
구분	사업소득자 수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8	98,941	22.8	14,163	3,955
2019	102,244	24.3	14,088	3,93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주: 2019년 기준 실질소득 기준

ㅇ 서울시의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의 사업소득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

하는 추이를 보임.

- 서울시의 사업소득자 비율 추이가 2016년에는 23.6%였는데, 2019년 에는 28.2%로 크게 증가하였음. 하지만 늘어난 사업 소득자 비율에 비해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사업자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인 감소하는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음.
- 그리고 최근에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과 같은 인적 용역 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업소득자 비율은 증가했지만, 인적 용역 사업자의 소득은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업 소득자의 근로 형태를 같이 확인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근로 형태와 같은 정보가 없어서 추가 분석과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3) 금융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

#### [표 4-5] 금융소득·기타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금융·기타소득자, 서울)

(단위: %, 천원)

	20세 이상 성인 금융소득자			20세 이상 성인 기타소득자		
구분	금융소득자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기타소득자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6	0.47	124,712	40,655	1.37	5,094	1,932
2017	0.67	115,748	38,362	1.44	5,532	1,925
2018	0.64	123,802	39,396	1.64	6,526	2,319
2019	1.68	61,862	18,580	1.78	6,768	2,64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주: 2019년 기준 실질소득 기준

#### [표 4-6] 금융소득·기타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금융·기타소득자, 전국)

(단위: %, 천원)

	20세 0	이상 성인 금융	S소득자	20세 0	20세 이상 성인 기타소득자		
구분	금융소득자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기타소득자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8	0.28	99,600	34,848	1.16	6,062	2,108	
2019	0.86	39,594	17,100	1.26	6,372	2,525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 서울시의 만 20세 이상 성인 중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금융소득자의 비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달리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 2016년의 금융소득자 비율은 0.47%이고, 2017년에는 0.67%로 약간 증가하였음. 그리고 2018년에는 0.64%로 0.03%p 감소했다가, 2019년에는 1.68%로 1.44%p 증가하였음.
  - 2016년의 평균소득은 12,371만 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금융소득자 비율이 증가한 만큼 평균소득은 11,575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그리고 2018년에는 12,380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가, 2019년에는 6,186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o 전국의 금융소득자 비율 또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크게 증가하 였으며, 평균소득 또한 크게 감소하였음.
  - 2018년 금융소득자 비율은 0.28%였지만, 2019년에는 0.86%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리고 금융소득자의 2019년 평균 금융소득은 9,960만 원이지만, 2019년의 평균 금융소득은 3,959만 원으로 크게 감소함.
  - 서울시와 전국의 금융소득을 비교하였을 때, 서울시의 금융소득자의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높고, 평균소득 또한 큰 폭으로 높음. 서울시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간의 금융소득 격차가 상다히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9년의 금융소득자의 비율과 평균 금융소득이 2019년 이전 자료와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료 산정할 때 포함되는 금융소득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임.
  - 기존에는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기준은 연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이상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고 2천만 원 이하는 포함되지 않았음.
  - 하지만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한 단계로서 건 강보험료 산정시 포함되는 금융소득 기준이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2019년 금융소득부터는 1천만 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자들도 포함되었다.
  - 2018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금융소득자 중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금 융소득인 사람의 비율은 3.65%인 것에 반해, 2019년은 54.18%로 대

폭 증가하였음.

-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의 비율은 2018년 1.38%, 2019년 1.13%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미뤄보았을 때, 금융소득 산정기준의 변화로 인해서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들이 2019년에 크게 포함되어 금융소득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평균 금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임.

[표 4-7] 공적연금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공적연금소득자, 서울)

(단위: %, 천원)

78	604	네 이상 성인 공적연금 소	득자
구분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6	36.1	8,012	3,916
2017	37.3	7,957	4,000
2018	36.3	8,429	4,223
2019	37.8	8,443	4,23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주: 2019년 기준 실질소득 기준

[표 4-8] 공적연금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공적연금소득자, 전국)

(단위: %, 천원)

78	604	네 이상 성인 공적연금 소	득자
구분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8	36.9	7,766	4,052
2019	38.0	7,742	4,05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 서울시 공적연금수급자의 비율의 시계열 추이는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이 있으며, 평균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전 국 공적연금수급자 비율은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증가했지만,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은 큰 변화가 없음.
  - 서울시 공적연금소득자의 비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상 승하지 않고, 변동성이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2018년 에 1세 증가했기 때문임. 따라서 2018년의 공적연금소득자의 비율이 갑자기 감소하게 되었음.

- 공적연금소득자 비율이 2018년 이후부터는 서울시와 전국 모두 상승하고 있지만, 평균 공적연금소득은 약 840만원(서울), 약 770만원(전국)으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음.
- 만 60세 이상 성인 중 공적연금 소득자 비율이 36%~38%에 불과하다 면, 나머지 62%~64%의 노인들은 공적연금소득 없이 노후생활을 맞이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해줌.

#### 4) 총소득

#### [표 4-9] 총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총소득자, 서울)

(단위: %, 천원)

			(211, 70, 22)	
78	20세 이상 성인 총소득자			
구분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6	64.1	34,999	19,937	
2017	66.1	35,562	20,393	
2018	67.6	36,258	21,330	
2019	70.3	37,139	22,60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주: 2019년 기준 실질소득 기준

#### [표 4-10] 총소득의 시계열 추이(성인 총소득자, 전국)

(단위: %, 천원)

구분	급 20세 이상 성인 총소득자			
<b>丁正</b>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8	65.0	30,536	20,121	
2019	67.3	31,507	21,44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 서울시와 전국의 총소득자 비율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소득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총소득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에서 2019년의 총소득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의 일부는 금융소득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의 변화한 것이 기여했음.
  - 서울시와 전국을 비교해봤을 때, 전국의 평균소득에 비해서 서울시의

평균소득이 약 600만원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서울시와 지역 간의 소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_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분포 추이

#### 1) 근로소득

#### [표 4-11] 가구 근로소득의 시계열 추이(서울)

(단위: 천 원)

				(= 11 = =/
78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구분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6	34,290	15,369		
2017	35,540	16,502		
2018	36,812	18,320		
2019	36,810	19,200	39,010	21,26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주: 2019년 기준 실질소득 기준

#### [표 4-12] 가구 근로소득의 시계열 추이(전국)

(단위: 천 원)

78	주민등록세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구분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8	30,608	15,600		
2019	30,789	15,710	32,917	18,92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 가구 단위로 근로소득의 시계열 추이를 확인해보면,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소득이 증가하다 2019년에 근로소득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남.
- ㅇ 가구(세대) 정의에 따라서 가구 근로소득의 평균과 중위값이 차이가 있음.
  - 주민등록세대 기준은 행정적인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동거하고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세대 분리가 된 경우에는 다른 세대로 분류함. 하지만 인총가구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주소(동 단위)에 속한 친족 관계라면 하나의 가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인총가구 기준에서는 같은 세대(가구)로 간주함. 이러한 방식은 인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정의하는 가구 개념 임1).

- 주민등록세대 기준의 서울시 평균소득은 3,681만 원이지만, 인총가구 기준의 서울시 평균소득은 3,901만 원으로 약 22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함.
- 주민등록세대 기준 전국 평균소득은 3,079만 원인 것에 비해, 인총가 구 기준 전국 평균소득은 3,292만 원으로, 약 220만 원 차이가 있음.
- 주민등록세대 기준과 인총가구 기준의 평균소득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 유는 주민등록세대는 사회보장 현금 급여 수급을 위해 행정적으로 세대 분리를 해서 소득이 낮은 1인 세대(가구)의 비율이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서울시의 평균 근로소득와 전국의 평균 근로소득의 차이가 약 600백만원
  정도 차이가 있음.
  - 개인 단위 분석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가구 단위 분석에서도 근로소득의 차이가 있음.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와 전국의 근로소득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sup>1)</sup>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상세 주소까지 모두 이용하여 동일주소인 친족 관계를 파악함. 하지만 건강보 험공단 자료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소는 '동 단위'가 최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동 단위로 동일한 주소인 친족 관계를 하나의 가구(세대)로 묶었음. 따라서 같은 동 내에서 다른 거주공간에 살고 있는 친족인 경우에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다른 가구로 분류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동일한 가구로 분류된다는 차이점 이 있음. 본 보고서의 인총가구 기준을 이용한 분석은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

#### 2) 사업소득

#### [표 4-13] 가구 사업소득의 시계열 추이(서울)

(단위: 천 원)

78	주민등록/	네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구분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6	8,109	0			
2017	8,386	0			
2018	8,483	0			
2019	8,367	0	8,928	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주: 2019년 기준 실질소득 기준

#### [표 4-14] 가구 사업소득의 시계열 추이(전국)

(단위: 천 원)

78	주민등록/	네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구분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		중위소득	
2018	6,377	0			
2019	6,372	0	6,843	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 가구 사업소득의 시계열 추이를 보았을 때,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 2016년의 사업소득 평균은 811만원이고, 2017년은 839만원, 2018년에는 848만원, 2019년에는 약간 감소한 837만원임.
  - 전국의 사업소득 평균은 2018년에 638만원이고 2019년에는 637만원 으로 거의 변화가 없음.
  -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이 높지 않은 프리 랜서와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같은 인적 용역 사업자들이 증가했기 때 문이라고 보임.
- ㅇ 가구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서 약 5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 차이가 있음.

#### 3) 금융소득

#### [표 4-15] 가구 금융소득의 시계열 추이(서울)

(단위: 천 원)

78	주민등록/	세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구분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6	1,194	0			
2017	1,581	0			
2018	1,597	0			
2019	2,004	0	2,163	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주: 2019년 기준 실질소득 기준

#### [표 4-16] 가구 금융소득의 시계열 추이(전국)

(단위: 천 원)

78	주민등록/	세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구분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8	553	0			
2019	638	0	726	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 ㅇ 가구 금융소득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음.
  - 서울시의 경우, 2016년의 가구 금융소득은 119만원이었지만, 2019년 에는 200만원으로 약 80만원 정도 증가하였음. 전국의 경우에는 2018년에 55만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64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들만 분석했을 때에는 금융소득의 평균이 낮아졌지만, 전체 가구의 금융소득 평균을 분석했을 때에는 금융소득 평균이 증가했음.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 단위 분석에서는 금융소득이 있는 대상자만 선택해서 금융소득 평균을 보았지만, 가구 단위 분석에서는 모든 가구의 금융소득 평균을 보았기 때문임. 2019년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사이의 금융소득자들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런 개인들이 기여한 가구의 수 또한 많아졌고, 따라서 전체 가구에서의 평균 금융소득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 4) 총소득

#### [표 4-17] 가구 총소득의 시계열 추이(서울)

(단위: 천 원)

74	주민등록/	네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구분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6	45,202	23,822			
2017	47,214	25,246		,	
2018	48,742	26,642			
2019	49,112	27,540	52,111	29,75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주: 2019년 기준 실질소득 기준

#### [표 4-18] 가구 총소득의 시계열 추이(전국)

(단위: 천 원)

78	주민등록/	네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구분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2018	39,262	23,522			
2019	39,559	24,050	42,321	26,47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 가구 총소득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가구의 정의에 따라서 평균소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시 가구 평균 총소득은 2016년에는 4,520만원이고, 2019년에는 4,911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전국 가구 평균 총소득은 2018년에 3,926 만원이고, 2019년에는 3,956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인총가구 기준으로 평균 총소득을 분석하면, 서울시는 5,211만원이고, 전국은 4,232만원으로 인총가구 기준의 평균이 더 높음.
- 가구 기타소득과 가구 공적연금 소득 또한 따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기 타소득과 공적연금이 있는 가구 많지 않아 평균소득이 낮고, 중위소득도
   0으로 확인되어 따로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가구 단위 소득의 시계열 추이는 개인 단위 소득의 시계열 추이만큼 역동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음. 그 이유는 각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 변화가가구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임.

### 3 서울시 소득원천별 소득분배 추이

#### 1) 균등화 개인 총소득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변화

[표 4-19] 균등화 개인 총소득의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변화(서울)

(단위: %)

78	주민등록/	네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구분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2016	0.579	32.2			
2017	0.574	31.7			
2018	0.568	31.1			
2019	0.563	30.8	0.555	3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주: 2019년 기준 실질소득 기준

#### [표 4-20] 균등화 개인 총소득의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변화(전국)

(단위: %)

78	주민등록/	네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구분	지니계수	나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2018	0.536	32.2			
2019	0.535	32.1	0.525	31.1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 o 균등화 개인 총소득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의 추이를 서울시 2016년부 터 2019년까지, 전국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분석하였음.
  - 서울시의 경우, 2016년부터 꾸준히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전국도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감소하였음.
  - 서울시의 2019년 지니계수는 0.563으로 전국 2019년의 지니계수 0.535보다 높음. 서울시가 다른 지역보다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상대빈곤율은 서울시가 더 낮은데, 그 이유는 서울시의 소득 수

준이 다른 지역보다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임.

- ㅇ 가구 개념에 따라서 지니계수와 빈곤율에도 차이가 있음.
  - 서울시 주민등록세대 기준일 때의 지니계수는 0.563인데, 인총가구 기준일 때에는 0.555로 더 낮음. 상대빈곤율 또한 약간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됨. 전국 단위로 분석했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
  - 주민등록세대 기준이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더 높은 이유는 주민등록세대에서는 낮은 소득의 1인 가구가 사회보장 급여 수급을 위해 동일 주소에 거주한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세대 분리를 하여 다른 세대로 분류하기 때문임.
  - 행정자료를 이용한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연구를 할 때, 과연 어떤 가구(세대) 개념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 2) 균등화 소득원천 추가에 따른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변화

- 각 소득 원천을 추가함에 따라서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각 소득원천이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지 알 수 있음.
- 아래의 표들은 서울시와 전국 단위 표본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소득원천을 추가했을 때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임.
  - 서울시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반적인 각 소득원천의 지니계 수 감소 및 상대빈곤율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사업소득과 공적연 금소득은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하지만 금융소득은 오히려 불평등을 더 높이고, 상대빈곤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음.
  -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근로소득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소득이 점점 평등하게 분

배되고 있음을 의미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이 상대빈곤율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는 각각 약 8.8%p, 0.1%p, 2.0%p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정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상대 빈곤율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 금융소득도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한해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시 간이 지나감에 따라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낮아지는데 가장 큰 기 여를 한 소득원천은 근로소득임.
- 하지만 이러한 해석도 서울시에 한해서 해석이 가능함. [표 4-23]의 전국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

[표 4-21] 균등화 소득원천 추가에 따른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변화(2016년~2018년, 서울)

(단위: %)

구분	2016년 (주민등록세대 기준)		201 (주민등록	7년 세대 기준)	2018년 (주민등록세대 기준)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근로소득	0.622	43.1	0.617	42.7	0.610	42.1
+사업소득	0.584	34.3	0.578	33.9	0.572	33.4
+금융소득	0.593	34.2	0.590	33.8	0.583	33.3
+기타소득	0.593	34.2	0.589	33.7	0.583	33.2
+공적연금소득	0.579	32.2	0.574	31.7	0.568	31.1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8년

주: 2019년 기준 실질소득 기준

#### [표 4-22] 균등화 소득원천 추가에 따른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변화(2019년, 서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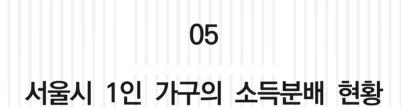
78	2019년(주민동	등록세대 기준)	2019년(인총가구 기준)		
구분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근로소득	0.607	41.8	0.596	41.2	
+사업소득	0.568	33.3	0.558	32.5	
+금융소득	0.580	33.0	0.570	32.1	
+기타소득	0.580	32.8	0.570	32.0	
+공적연금소득	0.563	30.8	0.555	30.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표 4-23] 균등화 소득원천 추가에 따른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변화(2018년, 2019년, 전국) (단위: %)

						,	
				2019년 (주민등록세대 기준)		2019년 (인총가구 기준)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근로소득	0.590	42.3	0.591	42.3	0.579	41.4	
+사업소득	0.550	34.5	0.551	34.7	0.539	32.6	
+금융소득	0.555	34.4	0.554	34.4	0.543	33.4	
+기타소득	0.555	34.3	0.554	34.3	0.543	33.3	
+공적연금소득	0.536	32.2	0.535	32.2	0.525	31.1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1\_서울시 1인 가구에 관한 연구 2\_가구원 수와 연령의 교차분석 3\_개인 기준 가구원 수별 균등화 평균소득 4\_1인 가구 연령대별 평균소득 시계열 추이

# 05. 서울시 1인 가구의 소득분배 현황

## 1\_서울시 1인 가구에 관한 연구

- o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속도가 빠르면서도 가장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전국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이 1980년에 4.5%에서 2015년 27.2%로 22.7%p 증가하였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1980년에 4.8%에서 2015년 29.5%로 24.7%p 증가하여 다른 지역보다 서울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변미리, 2017).
  - 그리고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로 122만 9,421가구로,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 40만 가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울에 1인 가구가 매우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통계청, 2019).
- o 이처럼 급증하는 1인 가구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은 '개인화'라는 하나의 근대적 사회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Beck(2002)이 지적하였듯이, 개인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사회가 도래했을 가능성도 있음.
  - 기존의 연구들에서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태완, 최준영(2017)과 김태완, 강예은(2020)의 연구에서 1인 청년 가구가 다른 청년 가구 유형에 비해서 소득과 지출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리고 강은나, 이민홍(2016)의 연구는 청년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된 중

년층,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된 노년층의 경제적 수준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정경희(2015)의 연구는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가족 문화의 변화와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보여주었음.

- 이뿐만 아니라 1인 가구는 심리·사회적으로 고립되어(김혜영 외, 2007),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고독사, 노인 고독사를 경험하 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서울은 1인 가구 수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1인 가구의 경제적 현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
  - 앞서 소개한 기존 연구에서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것을 확인했지만, 전국 단위의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서울의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1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분석 자료들은 시·도 단위로 구분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임. 그리고 시·도 단위로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례 수가 많지 않아서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임.
- 기존의 1인 가구 연구들을 보면, 1인 가구의 비율과 경제적 현황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구의 개념이연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임.
  - 1인 가구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을 하는 연구들의 경우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주로 이용함(변미리, 2017; 통계청, 2019).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소득 변수가 있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비롯한 패널조사자료와 그 외에 가계동향조사,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등을 이용함(강은나, 이민홍, 2016; 김태완, 최준영, 2017; 김태완, 강예은, 2020).
  - 하지만 각 조사마다 가구의 정의와 개념 차이가 있는데, '인구주택총조 사'는 주민등록세대 기준과 가족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학업과 취업

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가구원들을 다른 세대로 간주하지만, 패널조 사자료나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소득 조사자료는 학업과 취업으로 따로 거주하는 가구원이 있더라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구로 간주함.

- 이렇게 따로 거주하는 가구원이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인 가구 비율에 포함되고, 소득 조사자료에서는 1인 가구 비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각 조사자료에 따라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차이가 큼. 일반적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알려져있지만, 소득 조사자료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을 확인하면,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비율에 대한 정확한 경제적 여건
  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세대 기준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주민등록세대 기준과 인 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가구 구성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기준으 로 1인 가구의 현황의 비율부터 1인 가구의 경제적 현황까지 분석할 예정임.

## 2\_가구원 수와 연령의 교차분석

### 1) 가구 기준 가구원 수와 가구주의 연령 교차분석

[표 5-1]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의 교차표(서울, 가구)

(단위: 가구, %)

_	7Н	주민등록세대 기준							
Т	분	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합계
717	1명	68.9	80.6	46.5	28.7	25.5	28.7	37.9	36.0
가구 원수	2명	19.8	12.4	17.2	13.0	14.8	28.8	37.0	19.7
연구 (20	3명	6.9	4.8	19.2	20.4	20.9	23.4	14.4	18.9
16)	4명	3.3	1.7	13.5	29.1	30.3	13.8	5.6	19.2
10)	5명+	1.1	0.5	3.6	8.9	8.5	5.4	5.2	6.2
Ē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17	1명	71.9	81.9	47.5	29.0	25.7	29.0	37.6	36.6
가구	2명	18.8	11.9	17.4	13.3	15.0	28.7	37.1	20
원수 (20	3명	5.6	4.4	18.8	20.6	21.2	23.2	14.6	18.8
17)	4명	2.8	1.5	12.8	28.5	29.8	13.8	5.6	18.5
17)	5명+	0.9	0.4	3.4	8.7	8.3	5.3	5.1	6.0
Ē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17	1명	73.4	83.1	49.2	29.5	26.2	29.8	37.7	37.6
가구 원수	2명	17.9	11.3	17.5	13.6	15.3	28.8	37.4	20.4
연구 (20	3명	5.1	3.9	18.2	20.7	21.3	22.9	14.5	18.6
18)	4명	2.8	1.3	12	27.7	29.1	13.6	5.5	17.7
10)	5명+	0.8	0.4	3.1	8.5	8.1	5.0	4.9	5.7
<u></u>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17	1명	81.8	86.5	55.0	33.9	30.1	32.7	38.8	41.8
가구	2명	13	9.3	17.3	15.0	16.0	28.6	37.9	20.8
원수 (20	3명	1.3	2.9	16.6	21.5	21.7	21.9	14.2	18.1
19)	4명	2.6	1.1	9.3	23.9	26.2	12.7	4.9	15.2
19)	5명+	1.3	0.2	1.8	5.8	5.9	4.0	4.2	4.1
Ē	발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주: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의 가구원 수

- o 서울시 가구 기준 가구원 수와 가구주의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
  - 1인 가구의 비율이 다른 가구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6년에 36.0%에서 2019년에 41.8%가 되었음. 반 면에 4인 가구의 비율은 2016년에 19.2%였으나, 2019년에는 15.2%로 감소하였음.

-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 수의 비율을 확인해보면, 모든 가구주 연령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4인 가구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30세-39세는 2016년에 1인 가구의 비율이 46.5%였지만, 2019년에 는 55.0%가 되었음. 그리고 40세-49세의 경우에도 2016년에는 28.7%였지만, 2019년에는 33.9%로 증가하였음.
- 2016년에는 일부 연령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9년 에 이르러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5-2]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의 교차표(서울, 가구)

(단위: 가구. %)

_	-		인총가구 기준								
구분		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합계		
717	1명	76.6	83.1	50.5	29.7	27.3	29.3	31.6	37.7		
가구 원수	2명	18.2	10.7	18.3	15.3	16.2	25.3	31.1	19.6		
연구 (20	3명	1.3	4.1	16	20.4	21.8	21.8	15.2	18		
19)	4명	2.6	1.5	10	22.7	26.1	15.1	9.2	16.1		
19)	5명+	1.3	0.5	5.3	11.9	8.5	8.5	12.8	8.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주: 인총가구 기준으로의 가구원 수

- 가구 개념에 따라서 가구원 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세대 기준과 인총가구 기준의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과의 교차분석을 진행하였음.
  - 2019년 기준, 주민등록세대 기준의 1인 가구 비율이 인총가구 기준의 1인 가구 비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주민등록세대 기준이 1 인 가구를 과대 대표한다는 또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음.
  - 각 연령별로 1인 가구 비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약 5%p 정도 주민등록 세대 기준이 1인 가구 비율이 높은데, 70세 이상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약 7.2%p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더 큰 격차가 있음.
  - 고연령층에서 행정적인 세대 분리를 더 많이 진행한다는 근거로 볼 수 있음.

#### [표 5-3]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의 교차표(전국, 가구)

(단위: 가구, %)

_	7 H				주민 <del>등록</del>	네대 기준			
Т	분	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합계
717	1명	76.2	79.5	41.5	26.2	27.9	32.5	43.2	35.9
가구	2명	16.1	11.7	15.2	12.7	17.1	33	36.9	21.3
원수 (20	3명	4.7	5.9	20	19.9	21.3	20.5	11.6	18.3
(20 18)	4명	3.1	2.3	18.2	30.3	25.6	9.7	4	18
10)	5명+	0	0.6	5.2	10.9	8	4.3	4.2	6.5
ē	감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17	1명	78.4	84.1	47.1	30.5	30.8	35.9	44.8	39.7
가구	2명	18.3	9.1	16.1	14.6	18	32.8	37.0	22
원수 (20	3명	3.3	4.9	19.2	21.7	21.7	19.2	10.9	18.1
(20	4명	0	1.7	14.1	25.5	23.1	8.8	3.7	15.3
19)	5명+	0	0.3	3.5	7.7	6.4	3.3	3.6	4.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주: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의 가구원 수

#### [표 5-4]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의 교차표(전국, 가구)

(단위: 가구, %)

_	- н		인총가구 기준									
٦	분	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합계			
717	1명	72.2	78.9	41.9	25.8	27.2	31.6	37.2	34.8			
가구 원수	2명	22.4	11.1	16.7	15	18	29	32.1	20.9			
연구 (20	3명	5	6.6	18.5	20.5	21.7	19.5	12.4	18.2			
	4명	0.4	2.4	14.5	24.5	23.5	11.3	7.6	16.3			
19)	5명+	0	1	8.4	14.1	9.6	8.5	10.6	9.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주: 인총가구 기준으로의 가구원 수

- o 위의 표는 전국 가구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의 교차 분석을 진행한 결과임.
  -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서울시의 분석 결과와 전국 가구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서울시는 젊은 연령층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에 반해서, 전국 단위 분석 결과에서는 60대, 70대 이상의 1인 가구 비율이 35.9%, 44.8%로서울시의 32.7%, 38.8%보다 더 높음.
  - 서울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홀로 거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을 것이고, 반면에 농어촌에는 노년층 인구가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국 단위 분석에서는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ㅇ 전국 단위 분석에서도 가구 개념에 따라서 1인 가구의 비율 차이가 있었음.
  - 서울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세대 기준의 1인 가구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되었고, 고연령층에서 주민등록세대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44.8%, 인총가구 기준 37.2%로 약 7.6%p 차이라 다른 연령보다 더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음.
  - 이 또한 행정적인 세대 분리가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간 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2) 개인 기준 가구원 수와 개인 연령의 교차분석

- ㅇ 개인 기준에서 가구원 수와 개인연령의 교차분석을 진행하였음.
  -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을 교차 분석하였을 때에는 각 가구 구성원들이 어떤 가구에 속해져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개인 단위 분석을 통해서 각 가구 구성원들이 어떤 가구에 속해져 있는지 파악하였음.
  - 전반적으로 개인 단위 분석이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에 속하는 개인들의 비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서울시의 2016년 기준 4명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속한 개인들이 3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명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속한 개인이 23.5%임. 1인 가구에 속한 개인은 가구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15.0%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1인 가구에 속하는 개인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16년의 1인 가구에 속하는 개인의 비율이 15.0%였다면, 2019년에는 19.0로 4.0%p 증가하였음. 반면에 4인 가구에 속하는 개인들이 2016년에는 31.7%였으나, 2019년에는

27.6%로 4.1%p 감소하였음.

- 그리고 이런 변화의 경향이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 20-29세의 1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은 2016년에는 16.3%였지만, 2019년에 는 23.2%로 약 6.9%p 증가한 반면에, 70세 이상의 1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은 2016년 23.3%였지만, 2019년에는 24.3%로 1.0%p만 증가하였음. 젊은 연령층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 [표 5-5] 가구원 수와 개인 연령의 교차표(서울)

(단위: 명, %)

	(ਪੁਸ਼: 8, 70)									
_	분				주민등록	네대 기준				
٦	Œ	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합계	
717	1명	0.5	16.3	21.2	15.9	15.6	17.6	23.3	15.0	
가구	2명	4.8	10.4	16.7	11.8	15.1	33.0	38.0	16.3	
원수 (20	3명	22.6	21.3	28.3	22.3	23.8	26.4	16.9	23.5	
16)	4명	48.3	38.2	24.2	36.1	34.6	14.9	9.0	31.7	
10)	5명+	23.8	13.8	9.6	13.8	10.9	8.2	12.8	13.6	
Ē	<u></u>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17	1명	0.5	17.3	21.7	15.9	15.6	17.8	23.2	15.4	
가구	2명	4.72	10.5	17.1	12.3	15.2	32.9	38.4	16.7	
원수 (20	3명	22.9	21.2	28.3	22.9	24	26.4	17.2	23.6	
	4명	48.1	37.4	23.7	35.3	34.3	15.0	9.0	30.9	
17)	5명+	23.8	13.6	9.2	13.7	10.8	7.0	12.2	13.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17	1명	0.4	18.0	22.9	16.1	15.9	18.2	23.3	16	
가구 의소	2명	4.6	10.8	17.6	12.7	15.4	33.1	39.1	17.3	
원수 (20	3명	23.3	21.0	28	23.5	24.2	26.3	17.4	23.7	
18)	4명	48	36.2	22.9	34.3	33.8	14.8	8.8	30.1	
	5명+	23.7	13.2	8.7	13.4	10.7	7.5	11.5	12.9	
Ē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17	1명	0.2	23.2	27.8	19.6	18.7	20.5	24.3	19	
가구 의소	2명	6.7	11.1	18.3	14.2	16.6	33.7	40.8	18.9	
원수 (20	3명	28.5	21.4	27.4	24.7	25	26.1	17.3	24.7	
19)	4명	45.7	34.2	20.4	31.2	31.6	14.1	8.6	27.6	
13)	5명+	18.9	10.2	6.2	10.3	8.1	5.6	9	9.8	
Ē	<u></u>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 [표 5-6] 가구원 수와 개인 연령의 교차표(전국)

(단위: 개인, %)

								\ <b>_</b>	
_	т н				주민등 <del>록</del>	네대 기준			
7	분	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합계
717	1명	0.3	14.4	19.1	14.5	17.1	20.2	27.5	15
가구	2명	4.6	10.3	15.1	11.9	18.6	38.4	39.6	17.8
원수 (20	3명	21.1	13.6	28.1	21.6	25	23.4	14.9	22.8
(20 18)	4명	47.7	36.4	26.9	36.4	28.9	11.1	7.4	30
10)	5명+	26.3	15.3	10.8	15.6	10.4	6.9	10.7	14.5
Ē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17	1명	0.2	17.8	23.6	18.0	19.4	22.9	29.1	17.7
가구	2명	6.5	10.8	16.7	13.9	19.6	39.1	41.1	19.6
원수 (20	3명	26.8	24.7	28.3	23.5	25.3	22.6	14.8	24.2
-	4명	44.6	34.4	23.4	32.5	27.2	10.2	7.0	27.2
19)	5명+	21.8	12.3	8.1	12.1	8.4	5.0	8.1	11.3
Ē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 o 위의 표는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개인 연령의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여줌.
  - 전국 단위 분석에서 20대와 30대의 1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 17.8%, 23.6%로 서울시 20대 30대의 23.2%, 27.8%보다 낮음.
  - 반면에, 고연령층의 1인 가구에 속하는 개인의 비율은 서울이 24.3% 인 것에 반해, 전국은 29.1%로 4.8%p나 높은 것으로 확인됨.
- ㅇ 그리고 각 연령별로 1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 일정한 패턴을 보임.
  - 낮은 연령층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높다가, 중년층이 되었을 때에는 1인 가구 비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노년층이 되었을 때에는 1인 가구 비율이 다시 높아짐.
  - 낮은 연령층의 개인들인 1인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높기는 해도 여전 히 3인 가구, 4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있는 경우가 많지만, 노년기에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1인 혹은 2인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많음.

### 3\_개인 기준 가구원 수별 균등화 평균소득

[표 5-7] 가구원 수별 평균 균등화 소득(서울)

(단위: 천 원)

							2TI 2 2)
_	н			주민등록	네대 기준		
7	분	근로	사업	금융	기타	연금	총소득
	1명	14,677	3,149	364	60	425	18,676
가구원수	2명	16,722	5,032	929	78	1,935	24,696
(2016)	3명	25,780	5,613	802	105	1,201	33,500
(2010)	4명	31,387	6,880	957	123	642	39,989
	5명 이상	26,953	7,685	1,223	111	967	36,939
전체 평균		24,591	5,836	864	101	996	32,387
	1명	15,216	3,211	481	66	450	19,424
기그이人	2명	17,454	5,280	1,245	92	2,021	26,091
가구원수 (2017)	3명	27,132	5,886	1,080	120	1,273	35,491
(2017)	4명	33,021	7,222	1,310	144	681	42,378
	5명 이상	28,294	8,080	1,550	124	1,038	39,087
전체	평균	25,672	6,083	1,150	115	1,057	34,078
	1명	16,125	3,284	478	83	474	20,443
가구원수	2명	18,378	5,338	1,302	119	2,154	27,292
기구현구 (2018)	3명	28,671	6,186	1,113	158	1,361	37,488
(2010)	4명	34,699	7,447	1,317	199	722	44,384
	5명 이상	29,696	8,209	1,665	197	1,111	40,879
전체	평균	26,834	6,158	1,177	157	1,131	35,456
	1명	17,371	3,291	502	99	503	21,765
기그의人	2명	20,618	5,976	1,984	158	2,314	31,047
가구원수 (2019)	3명	30,751	6,455	1,568	184	1,472	40,429
(2019)	4명	36,273	7,970	1,445	211	790	46,684
	5명 이상	29,906	8,428	3,018	169	1,259	42,777
전체	평균	27,738	6,375	1,552	169	1,237	37,069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 이 위의 표는 서울시의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각 소득원천별 균등화 소득 평 균을 보여주고 있음
  -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각 소득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음.
  -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계열 추이를 보더라도,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각 소득원천의 평균이 좁혀지지 않고, 더 벌어지고 있음. 1인 가

구의 총소득은 2016년에 1,867만원, 4인 가구는 3,999만원으로 2,132만원이 차이가 나고 2019년에는 1인 가구의 총소득은 2,177만 원이었는데, 4인 가구의 총소득은 4,668만원으로 2,491만원 차이가 발생하였음.

#### [표 5-8] 가구원 수별 평균 균등화 소득(전국)

(단위: 천 원)

_	н			주민등록/	네대 기준		
7	분	근로	사업	금융	기타	연금	총소득
	1명	13,218	2,540	334	89	601	16,783
기그이스	2명	14,402	3,727	270	64	2,287	20,750
가구원수 (2018)	3명	23,705	4,792	418	111	1,182	30,207
	4명	28,678	5,489	485	108	507	35,267
	5명 이상	24,562	5,626	291	91	832	31,403
전체	평균	22,100	4,596	380	96	1,038	28,211
	1명	14,399	2,781	227	75	646	18,128
가구원수	2명	16,312	3,995	584	103	2,318	23,311
	3명	25,627	4,839	426	106	1,179	32,176
(2019)	4명	29,864	5,898	601	137	554	37,054
	5명 이상	25,242	6,308	440	115	855	32,959
 전체			4,765	471	109	1,101	29.373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 이 서울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반적으로 균등화 총소득 평균이 높음.
  - 연령에 따라서도 서울시와 전국의 평균소득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4 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9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음.
  - 1인 가구는 서울시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가장 총소득 이 낮은 인구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소득 격차는 가구원 수와 비례해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4\_1인 가구 연령대별 균등화 평균소득 시계열 추이

[표 5-9] 1인 가구 연령별 균등화 평균 소득원천 시계열 추이(서울)

(단위: 천 원)

	<u>(</u> 년위: 선 원)										
	구분			주민등록	네대 기준						
_	TE	근로	사업	금융	기타	연금	총소득				
	0-19	1,253	482	0	6	0	1,741				
	20-29	16,594	1,215	83	73	0	17,965				
연령	30-39	25,712	3,109	174	69	0	29,065				
(20	40-49	18,779	4,613	362	76	4	23,840				
16)	50-59	10,046	3,675	397	49	135	14,302				
	60-69	5,602	3,700	615	56	1,925	11,901				
	70+	1,791	2,338	763	29	1,178	6,099				
-	전체	14,677	3,149	364	60	425	18,677				
	0-19	1,566	670	16	0	0	2,252				
	20-29	16,929	1,304	79	77	0	18,390				
연령	30-39	26,660	3,194	233	76	0	30,164				
(20	40-49	20,042	4,794	547	86	4	25,472				
17)	50-59	10,737	3,962	547	57	114	15,417				
	60-69	6,030	3,486	755	52	1,973	12,296				
	70+	1,856	2,365	958	37	1,257	6,471				
	전체	1,682	3,211	481	66	450	19,425				
	0-19	17,727	728	47	2	0	2,458				
	20-29	28,192	1,400	114	102	0	19,345				
연령	30-39	21,630	3,315	252	98	0	31,859				
(20	40-49	11,687	5,019	533	106	5	27,293				
18)	50-59	6,481	4,109	607	89	115	16,608				
	60-69	1,990	3,513	697	64	1,982	12,736				
	70+	16,125	2,332	873	23	1,357	6,574				
	전체	15,216	3,284	478	83	474	20,443				
	0-19	2,373	92	0	0	0	2,465				
	20-29	18,177	1,854	195	122	0	20,348				
연령	30-39	29,739	3,865	157	130	0	33,891				
(20	40-49	23,807	4,475	378	93	4	28,757				
19)	50-59	13,088	4,138	902	144	100	18,372				
	60-69	7,333	3,073	644	53	2,023	13,126				
	70+	2,379	2,012	1,051	20	1,592	7,054				
	전체	17,371	3,291	502	99	503	21,765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6년~2019년 주: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의 가구원 수

o 3절에서는 1인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 이라는 것을 확인했음. 하지만 1인 가구는 알려져 있는 것보다 하위 집단 별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함.

- 본 절에서는 1인 가구만으로 대상을 좁혀서, 연령대별 각 소득원천별 평균을 확인하고자 함. 연령대별로 구분하였을 때 과연 어떤 연령대의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인지 규명하고자 함.
- 서울시 기준 각 연령대별 균등화 평균소득을 비교하였음. 총소득 기준으로 가장 평균소득이 낮은 연령대는 0세에서 19세임. 이 연령대에 1인 가구라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2019년 기준 총소득은 247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소득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
-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연령대는 70세 이상 노인임. 평균 총소 득은 2019년 기준 705만원으로 근로소득은 238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사업소득 201만원, 연금소득 159만원임.
- 일반적으로 청년 가구 중에서 청년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 상이라고 알려져 있음(김태완, 최준영, 2017; 김태완, 강예은, 2020). 하지만 1인 가구 중에서 청년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집단에 속함.
- 2019년 기준 30세-39세의 총소득은 3,389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의 1 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평균 총소득임. 심지어 40대와 50대보다도 더 높은 평균 총소득임. 그리고 20세-29세 1인 가구 또한 경제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취약지 않음. 30대와 40대를 제외하고세 번째로 높은 평균소득을 가지고 있음.
-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생애주기 과정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연령 대는 50대인데, 50대 1인 가구의 균등화 총소득은 2019년 기준으로 1,837만 원으로 매우 낮다는 점임.
- 따라서 서울시에서 집중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청년 1인 가구보다 미성 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 그리고 50대, 60대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임.
- o 아래 표는 서울시와 비교하기 위해서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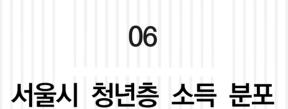
-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와 전국 표본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연 령과 다르게 30세-39세와 70세 이상의 균등화 총소득이 서울시가 더 높다는 점임. 다른 연령대의 균등화 총소득 평균은 서울시와 전국이 비 슷한 수준임.

[표 5-10] 1인 가구 연령별 균등화 평균 소득원천 시계열 추이(전국)

(단위: 천 원)

_	78			주민등록/	네대 기준		
_	<del>7분</del>	근로	사업	금융	기타	연금	총소득
	0-19	1,657	27	0	0	0	1,683
	20-29	18,742	1,028	42	55	0	19,867
연령	30-39	25,092	2,470	189	61	0	27,812
(20	40-49	18,595	3,770	473	64	14	22,918
18)	50-59	11,562	3,759	344	257	138	16,059
	60-69	6,085	3,079	772	58	2,229	12,223
	70+	985	964	195	17	1,227	3,387
7	전체	13,218	2,541	334	89	601	16,783
	0-19	1,340	32	0	0	0	1,372
	20-29	19,399	1,188	104	92	0	20,783
연령	30-39	25,953	2,482	97	74	0	28,607
(20	40-49	20,181	4,583	198	63	2	25,027
19)	50-59	13,650	4,374	279	74	118	18,494
	60-69	6,743	2,966	364	144	2,384	12,601
	70+	1,268	836	302	14	1,373	3,794
7	전체	14,399	2,781	227	75	646	18,128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8년~2019년 주: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의 가구원 수



1\_서울시 청년층의 소득에 관한 연구 2\_서울시 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징 3\_청년 개인의 총소득과 균등화 총소득 분포 4\_청년 가구 유형과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분포 5\_청년 개인 특성별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 06. 서울시 청년층 소득 분포

## 1\_서울시 청년층의 소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전체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은 23%로 다른 시·도의 청년 인구 비율인 16~20%인 것을 감안했을 때, 가장 높음2).
  - 서울시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서울시에 주요 대학교들이 집중 되어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임.
  - 서울시 청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연구함에 있어 청년층은 주요한 연구 집단 대상임.
- ㅇ 청년층의 빈곤과 소득분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가 많지 않음.
  - 기존의 청년층에 대한 연구들은 빈곤과 소득분배보다는 노동과 주거의 불안정성에 관한 주제가 주를 이루었음(김수정, 2010; 변금선, 2012; 이태진 외, 2015; 이승윤 외, 2016; 김비오, 2019)
  - 청년층의 빈곤과 소득분배가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와의 청년 빈곤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의 청년층 소득 빈곤율이 높지 않 기 때문임.
  - 한국 청년층의 빈곤율은 2015년 기준으로 6~8% 수준인 것에 반해, 다른 선진국들의 빈곤율은 10%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임(김수정, 2020). 그리고 한국 노년층의 빈곤율이 20여년동안 40% 이상을 유지 한다는 점에서 한국 청년층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

<sup>2)</sup> 국가통계포털(KOSIS, <a href="https://kosis.kr">https://kosis.kr</a>)의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식되지 못했음.

- ㅇ 한국 청년층의 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음
  - 하나는 한국 청년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독립 하는 시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늦어서 부모의 경제력 덕분에 청년 빈곤율이 낮게 나온다는 점임(김수정, 2020).
  - 두 번째 이유는 가구의 정의 차이 때문에 한국 청년의 빈곤율이 과소 추정된다는 관점이 있음.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한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로 사용되는 가계 금융복지조사는 학업과 취업으로 비동거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하나의 가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청년들이 독립 가구로 조사되지 않고, 부모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됨.
-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가구원 수와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구 유형을 세분화하여서 청년층의 빈곤율을 분석하였을 때, 가구원 수
  와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빈곤과 상관관계가 높았음.
  - 김태완, 최준영(2017)의 연구에서 가구원 수와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이용하여, 청년 가구 유형을 세분화하여 빈곤율을 산출하였을 때, 부모로부터 독립한 가구(1인 가구)의 빈곤율은 21.2%였고,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는 3.5%로 큰 차이가 났음.
- ㅇ 청년의 소득과 소득분배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음.
  - 왜냐하면, 청년기는 생애주기 안에서도 교육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 이 행하는 단계에 있고, 동시에 부모로부터 독립, 혹은 혼인을 하는 시기로 다양한 사건(events)들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임.
  - 그리고 청년층의 소득을 꼼꼼하게 조사하는 자료가 많지 않을뿐더러 연구자와 자료마다 정의하는 가구의 정의와 개념 차이로 인해서 청년 의 소득과 소득분배를 확인하기 쉽지 않음.
- 본 보고서에서는 정확한 소득정보가 포함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기존의 가구 개념과는 다른 관점에서 서울시 청년의 소득 분포를 확인하고자함.
  -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포함된 소득 정보는 국세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자료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정보가 정확함. 그리고 많은 표본의 청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자료보다 장점이 많은 자료임.

- 기존의 소득분배지표로 사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는 앞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학업과 취업으로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을 독립 가구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 가구(세대)에 대한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가구 개념은 주민등록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 가구를 독립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청년기가 생애주기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events)과 이행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지만, 본 보고서를 통해서 기존의 자료보다 정확한 소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면서, 다른 개념의가구 개념을 활용해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청년 가구의 소득 분포 현황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장의 분석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개인과 청년이 속한 가구임.
  - 기존 연구에서 청년은 주로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음(최준 영, 김태완, 2017). 왜나하면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병역의 의무로 인해서,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2~3년 정도늦어지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청년을 19세~34세로 정의 하고, 각 시기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19세~34세를 세 개의 집 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할 것임.
  - 본 보고서에서 청년 가구의 정의는 청년이 속한 모든 가구를 의미함.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와 청년이 가구원인 경우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와 가구원인 경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후 분석에서 청년 가구주와 가구원을 구분하여 분석할 것임.

## 2\_서울시 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징

#### 1) 서울시 청년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징

[표 6-1] 서울시 청년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단위: 명, %)

_	Н	주민등록/	세대 기준	인총가 <sup>-</sup>	구 기준
7	분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체	44,960	100.0	53,203	100.0
성별	남	22,432	49.9	26,195	49.2
	여	22,528	50.1	27,008	50.8
연령	19-24	13,923	31.0	17,393	32.7
	25-29	16,031	35.7	18,120	34.1
	30-34	15,006	33.4	17,690	33.3
가구원수	1명	11,374	25.3	10,810	20.3
	2명	6,056	13.5	6,662	12.5
	3명	10,300	22.9	11,371	21.4
	4명	13,244	29.5	15,018	28.2
	5명 이상	3,986	8.9	9,342	17.6
가구유형	청년 가구주	17,079	38.0	18,276	34.4
	청년 가구원	27,881	62.0	34,927	65.6
소득자수	총소득	32,253	71.7	37,457	70.4
	근로소득	25,012	55.6	28,780	54.1
	사업소득	11,472	25.5	13,602	25.6
	금융소득	149	0.3	184	0.3
	기타소득	996	2.2	1,134	2.1

- 위의 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주민등록
  세대 기준과 인총가구 기준으로 각각 보여주고 있음.
  - 서울시 거주 청년의 남녀 비율과 소득자 수의 비율은 가구(세대) 개념 차이와 관계없이 거의 차이가 없음.
  - 하지만,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은 가구개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주민등록세대 기준의 경우, 가구원 수가 1명인 청년인 비율이 25.3%인 것에 비해, 인총가구 기준의 경우에는 20.3%로, 약 5%p정도 차이가 발생함.
  - 그리고 청년 개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주민등록세대 기준일 때에는 38.0%인데, 인총가구 기준일 경우에는 34.4%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

[표 6-2] 서울시 청년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구 유형 교차표

(단위: %)

							(LTI: 70)
_	н	주민	!등록세대	기준	<b>6</b>	·총기구 기	준
7	분	가구주	가구원	합계	가구주	가구원	합계
	체	38.0	62.0	100.0	34.4	65.6	100.0
성별	남	37.1	62.9	100.0	34.0	66.0	100.0
	여	38.9	61.1	100.0	34.7	65.3	100.0
연령	19-24	15.2	84.8	100.0	13.0	87.0	100.0
	25-29	41.0	59.0	100.0	38.2	61.8	100.0
	30-34	55.9	44.1	100.0	51.4	48.6	100.0
가구원수	1명	100.0	0.0	100.0	100.0	0.0	100.0
	2명	53.1	46.9	100.0	54.7	45.3	100.0
	3명	16.9	83.1	100.0	19.1	80.9	100.0
	4명	4.7	95.3	100.0	7.3	92.7	100.0
	5명 이상	3.2	96.8	100.0	6.0	94.0	100.0
소득자수	총소득	44.5	55.5	100.0	40.7	59.3	100.0
	근로소득	47.0	53.0	100.0	43.3	56.7	100.0
	사업소득	39.0	61.0	100.0	35.1	64.9	100.0
	금융소득	38.3	61.7	100.0	34.8	65.2	100.0
	기타소득	45.1	54.9	100.0	40.7	59.3	100.0

- 위의 표는 청년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구 유형 교차표를 보여주고 있음.
  -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체 청년 개인 중에서 가구주(세대주)인 경우는 주민등록세대 기준 38.0%이고, 인총가구 기준의 경우에는 34.4%임.
  - 각 인구집단별로 가구주와 가구원의 비율을 확인하면, 남성과 여성의 가구주 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연령에 따른 가구주 비율의 차이는 있음.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30세-34세에는 가구원보다 가구주의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됨. 청년들이 30세-34세에 본격적으로 부모가구(세대)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청년의 경우, 경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생활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분석 결과, 가구주보다 가구원의 소득자비율이 더 높음. 즉, 청년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줌.

[표 6-3] 서울시 청년 개인의 연령과 가구원 수 교차표(주민등록세대)

(단위: %)

_	구분		주민등록세대 기준							
<b>十</b> 世		1명	2명	3명	4명	5명+	합계			
 전체		25.3	13.5	22.9	29.5	8.9	100.0			
연령	19-24	11.7	8.8	22.9	42.8	13.9	100.0			
	25-29	30.5	12.5	20.7	28.4	7.9	100.0			
	30-34	32.4	18.8	25.3	18.2	5.3	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각 연령별 가구 유형 분포

#### [표 6-4] 서울시 청년 개인의 연령과 가구원 수 교차표(인총가구)

(단위: %)

구분		인총가구 기준								
		1명	2명	3명	4명	5명+	합계			
	전체		12.5	21.4	28.2	17.6	100.0			
 연령	연령 19-24		7.8	20.3	37.0	25.9	100.0			
	25-29	25.9	12.2	20.4	27.8	13.7	100.0			
	30-34		17.5	23.4	20.1	13.3	100.0			

- 이 위의 표들은 청년 개인의 연령과 가구원 수 간의 교차표를 보여주고 있음.
  - 19세~24세의 청년들은 4명의 가구원인 경우가 37.0~42.8%로 가장 높았으며, 25세~29세의 청년들은 주민등록세대 기준에서는 1명 (30.5%), 인총가구 기준에서는 4명(27.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30세-34세의 청년들은 가구원 수가 1명인 비율이 주민등록세대 기준 과 인총가구 기준에서 모두 가장 높았으며, 4명인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에 2명인 비율이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0세-34세에 많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결혼을 하여 가구원 수가 2명인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2) 서울시 청년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징

#### [표 6-5] 서울시 청년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단위: 가구, %)

,—···								
구분		주민등록	네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7	'₹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전체		100.0	35,739	100.0			
가구원수	1명 11,374		33.6	10,811	30.2			
	2명	4,780	14.1	4,934	13.8			
	3명	7,910	23.3	8,004	22.4			
	4명	7,772	22.9	8,214	23.0			
·	5명 이상		6.0	3,776	10.6			
가구유형	청년 가구주	14,711	43.4	14,725	41.2			
	청년 가구원	19,169	56.6	21,014	58.8			

#### 자료:

주: 청년이 포함된 모든 가구

- 이 위의 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개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와 가구유형에 따른 빈도 및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서울시 청년 가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주민등록세대 기준 33.6%, 인총가구 기준으로 3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청년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주민등록세대 기준 43.4%, 인총가구기준 41.2%로 나타났으며, 앞서 살펴본 개인 단위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수 있음.
  - 1인 가구의 비율과 청년 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가구(세대) 개념에 따라 서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데, 주민등록세대 기준이 인총가구 기준보다 1인 가구와 청년 가구주의 비율이 높음.
  - 가구 개념에 따라 확인되는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의 비율 차이는 청년 층에서도 실제로는 부모세대 동거를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세대 분리를 한 사례가 있음을 시사함.

#### [표 6-6] 서울시 청년 가구의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 교차표

(단위: %)

구분		주민	등록세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Ť	군	가구주	가구원	합계	가구주	가구원	합계	
전체		43.4	56.6	100.0	41.2	58.8	100.0	
가구원수	1명	100.0	0.0	100.0	100.0	0.0	100.0	
	2명	40.5	59.5	100.0	43.0	57.0	100.0	
	3명		87.3	100.0	14.4	85.6	100.0	
	4명		95.7	100.0	5.7	94.3	100.0	
	5명 이상		97.1	100.0	4.7	95.3	100.0	

- ㅇ 청년 가구의 가구원 수와 청년 가구 유형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임.
  - 청년 가구 중에서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가구 대부분은 청년들이 가 구원인 경우임.
  - 결혼을 한 경우에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가 있는데, 주민등록세대의 경우 약 40.5%, 인총가구 기준의 경우에는 43.0%를 차지함.
  - 주민등록세대 기준과 인총가구 기준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와 다르 게, 행정적으로 부모와 다른 세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함께 동거하지 않는 가족을 가구원으로 분류하지 않음.
  -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처럼 청년 가구주(세대주)의 비율을 과소 대표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청년 가구주 가구의 비율보다 청년 가구원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높은 비율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동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3 청년 개인의 총소득과 균등화 총소득 분포

#### 1) 청년 개인 특성별 소득원천 평균 비교

[표 6-7] 서울시 청년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 평균 비교

(단위: 천 원)

		주민등 <del>록</del>	네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7	분	개인	균등화	개인	균 <del>등</del> 화			
		총소득	총소득	총소득	총소득			
 전체		18,446	38,596	17,788	38,185			
성별	남	18,455	38,419	17,711	38,019			
	여	18,438	38,773	17,864	38,347			
연령	19-24	5,295	37,576	5,098	35,902			
	25-29	19,476	37,969	19,081	37,829			
	30-34		40,213	28,942	40,795			
가구원수	1명	25,944 25,944		26,002	26,002			
	2명	23,330	35,644	22,894	34,303			
	3명	17,071	39,944	16,888	37,957			
	4명	12,823	48,201	13,577	45,840			
	5명 이상	11,865	43,790	12,509	43,024			
가구유형	청년 가구주	27,031	29,468	26,773	30,267			
	청년 가구원	13,187	44,188	13,087	42,329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총소득을 비교하였음.
  -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총소득을 비교하는 이유는 개인 총소득보다 균등화 총소득이 많다면, 부모 및 가족의 소득 재분배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청년 전체의 개인 총소득은 1,845만원인데, 균등화 개인 총소득은 3,860만원으로, 균등화 총소득이 개인 총소득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서울시 청년들이 가족과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줌.
  - 연령에 따라서,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총소득 간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 드는데, 청년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조금씩 독립해 간다는 것

- 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앞서 인구·사회적 특성에서 확인하였듯이,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즉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높음. 따라서 가구원 수가 높은 가구에 속한 청년들이 개인 총소득은 낮지만 균등화 총소득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30세-34세가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총소득의 격차가 낮지만, 절대적인 값만 고려했을 때, 균등화 총소득 평균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음. 30 세-34세가 청년 가구원인 경우 가구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높고, 부모의 소득도 높기 때문에 균등화 총소득 평균이 높음.
- 그리고 가구 유형에 따른 청년 가구주와 가구원의 개인 총소득과 균등 화 총소득의 차이도 청년들의 부모로부터의 독립 여부에 따라서 그 격 차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2)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

[표 6-8]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청년 전체, 주민등록)

(단위: %)

		주민등록세대 기준(청년 전체)										
구분		균등화 총소득(개인)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7.3	3.0	2.8	2.5	2.0	1.8	1.8	1.8	2.2	3.1	
개 인 총 소 득	3분위	0.5	0.2	0.2	0.2	0.1	0.1	0.1	0.1	0.1	0.2	
	4분위	2.2	1.7	1.1	0.8	0.7	0.6	0.6	0.7	0.7	0.8	
	5분위	0.0	4.1	1.1	1.0	0.8	0.7	0.7	0.5	0.5	0.5	
	6분위	0.0	1.0	3.4	1.6	0.9	0.9	0.7	0.6	0.5	0.5	
	7분위	0.0	0.0	1.1	2.4	2.3	1.1	1.0	0.9	0.6	0.5	
	8분위	0.0	0.0	0.3	1.1	2.1	3.1	1.1	1.0	0.7	0.5	
	9분위	0.0	0.0	0.0	0.3	0.9	1.4	3.4	2.1	1.1	0.8	
	10분위	0.0	0.0	0.0	0.0	0.1	0.4	0.7	2.3	3.4	3.1	

#### [표 6-9]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청년 전체, 인총가구)

(단위: %)

		(211 73)									
		인총가구 기준(청년 전체)									
-	구분	균등화 총소득(개인)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개 인	1분위	7.2	3.3	3.2	2.6	2.2	1.9	1.9	1.9	2.2	3.1
	3분위	0.1	0.1	0.1	0.1	0.0	0.0	0.0	0.0	0.1	0.0
	4분위	2.4	1.2	1.1	0.9	0.8	0.6	0.6	0.7	0.7	0.8
	5분위	0.2	3.7	1.1	1.1	0.8	0.7	0.7	0.6	0.5	0.5
	6분위	0.0	1.7	2.8	1.3	0.9	0.9	0.7	0.6	0.6	0.4
총 소	7분위	0.0	0.1	1.3	2.4	2.0	1.1	1.1	0.9	0.6	0.6
소득	8분위	0.0	0.0	0.3	1.2	2.1	2.7	1.2	1.1	0.8	0.6
	9분위	0.0	0.0	0.0	0.4	1.0	1.6	3.0	2.0	1.1	0.8
	10분위	0.0	0.0	0.0	0.0	0.1	0.4	0.8	2.2	3.3	3.2

- 청년 개인 총소득 기준 10분위와 균등화 개인 총소득 기준 10분위 교차 표를 만들어서, 가구소득 균등화가 청년 개인의 분위 상승 혹은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음.
  - 우선 청년 전체 대상으로 가구소득 균등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후에 는 청년 가구주와 청년 가구원을 구분해서 분석하였음.
- 개인 총소득 분위와 균등화 총소득의 분위가 변화가 없으면, 균등화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우상향의 비율이 많아진다면, 균등화로인해 소득분위 상승을 의미하고 좌하향의 비율이 많아진다면, 균등화로인해 소득분위 하락을 의미함.
  - 청년 전체 대상으로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총소득의 분위 교차표를 분석했을 때, 개인 총소득이 1분위에 속했던 청년들이 균등화 이후에는 2분위부터 10분위까지 넓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청년들의 개인 총소득은 낮은 상태이지만, 소속 가구의 소득을 균등화했을 때에는 소득분위가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소속 가구의 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 하지만, 일부 분포에서는 개인 총소득 분위가 높은 분위였음에도, 균등화 이후에는 소득 분위가 낮아지는 경향도 확인이 가능한데, 일부 청년의 경우에는 반대로, 균등화로 인해서 소득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한 설명은 1인 가구 청년과 같이 균등화로 인해 소득이 크게 상승하지 못한 청년들이 균등화 총소득에서는 소속 가구의 소득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은 그대로 이지만 상대적인 분위가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음.

- 청년 가구주인지 청년 가구원인지에 따라서 균등화의 영향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청년 가구주와 청년 가구원에 대해서 각각 분위 교차표 분석을 진행하였음.
  - 우선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총소득의 소득분 위 교차표를 분석한 결과, 청년 전체의 결과와 달리, 개인 총소득 1분 위에서 균등화 이후 총소득 분위가 2분위~10분위로 분포했던 청년들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음을확인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청년 가구주 청년들은 개인 총소득의 분위와 동일한 분위의 균등화 총소득 분위에 위치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아진 균등화 소득 분위로 인해, 한 분위 정도 낮은 위치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청년 가구주는 소속 가구원의 숫자가 많지 않고, 소속 가구원이 있더라 도, 청년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부모보다는 배우자 혹은 어린 자녀일 가능성이 더 높음.

[표 6-10]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청년 가구주, 주민등록)

(단위: %)

					주민등록	록세대 기	l준(청년	가구주)				
-	구분	균등화 총소득(개인)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11.9	0.6	0.7	0.7	0.6	0.4	0.3	0.3	0.2	0.2	
	2분위	0.0	3.2	0.1	0.2	0.1	0.1	0.0	0.0	0.0	0.0	
개	3분위	0.0	4.2	4.1	0.5	0.4	0.3	0.2	0.2	0.1	0.1	
인	4분위	0.0	0.0	4.8	3.6	0.4	0.3	0.4	0.2	0.2	0.1	
	5분위	0.0	0.0	0.2	4.1	4.0	0.5	0.5	0.3	0.2	0.1	
총	6분위	0.0	0.0	0.0	0.6	3.2	4.6	0.4	0.5	0.3	0.2	
소	7분위	0.0	0.0	0.0	0.2	0.8	2.7	5.0	0.6	0.5	0.2	
득	8분위	0.0	0.0	0.0	0.0	0.4	0.7	2.3	5.1	0.9	0.5	
	9분위	0.0	0.0	0.0	0.0	0.1	0.3	0.6	2.2	5.8	1.0	
	10분위	0.0	0.0	0.0	0.0	0.0	0.0	0.1	0.5	1.8	7.6	

### [표 6-11]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청년 가구주, 인총가구)

(단위: %)

					인총기	'다 기준	(청년 기	구주)				
-	구분	균등화 총소득(개인)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11.1	0.8	1.0	0.9	0.7	0.5	0.5	0.4	0.3	0.3	
	2분위	0.0	2.6	0.2	0.2	0.1	0.1	0.1	0.1	0.0	0.1	
개	3분위	0.0	5.4	2.5	0.7	0.4	0.3	0.3	0.2	0.1	0.1	
인	4분위	0.0	0.1	5.8	2.2	0.5	0.4	0.4	0.3	0.2	0.2	
	5분위	0.0	0.0	0.5	4.6	2.8	0.6	0.5	0.4	0.3	0.2	
총	6분위	0.0	0.0	0.0	0.9	3.9	3.4	0.5	0.6	0.4	0.3	
소	7분위	0.0	0.0	0.0	0.4	0.9	3.4	3.7	0.7	0.6	0.3	
득	8분위	0.0	0.0	0.0	0.1	0.6	0.8	3.0	4.1	1.0	0.5	
	9분위	0.0	0.0	0.0	0.0	0.1	0.4	0.7	2.8	5.0	1.1	
	10분위	0.0	0.0	0.0	0.0	0.0	0.0	0.2	0.6	2.1	7.1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 [표 6-12]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청년 가구원, 주민등록)

(단위: %)

					주민등록	록세대 기	준(청년	가구원)				
=	구분	균등화 총소득(개인)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6.4	4.2	3.7	3.1	2.7	2.9	2.7	2.8	3.4	3.9	
개	4분위	0.8	0.5	0.4	0.4	0.4	0.3	0.3	0.3	0.4	0.3	
인	5분위	1.6	1.3	1.3	0.9	0.8	0.8	0.8	0.8	0.9	0.8	
	6분위	1.1	1.7	1.2	1.2	1.1	0.9	0.8	0.8	0.6	0.6	
총	7분위	0.1	1.9	1.2	1.5	1.2	1.1	0.9	0.8	0.7	0.6	
소	8분위	0.0	0.4	1.5	1.2	1.5	1.5	1.2	1.2	0.7	0.6	
득	9분위	0.0	0.0	0.6	1.4	1.4	1.5	1.7	1.5	1.1	0.7	
	10분위	0.0	0.0	0.0	0.2	0.8	1.0	1.5	1.8	2.1	2.4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 [표 6-13] 청년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개인소득 분위 교차표(청년 가구원, 인총가구)

(단위: %)

					인총기	'구 기준	(청년 7	<del> </del> 구원)				
구분		균등화 총소득(개인)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6.6	4.3	3.8	3.3	3.0	2.7	2.7	2.8	3.2	3.9	
개	4분위	0.6	0.5	0.4	0.3	0.3	0.3	0.3	0.3	0.4	0.3	
인	5분위	1.6	1.3	1.3	0.9	0.8	0.8	0.7	0.9	0.8	0.8	
	6분위	1.1	1.6	1.3	1.2	1.1	0.9	0.9	0.7	0.7	0.6	
총	7분위	0.0	1.9	1.2	1.4	1.2	1.2	0.9	0.8	0.8	0.5	
소	8분위	0.0	0.3	1.5	1.3	1.4	1.5	1.3	1.1	0.9	0.6	
득	9분위	0.0	0.0	0.6	1.4	1.4	1.5	1.7	1.5	1.2	0.8	
	10분위	0.0	0.0	0.0	0.2	0.8	1.0	1.4	1.8	2.2	2.5	

- o 청년 가구원 대상으로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총소득의 분위 교차 분석을 한 결과, 청년 가구원의 경우, 균등화의 영향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됨.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 총소득 분위는 1분위에 있지만, 균등화 총소득 분위는 2분위~10분위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부 청년들은 개인 총소득과 균등화 총소득 분위가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지는 것도 확인 가능했지만, 청년 가구주보다는 적은 비율임.
  - 청년 가구원은 청년 가구주에 비해서 개인 총소득은 낮지만, 소속 가구의 소득의 영향으로 균등화 총소득은 높은 편임.

### 3) 청년 균등화 개인 총소득 10분위별 인구·사회적 특징

[표 6-14] 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개인 특성 비율(주민등록세대)

(단위: %)

	주민등록세대 기준									
구분	성	별		연령						
	남	여	19-24	25-29	30-34	합계				
1분위	52.2	47.8	30.7	35.4	33.9	100.0				
2분위	51.4	48.6	16.6	43.2	40.2	100.0				
3분위	50.2	49.8	12.4	44.8	42.8	100.0				
4분위	48.8	51.2	12.2	43.6	44.2	100.0				
5분위	48.9	51.2	8.6	43.3	48.1	100.0				
6분위	47.8	52.2	5.0	41.8	53.3	100.0				
7분위	50.2	49.8	2.9	37.7	59.4	100.0				
8분위	49.1	50.9	2.7	36.3	66.0	100.0				
9분위	50.1	49.9	0.9	27.0	72.2	100.0				
10분위	50.2	49.8	1.1	15.7	83.2	100.0				

[표 6-15] 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개인 특성 비율(인총가구)

(단위: %)

						, ,		
			인총가구	기준				
구분	성	별		연령				
	남	여	19-24	25-29	30-34	합계		
1분위	51.6	48.4	30.8	35.6	33.5	100.0		
2분위	50.9	49.1	16.0	42.3	41.7	100.0		
3분위	49.0	51.0	13.4	43.6	43.1	100.0		
4분위	48.8	51.3	10.8	41.7	47.5	100.0		
5분위	48.3	51.7	8.8	42.8	48.4	100.0		
 6분위	47.2	52.8	4.8	40.9	54.3	100.0		
7분위	50.0	50.0	3.3	36.6	60.1	100.0		
8분위	47.8	52.2	2.4	31.5	66.0	100.0		
9분위	49.5	50.5	1.0	27.1	71.9	100.0		
10분위	49.4	50.6	0.9	17.5	81.6	100.0		

- o 균등화 개인 총소득 기준으로 청년들을 10분위로 분류한 후에, 각 분위별 청년들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율을 분석하였음.
  - 주민등록세대 기준과 인총가구 기준 모두 고려했을 때, 낮은 분위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1%p~4%p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리고 낮은 분위에 19세-24세에 해당하는 청년과 25세-2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19세-24세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25세-29세의 비율은 5분위에서 감소하기 시작함. 이와 달리, 30세-34세의 비율은 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10분위에서는 80% 이상을 차지함.
  - [표 6-16]과 [표 6-17]은 각 소득 분위별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의 비율을 분석하였음. 1분위에서 1인 가구에 속한 개인이 45.7~55.5%로 다른 가구원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청년 가구주인 개인의 비율이 57.4%~65.8%로 다른 분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3분위부터는 1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4인 가구에 속한 개인은 분위 가 증가할수록 꾸준히 증가함. 한편 청년 가구주인 개인의 비율도 3분 위부터는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 않음.

-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청년 1인 가구가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인식되어져 왔지만,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확인했을 때, 청년 1인 가구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계층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왜냐하면 높은 분위에서도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개인 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여러 분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임.

[표 6-16] 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개인 특성 비율(주민등록세대)

(단위: %)

				주민등록시	네대 기준			
구분			가구원 수	,		가구	유형	
	1명	2명	3명	4명	5명+	청년 가구주	청년 가구원	합계
1분위	55.5	15.9	15.9	10.2	2.6	65.8	34.2	100.0
2분위	31.5	15.5	22.9	22.1	7.9	43.0	57.0	100.0
3분위	20.9	12.7	27.4	29.5	9.5	32.6	67.4	100.0
4분위	19.1	13.7	25.6	31.2	10.3	31.8	68.2	100.0
5 <del>분</del> 위	25.8	13.0	23.8	28.5	8.8	39.8	60.2	100.0
6분위	26.3	12.9	22.4	29.5	8.8	40.8	59.2	100.0
7분위	24.1	12.5	22.5	31.5	9.4	37.8	62.2	100.0
 8분위	21.3	12.5	23.4	33.4	9.4	34.9	65.1	100.0
9분위	19.8	13.4	21.9	34.8	10.2	33.5	66.5	100.0
 10분위	8.6	12.5	23.3	43.8	11.7	19.8	80.2	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표 6-17] 균등화 총소득 10분위별 개인 특성 비율(인총가구)

(단위: %)

				인총가	구 기준			
구분			가구원 수			가구	유형	
TE	1명	2명	3명	4명	5명+	청년 가구주	청년 가 <del>구</del> 원	합계
1분위	45.7	16.7	17.6	12.4	7.5	57.4	42.6	100.0
2분위	24.2	14.6	22.8	23.2	15.2	36.5	63.5	100.0
3분위	15.7	12.0	23.9	28.4	20.0	28.1	71.9	100.0
4분위	14.5	12.4	23.2	29.4	20.5	29.0	71.0	100.0
5분위	20.4	12.4	21.6	27.1	18.5	34.9	65.1	100.0
6분위	21.6	11.7	21.2	27.8	17.7	37.8	62.2	100.0
7분위	19.8	11.4	20.9	30.0	17.9	35.5	64.5	100.0
8분위	17.4	11.2	21.7	31.9	17.8	32.4	67.6	100.0
9 <del>분</del> 위	16.5	11.3	19.9	32.0	20.2	31.5	68.5	100.0
10분위	7.4	11.6	20.8	40.1	20.2	20.4	79.6	100.0

## 4 청년 가구 유형과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분포

### 1) 청년 가구 유형별 소득 평균

[표 6-18] 서울시 청년 가구의 유형별 소득 평균(총소득)

(단위: 천 원)

			(= 11- = = 27
7	분	주민등 <del>록</del> 세대 기준	인총가구 기준
	[체	59,951	61,610
가구원수	1명	25,944	26,002
	2명	48,583	47,592
	3명	71,660	69,346
	4명	94,779	91,542
	5명 이상	98,028	100,367
가구유형	청년 가구주	32,913	34,490
	청년 가구원	80,701	80,614

- o 청년 가구의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에 따라서 총소득 평균에 차이가 있음.
  -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총소득 평균은 점점 높아 짐.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구원 수 와 총소득의 평균은 비례적인 관계임.
  - 청년 가구주 가구와 청년 가구원 가구의 총소득 평균을 비교하면, 청년 가구주 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3,291만원이고, 청년 가구원 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8,070만원임.
  - 청년 가구주 가구는 앞서 인구학적 특성에서도 확인하였듯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부모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가구의 평균 총소득보다 낮을 수 밖에 없음.

### 2) 청년 가구의 총소득 10분위 소득원천별 분포

### [표 6-19] 청년 가구 총소득 10분위별 소득원천 평균 소득(주민등록세대)

(단위: 천 원)

			주민등록	네대 기준		
구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
1분위	105	13	82	0	9	0
2분위	5,531	2,382	2,680	9	249	210
3분위	16,060	10,862	4,468	123	243	364
4분위	25,573	21,736	3,327	56	74	379
5분위	33,887	29,215	3,852	65	117	640
 6분위	43,483	37,060	5,198	123	122	982
7분위	55,816	47,464	6,568	314	140	1,333
8분위	73,031	62,690	7,520	402	216	2,205
9분위	101,244	87,011	10,358	872	297	2,707
10분위	244,810	171,221	50,447	18,075	1,934	3,135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9년

#### [표 6-20] 청년 가구 총소득 10분위별 소득원천 평균 소득(인총가구)

(단위: 천 원)

			인총가	구 기준		
구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
1분위	172	29	124	0	14	4
2분위	6,024	2581	2,903	17	250	272
3분위	16,747	11,619	4,325	154	214	435
4분위	26,282	21,970	3,691	64	80	477
 5분위	34,787	29,543	4,201	143	116	787
6분위	44,723	37,577	5,680	155	142	1,170
7분위	57,603	48,837	6,731	344	141	1,553
8분위	75,274	64,158	8,032	484	232	2,370
9분위	104,060	88,796	11,128	994	311	2,839
10분위	250,438	173,545	51,864	19,677	1,893	3,465

- o 청년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한 다음에, 각 분위에 속한 가구의 소득원천 평균을 분석하였음.
  - 청년 가구 총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 낮은 분위에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분위에 있는 가구보다 높음.

## 5 청년 개인 특성별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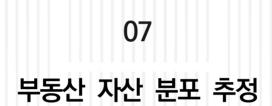
[표 6-21] 청년 개인 특성별 균등화 총소득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11 0 21] 6	THE A 211 OF UP 405 FOR STA WANTER OUTCE										
		주민등록/	네대 기준	인총가	구 기준						
7	분	지니계수	상대 빈 <del>곤</del> 율	지니계수	상대 빈 <del>곤</del> 율						
 전	체	0.511	24.2	0.513	24.8						
성별	남	0.516	25.0	0.518	25.8						
	<u>де</u> д		23.4	0.507	23.9						
 연령	연령 19-24		29.8	0.563	31.5						
	25-29		23.0	0.504	23.1						
	30-34	0.466	20.2	0.469	20.0						
가구원수	1명	0.530	38.3	0.530	38.7						
	2명	0.511	27.1	0.524	29.5						
	3명	0.509	21.7	0.510	24.0						
	4명	0.487	15.0	0.490	17.4						
	5명 이상		16.1	0.494	18.5						
 가구유형	청년 가구주	0.505	32.5	0.513	31.6						
	청년 가구원	0.505	19.1	0.500	21.3						

- o 청년 개인 특성별 균등화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을 분석하였음.
  - 상대빈곤율을 계산할 때의 빈곤선은 건강보험공단 2019년 자료의 전체 인구의 중위값 50%로 설정하였음.
  -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모두 남성 청년이 여성 청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남성이 군대로 인해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함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 수도 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로 인해서 지니계수와 상대 빈곤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임.
  -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청년 가구주인 경우에는 상대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와 일치합(김태완, 최준영, 2017; 김태완, 강예은, 2020).
  -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히 모

든 청년 1인 가구를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고 민이 필요한 상황임.

-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확인했을 때, 청년 1인 가구 내에서도 다양한 특성과 인구 집단이 공존했고, 소득도 1분위에서 9분위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음.
-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연령층이 낮은 경우에는 취약한 집단으로 볼수 있지만, 연령층이 높은 경우에는 취약한 집단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함.
- 따라서 청년 가구 중에서 취약한 청년 가구는 단순히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와 1인 가구 여부뿐만 아니라, 청년의 연령도 추가로 반드시 고려 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임.
- 기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청년 1인 가구를 다양한 인구 집단으로 세분화하고, 소득 분위별로 나눠서 보는 것이 어려웠음. 따라서, 청년 1인 가구 전체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라는 분석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지만, 청년 1인 가구의 하위 집단의 소득분포 현황에 대해서는 보여줄 수가 없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청년 가구를 여러 집 단으로 세분화하였고, 그 결과 모든 청년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인구 집단 중에서 특히 연령이 낮은 청년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음.



1\_건보 자료상의 자산자료 이해 2\_건보 자료상의 자산 분포 3\_부동산 총자산의 요인 분해 4\_자산 분위별 전체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5\_소결

# 07. 부동산 자산 분포 추정

## 1 건보 자료상의 자산자료의 이해

- 1) 건보 자료상의 자산자료의 이해
- (1) 건보 자료상의 자산 구성요소
  - o 자산 불평등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자료임.
    - 자산은 크게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구분되며, 실물 자산에 대표적 인 것이 바로 토지와 건물·주택으로 구성된 부동산임.
  - 건보 자료에서 개인이나 가구의 자산규모 또는 분포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재산세 과세 표준 자료임.
    - 재산세 과세 표준자료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등으로 나누어 져 있으며, 사실상 부동산 과세 표준자료임.
    - 금융 자산에 관한 자료는 현재 가용하지 않음.
    - 또한, 개인 또는 가구의 부채에 관한 자료도 건보 자료에서 가용하지 않음.
  - 따라서 건보 자료상의 자산자료는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총자산 개념이고 순자산 개념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산 분포를 분석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건보 자료에 금융소득 항목이 있으므로 다른 자료(예: 한국은행 자본순 환 통계)에서 구해진 자본화 승수(income capitalization factor)를

구하고 이를 여기에 적용함으로써 금융자산을 구할 수는 있지만, 추정에 따르는 부정확성 문제로 인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기서는 금융자산을 추정하지 않았음.

- 이 경우에도 부채에 관한 자료는 생성하기가 힘듦.
-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재산세 과표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자산이며, 부채를 가감하지 않은 순계 개념이 아니라 총계 개념의 부동산 자산임.
  - 건보 자료상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이들을 합산한 총재산 세 과세표준액의 자료가 있음.

### (2) 건보 자료상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이해

- 부동산 자산의 분포를 분석하기 전에 재산세 과표에 대해 간단한 소개 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재산세 과표가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재산세 과표를 통해서는 부동산 총자산 분포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o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건축물,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것임.
  - 「지방세법」제4조에 따르면,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 과표를 산정하기 위해 부동산 등을 평가한 가액"으로,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인 '공시가격'을 사용하고, 반면에 "건축물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 등을 감안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을 적용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사용하는데, 후자는 행안부가 산정·고시하고, 전자는 국토부가 평가·산정하고 고시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에 산정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이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 데, 이 비율이 낮으면 과표가 작아져 납세자의 세 부담이 줄고, 그 반대이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토지 및 건축물은 50%~90% 범위, 그리고 주택은 40%~90% 범위에서 정해짐.
- 2021년 12월 현재 재산세의 토지 및 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이고, 반면에 재산세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임.
- o 따라서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의됨.
  - 전술한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은 주택과 토지의 경우 국토부가 매년 평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이고, 반면에 건축물은 지자체장(행안부)이 고시하는 가액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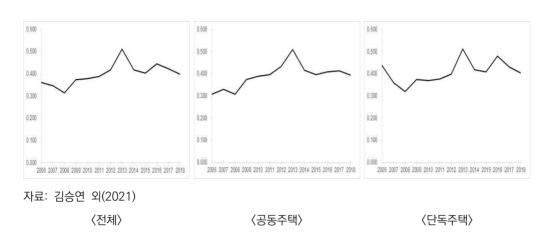
### (3)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실거래가 간의 갭

- o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대략 공시가격의 60% 내외임(서울시 관악구, 2020).
  -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면 재산세 과표는 대략 주택 공시가격의 60%인 6억 원 정도로 추산될 수 있음.
- o 건축물은 지자체장이 고시하는데 이는 '원가'에 근거하여 건물 가치를 약 식으로 추정하는 방식임(경기도, 2020).
  - 이는 건물신축가격에 노후도에 따른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원가방식 체계임.
  -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일컬음.
- o 이러한 산정방식은 현실의 실제 가격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괴리되어 있음(경기도, 2020).
  - 첫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건축연도, 용도, 관리상태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동일함.

- 둘째, 구조·용도지수의 격차가 건축연도 및 관리상태와 무관하게 동이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
- 셋째, 위치지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원가 방식의 평가·산정에서 건물가치 결정과는 무관한 항목임.
- 넷째, 내용연수 및 최종잔가율이 시장 상황과 괴리되어 있는데, 특히 노후건물에서 시가 초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다섯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서 층별 효용 차이를 반영하는 기준 이 없어 거래가액 기준 1층의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게 됨.
- 최근 경기도(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은 60~65% 정도임.
  - 경기도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토지의 시세 반영률은 65.5%이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53.6%와 69.0%이고, 반면에 실거래가 대비 평균 시세 반영률은 일반비주거용 64.1%이고, 집합비주거용 59.8%이었음.
  - 하지만 개별 물건의 시세반영률은 10% 미만부터 100% 초과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에도 균질하지 않음.
- 이처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산정방식의 문제로 인해 유형별, 가격대 별, 지역별로 산정의 균질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음.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의 60%라고 가정하면 재산세 과표는 대략 실거래가의 42% 정도 안팎이 되는 것임.
  - 시가표준액 60%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면 이 수치가 나옴.
  - 토지와 주택 경우 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라고 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 과세표준은 대략 실거래가의 36% 내외가 되는 것임.
  - 공시가격 60%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이러한 수치가 나 옴.
-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라고 한다면 토지, 주택, 건축물의 과세 표준은 대략 실거래가의 36~42% 정도임.
  - 김승연 외(2020)은 건보 자료와 단독과 공동주택을 포함한 서울시 주택

의 실거래가 자료를 매칭하여 평균적으로 서울시 주택의 재산세 과표가 실거래가의  $30\sim40\%$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음 ([그림 7-1] 참조).

실거래가 자료도 시장에서 거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수 자료가 아니라 일종의 표본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7-1] 서울시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 대비 재산세 과세표준액 비율(%) 추이

-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화율이 60%라고 가정할 때 토지, 주택, 건축물의 과표가 실거래가의 36~42% 안팎이라는 것은 평균치임.
  - 건보 자료와 주택의 실거래가를 매칭한 분석 결과는 이러한 수치가 평 균적으로는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김승연 외, 2020).
  -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대체로 과표의 실거래가 반영 비중이 점차로 떨어지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상승세였음.
- 개별 수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이 편차가 심하므로, 즉 평가·산정이 균질적이 아니므로 일정한 편의가 있음에유의해야함.
- 통상적으로 고가 부동산의 경우 시장 거래가 활발하게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반대의 중저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와는 상반된 패턴을 보여줌(정준호, 2020).
  - 따라서 부동산 과표를 사용하여 자산 분포를 볼 때 실제보다 부동산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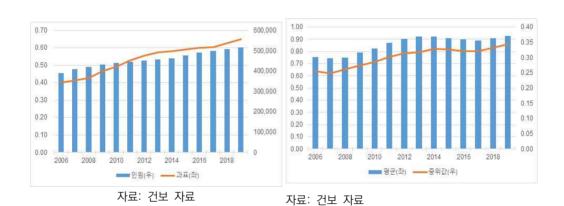
## 2\_건보 자료상의 부동산 자산 분포

### 1) 서울시 부동산 재산세 과표 규모

### (1) 건축물

- 건축물 과표가 존재하는 건보 가입자의 수가 2006년 0.45백만 명에서 2019년 0.60백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과표 규모는 2006년 341,760억 원에서 2019년 557.59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2010년 하반기 이후 오름세의 기울기가 가팔라졌음([그림 7-2] 참조).
  - 이러한 추이는 2010년대 중후반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폭등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음.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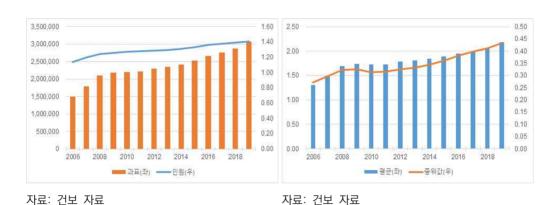


[그림 7-2]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액 규모(백만 명, 억 원)

-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평균은 2006년 0.75억 원에서 2019년 0.93억 원이었으며, 중위값은 2006년 0.26억 원에서 2019년 0.34억 원이었음.
  - 평균과 중위값도 2010년대 하반기 이후 그 증가세가 가팔라졌음([그림 7-2] 참조).
  - 평균값과 중위값 사이의 격차가 2013년에 가장 크고 그 이후 감소하다 가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격차의 확대는 부동산

### (2) 토지

- 토지 과표가 존재하는 건보 가입자의 수가 2006년 1.31백만 명에서 2019년 2.18백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과표 규모는 2006년 1,492,536억 원에서 2019년 3,068,965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2010년 중반 이후 상승세의 기울기가 가팔라졌음([그림 7-3] 참조).
  - 이러한 추이는 2010년대 중후반 이후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7-3] 서울시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액 규모(백만 명,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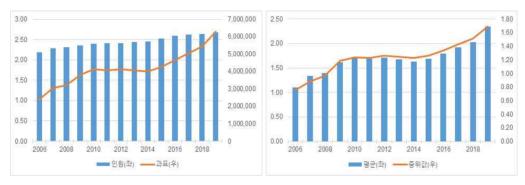
- 토지 과세표준액의 평균은 2006년 1.31억원에서 2019년 2.18억원이었으며, 중위값은 2006년 0.27억원에서 2019년 0.43억원이었음.
  - 평균과 중위값은 2010년대 접어들어 그 증가세가 가팔라졌음([그림 7-3] 참조).
  - 평균값과 중위값 사이의 격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그 격차가 더 확대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격 격차 확대를 수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으로 보임.

### (3) 주택

ㅇ 주택 과표가 존재하는 건보 가입자의 수가 2006년 2.19백만 명에서

2019년 2.68백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과표 규모는 2006년 2,403,841억 원에서 2019년 6,282,663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2010년 중반 이후 상승세의 기울기가 매우 가팔라졌음([그림 7-4] 참조).

- 이러한 추이는 2010년대 중후반 이후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료: 건보 자료

자료: 건보 자료

[그림 7-4] 서울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액 규모(백만 명, 억 원)

- 주택 과세표준액의 평균은 2006년 1.10억원에서 2019년 2.35억원이었으며, 중위값은 2006년 0.76억원에서 2019년 1.69억원이었음.
  - 평균과 중위값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그 오름세가 매우 가팔라졌음 ([그림 7-4] 참조).
  - 평균값과 중위값 사이의 격차가 2014년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2018 년 이후 그 격차가 더욱더 커졌는데, 이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가격 격차 확대, 즉 가격 격차의 양극화를 수반하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음.
- 2019년 주택 과표의 평균값이 2.35억원이고, 평균 주택 공시가격이 60%
  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중이 60%로 잡으면, 평균 실거래가는 6.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단독과 공동주택(아파트)을 포함한 평균 수치이고, 앞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추정한 수치임.
  - KB 국민은행 시세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단독, 연립을 포함한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이 2019년 1월 63,819만원, 6월 63,998만원, 12월 현재 66,841만원이었음.

- 대략 추정한 서울시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와 KB 국민은행의 시세, 즉 평균 매매가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2) 서울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추이

### (1) 건축물

- o 건축물 보유자 수와 총인구 대비 그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7-5] 참조).
  - 2006년 건물 보유자 수는 454,317명이고, 이는 서울시 총인구 대비 4.36%이었음
  - 2019년 건물 보유자 수는 602,638명이고, 이는 서울시 총인구 대비 6.0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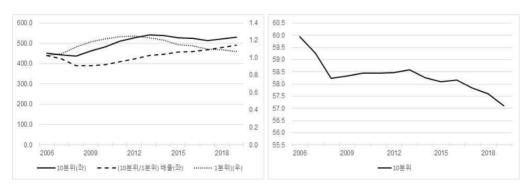
자료: 건보 자료

자료: 건보 자료

#### [그림 7-5] 서울시 건축물의 보유자 수 및 불평등도 추이

- 20세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면 건축물 과표의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그림 7-5] 참조).
  - 2006년 0.987에서 2019년 0.982로 떨어졌지만, 그 하락 폭이 매우 작아 사실상 건축물의 불평등도는 매우 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축물 과표가 있는 모든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면 건축물 과표의
  지니계수는 2008-2013년 사이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는 시기에는
  는 증가했지만, 그 외 시기에는 하락하였음.
  - 2006년 0.719에서 2019년 0.699로 하락하였지만, 그 하락 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 집단에서 그 불평등도가 현저하게 완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o 과표가 있는 모든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물의 1분위와 10 분위의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그림 7-6] 참조).
  - 1분위 평균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반면에 10분위 평균은 2008-2012년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 2017년까지 다소 감소하고 2017년 이후 다시 늘어났음.
  - 1분위 평균 규모는 2006년 1백만원에서 2019년 1.1백만원 정도이고, 반면에 10분위 평균 규모는 2006년 451.0백만원에서 2019년 528.5 백만원으로 늘어났음.
  - (10분위 평균/1분위 평균) 배율은 2006년 438.6배에서 2019년 491.4배로 증가하였음.
- 건축물의 10분위 점유율은 2008-2013년 사이에는 늘어났으나, 그 이후에는 떨어지고 있음.
  - 지니계수와 10분위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의 불평등도는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2008-2013년 사이에 높아지고 주택가격이 오른 시기에는 그와는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자료: 건보 자료

자료: 건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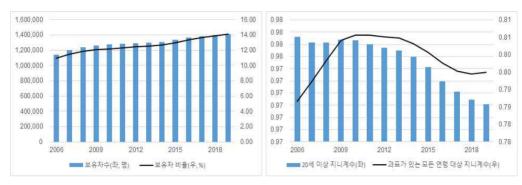
[그림 7-6] 서울시 건축물의 분위별 점유율(%) 및 배율(배) 추이

### (2) 토지

ㅇ 토지 보유자 수와 총인구 대비 그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7-7] 참조).

- 2006년 토지 보유자 수는 1,139,992명이고, 이는 서울시 총인구 대비 11.0%이었음
- 2019년 토지 보유자 수는 1,408,435명이고, 이는 서울시 총인구 대비 14.1%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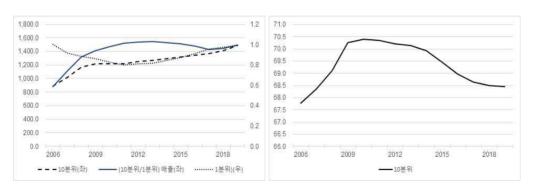
자료: 건보 자료

자료: 건보 자료

#### [그림 7-7] 서울시 토지의 보유자 수 및 불평등도 추이

- 20세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면 토지 과표의 지니계수는 2009년 이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그림 7-7] 참조).
  - 2006년 0.977에서 2019년 0.971로 떨어졌지만, 그 하락 폭이 매우 작아 사실상 토지의 불평등도는 아주 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토지 과표가 있는 모든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면 토지 과표의 지니계수는 2000년대 후반에는 상승했지만, 그 이후에는 떨어지다가 최근에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음.
  - 2006년 0.787에서 2019년 0.795로 증가했지만, 그 상승 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어서 토지를 보유한 가입자 집단에서 그 불평등도가 현저하게 높아졌다기보다는 여전히 그 수준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임.
- 과표가 있는 모든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토지의 1분위와 10분
  위의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그림 7-8] 참조).

- 1분위 평균이 2000년대 후반에 감소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서 반전하여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10분위 평균은 2013년까지는 증가하다 그 이후 2017년까지 다소 감소하고 다시 2017년 이후 늘어났음.
- 1분위 평균 규모는 2006년과 2019년 1백만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으며, 반면에 10분위 평균 규모는 2006년 887.3백만원에서 2019년 1,491.6백만원으로 늘어났음.
- (10분위 평균/1분위 평균) 배율은 2006년 882.9배에서 2019년 1,500.0배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배율은 앞의 건축물의 두 배 이상으로 토지의 불평등도가 건축 물의 그것에 비해 심하다는 것을 함의함.
- o 토지의 10분위 점유율은 2000년대 후반에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떨어지고 있음.
  - 지니계수와 10분위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토지의 불평등도는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임.
  - 그 이전에는 증가하는 추세였음.



자료: 건보 자료

자료: 건보 자료

[그림 7-8] 서울시 토지의 분위별 점유율(%) 및 배율(배) 추이

### (3) 주택

- o 주택 보유자 수와 총인구 대비 그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7-9] 참조).
  - 2006년 주택 보유자 수는 2,188,848명이고, 이는 서울시 총인구 대비

#### 21.0%이었음

- 2019년 주택 보유자 수는 2,677,674명이고, 이는 서울시 총인구 대비 26.8%를 차지함.



자료: 건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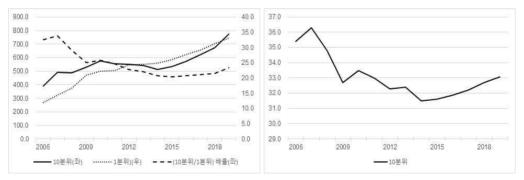
자료: 건보 자료

[그림 7-9] 서울시 주택의 보유자 수 및 불평등도 추이

- o 20세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면 주택 과표의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그림 7-9] 참조).
  - 2006년 0.892에서 2019년 0.852로 떨어졌지만, 그 하락 폭이 크지 않아 사실상 주택의 불평등도는 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음.
  - 주택의 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은 주택 보유자 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또한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중저가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주택 과표가 있는 모든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면 주택 과표의 지니 계수는 2007-2014년 사이에는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반전하여 상승 하기 시작했음.
  - 2006년 0.485에서 2019년 0.448로 감소했지만, 그 하락 폭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음.
  - 하지만 2015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 간 의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o 과표가 있는 모든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의 1분위와 10분 위의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그림

#### 7-10] 참조).

- 1분위 평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10분위 평균은 2007-2014년까지는 줄어들다가 그 이후 다시 늘어났음.
- 1분위 평균 규모는 2006년 12백만원에서 33.1백만원으로 건축물과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반면에 10분위 평균 규모는 2006년 391.2백만원에서 2019년 775.7백만원으로 늘어났음.
- (10분위 평균/1분위 평균) 배율은 2006년 32.7배에서 2019년 23.4배로 줄어들었음.
- 이러한 배율은 앞의 건축물보다는 적은 것이고, 이렇게 배율이 줄어든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중저가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 승한 것과 주택 보유자 수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임.
- o 주택의 10분위 점유율은 2007-2014년 사에에는 떨어졌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니계수와 10분위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주택의 불평등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과표를 가진 가입자 간의 자산 격차 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 건보 자료

자료: 건보 자료

[그림 7-10] 서울시 주택의 분위별 점유율(%) 및 배율(배) 추이

### (4) 부동산 총자산

건축물, 토지, 주택 중에 하나라도 과표가 있는 부동산 보유자 수와 총인구 대비 그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 7-11] 참조).

- 2006년 부동산 보유자 수는 2,682,828명이고, 이는 서울시 총인구 대비 25.8%이었음
- 2019년 부동산 보유자 수는 3,239,770명이고, 이는 서울시 총인구 대비 32.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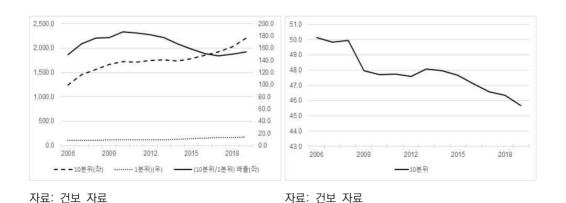
자료: 건보 자료

자료: 건보 자료

[그림 7-11] 서울시 부동산 총자산의 보유자 수 및 불평등도 추이

- 20세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면 부동산 과표의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그림 7-11] 참조).
  - 2006년 0.903에서 2019년 0.865로 떨어졌지만, 그 하락 폭이 매우 크지 않아 사실상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는 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음.
  -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은 건축물, 토지, 주택의 보유자 수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부동산을 구성하는 건축물, 토지,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부동산 과표가 있는 모든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면 부동산 과표의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졌음.
  - 2006년 0.626에서 2019년 0.583으로 떨어졌지만, 그 하락 폭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음.
  - 2015년 이후 주택가격의 불평등도는 증가하고, 건축물과 토지의 그것 은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보임.

- 과표가 있는 모든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의 1분위와 10분
  위의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그림 7-12] 참조).
  - 1분위 평균이 매우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10분위 평균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대 중반이후 그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음.
  - 1분위 평균 규모는 2006년 8.3백만원에서 14.3백만원으로 늘어났으며, 반면에 10분위 평균 규모는 2006년 1,238백만원에서 2019년 2,206.8백만원으로 늘어났음.
  - (10분위 평균/1분위 평균) 배율은 2006년 149.3배에서 2019년 154.1배로 조금 늘어났음.
  - 이러한 배율이 줄어들다가 2017년 이후 늘어난 것은 서울시 주택가격 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ㅇ 부동산의 10분위 점유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지니계수와 10분위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부동산의 불평등도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최근에 주택가격의 급 등세로 (10분위 평균/1분위 평균) 배율이 늘어났음.



[그림 7-12] 서울시 부동산 총자산의 분위별 점유율(%) 및 배율(배) 추이

## 3 부동산 총자산의 원천별 요인 분해

### 1) 방법론: 지니계수의 원천별 요인 분해

- o 소득 또는 자산 원천별로 불평등을 분해하는 작업은 경제적 추세를 이해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처럼 소득 또는 자산 원천별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작업 은 불평등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임(Sastre and Trannoy, 2002).
- o 소득 또는 자산 원천별 요인 분해 방식은 다양하지만, 널리 쓰이는 것이 바로 Shorrocks(1982)의 요인 분해 방식임.
  - 전체 자산(Y)이 가령,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 실물자산 등 하나 이상의 자산 원천(f)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전체 자산의 불평등 지수 ( $I_Y$ )는 각 자산 원천 기여도( $S_f$ )의 합계로 나타낼 수 있음 ( $I_Y = \sum_f S_f$ ).
  - 여기서  $S_f>0$ 이면 해당 소득원천은 불균형 효과를, 반면에  $S_f<0$ 이 면 균형 효과를 나타냄.
  - $s_f\equiv \frac{S_f}{I_Y}$ 라고 정의하면  $\sum_f s_f=1$ 이며,  $S_f$ 는 총소득의 불평등 $(I_Y)$ 에 대한 소득원천 f의 절대적 기여도이고,  $s_f$ 는 상대적 기여도로서 '불평등의 요인 가중치'(component inequality weight)라고 함.
  - Shorrocks(1982)은  $s_f$ 가 전체 자산의 분산으로 조정된 각 자산 원천 과 전체 자산 간의 공분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에 적용하였음.

$$s_f = \frac{cov(f, \, Y)}{\delta_Y^2}$$

o 이러한 Shorrocks(1982)의 분해법은 다음과 같이 다른 불평등 지수의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음.

$$I_Y^{t+1} - I_Y^t = \sum_f (s_f^{t+1} I_Y^{t+1} - s_f^t I_Y^t)$$

- Lerman and Yitzhaki(1985)은 Shorrocks(1982)의 분해법을 지니계수
  에 적용하였음.
  - 전체 자산의 지니계수 G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G = \sum_{k=1}^{K} S_k G_k R_k$$

- 여기서  $S_k$ 는 자산 원천 k의 비중을 나타내고,  $G_k$ 는 자산 원천 k의 자산 분포에 따른 지니계수를 의미하고,  $R_k$ 는 자산 k와 전체 자산의 지니계수 G와의 지니 상관계수 $(R_k = Cov[y_k F(y)]/[Cov(y_k, F(y_k)]]$ 를 나타내고, F(y)와  $kF(y_k)$ 는 전체 자산과 자산 원천 k의 누적 분포임.
- 전체 자산에서 특정 자산의 비중이 크면 그 자산 원천은 전체 불평등에큰 영향을 미침.
  - 하지만 자산 원천이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G_k=0)$ , 그 비중이 커도 전체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함.
- o  $S_k \times G_k$ 가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자산분포상의 어느 위치에 있는 가구가 그 자산 원천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전체 불평등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음.
  - 특정 자산 원천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서 그 특정 자산 원천이 전체 자산 분포의 상위에 집중되어 있으면( $R_k$ 가 정(+)이고 크면), 불평 등을 확대할 것임.
  - 반대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자산 원천이 저 자산층(가구)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집중계수(concentration coefficient)는  $C_k = R_k \cdot G_k$ 는 가구를 전체

자산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의 자산 원천 k의 지니계수라고 볼 수 있음.

- 전체 자산의 지니계수는 자산 원천별 집중계수의 가중 합이라고 할 수 있음.

### 2) 분석 결과

- 건축물, 토지, 주택의 합계로 구성된 개인의 부동산 총자산의 지니계수에 대한 총자산 원천별 요인 분해는 2006년, 2013년, 2019년의 부동산 총자산에 대해 이루어졌음([표 7-1] 참조).
  - 여기서 분석 단위는 건축, 토지, 주택 과표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모 든 연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임.
  - 2006년은 자료가 가용한 첫해고, 2013년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이고, 2019년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이기도 함.
  - 총자산의 원천은 건축물, 토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음.
- ㅇ 부동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각 자산 원천의 비중을 보면 다음꽈 같음.
  - 2006년의 경우 건축물이 7.4%, 토지 32.2%, 주택 60.5%로 구성되어 있음.
  - 2013년에는 건축물 6.5%, 토지 30.9%, 주택 62.6%를 차지함.
  - 2019년의 경우 건축물 5.1%, 토지 28.0%, 주택 66.9%로 구성되어 있음.
- 부동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주택이 서울시 부동산 총자산의 불평등을 좌우하는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 원천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음.
  - 주택이 2006년 60.5% → 2013년 62.6% → 2019년 66.9%로 상승했음.
  - 그다음으로 부동산 총자산 불평등을 좌우하는 자산 원천은 토지이지만,
    그 비중은 2006년 32.2% → 2013년 30.9% → 2019년 28.3%로 줄 어들었음.
  - 건축물 비중도 2006년 7.4% → 6.5% → 5.1%로 감소했음.

- ㅇ 부동산 총자산을 구성하는 각 자산 원천의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음.
  - 2006년에는 건축물이 0.952, 토지 0.909, 주택 0.580임.
  - 2013년에 건축물은 0.948, 토지 0.915, 주택 0.536임.
  - 2019년에는 건축물이 0.944, 토지 0.911, 주택 0.543임.

[표 7-1] 부동산 총자산 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E / 1] TOU ONE DEEP NAME OF PARTY OF PA				
2006년	건축	토지	주택	부 <del>동</del> 산
부동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0.0737	0.3218	0.6046	1.0000
지니계수	0.9524	0.9093	0.5796	0.6255
지니 상관계수	0.8681	0.8805	0.8760	1.0000
지니계수 기여도	0.0974	0.4118	0.4908	1.0000
지니계수 한계 변화	0.0237	0.0901	-0.1138	0.0000
2013년	건축	토지	주택	부동산
부동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0.0648	0.3092	0.6260	1.0000
지니계수	0.9484	0.9148	0.5362	0.5980
지니 상관계수	0.8602	0.8840	0.8790	1.0000
지니계수 기여도	0.0884	0.4181	0.4934	1.0000
지니계수 한계 변화	0.0236	0.1090	-0.1326	0.0000
2019년	건축	토지	주택	부동산
부동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0.0509	0.2801	0.6690	1.0000
지니계수	0.9441	0.9109	0.5434	0.5834
지니 상관계수	0.8273	0.8622	0.8903	1.0000
지니계수 기여도	0.0681	0.3771	0.5548	1.0000
지니계수의 한계 변화	0.0172	0.0970	-0.1142	0.0000

자료: 건보 자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의 불평등도가 2006년 0.952 → 2013년
  0.948 → 0.944로 완화되었음.
  - 하지만 토지의 경우 2006년 0.909에서 2013년 0.915로 불평등이 심화하였다가 2019년 0.911로 다소 완화되었음.
  - 주택은 2006년 0.580 → 2013년 0.536 → 2019년 0.543으로 2006

년과 2013년 사이 불평등이 완화되었다가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불평등이 심화하였음.

- 주택의 경우 2013년 이전에는 서울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였고,
  그 이후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였는데, 주택 불평등도는 이러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주택의 경우 불평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o 건축물, 토지, 주택 구성요소와 부동산 총자산 지니계수와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음.
  - 2006년 건축물 0.868, 토지 0.881, 주택 0.876임.
  - 2013년 건축물 0.860, 토지 0.884, 주택 0.879임.
  - 2019년 건축물 0.827, 토지 0.862, 주택 0.890임.
- 건축물의 부동산 총자산 지니계수와의 상관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06년 0.868 → 2013년 0.860 → 2019년 0.827로 감소했음.
  - 토지의 경우 2006년 0.881 → 2013년 0.884 → 2019년 0.862로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는 상승하다 2010년대 중후반에는 하락했음.
  - 주택은 2006년 0.876 → 2013년 0.879 → 2019년 0.890으로 부동 산 총자산의 지니계수와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동산 총자 산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자산 원천 중의 하나라라는 것 을 보여주고 있음.
- 건축물, 토지, 주택 구성요소의 부동산 총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2006년 건축물 9.7%, 토지 41.2%, 주택 49.1%임.
  - 2013년 건축물 8.8%, 토지 41.8%, 주택 49.3%임.
  - 2019년 건축물 6.8%, 토지 37.7%, 주택 55.5%임.
- 건축물의 부동산 총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06년
  9.7% → 2013년 8.8% → 2019년 6.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토지의 경우 2006년 41.2% → 2013년 41.8% → 2019년 37.7%로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는 조금 늘어나다가 2010년대 중후 반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음.
- 주택은 2006년 49.1% → 2013년 49.3% → 2019년 55.5%로 부동산 총
  자산의 지니계수 기여도가 증가하여 부동산 총자산 지니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 원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
  - 주택 자산의 부동산 총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2010년대 중후반에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음.
- 각 자산 항목의 과표가 1% 증가할 때 지니계수가 몇 % 변화하는가를나타내는 지니계수 한계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음.
  - 2006년 건축물 0.024%, 토지 0.090%, 주택 -0.114%임.
  - 2013년 건축물 0.024%, 토지 0.109%, 주택 -0.133%임.
  - 2019년 건축물 0.017%, 토지 0.097%, 주택 -0.114%임.
- 각 자산 항목의 지니계수 한계 변화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그 변동 폭이 가장 크다는 것임.

## 4\_자산 분위별 전체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 1) 방법론: 재중심 영향 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 '비조건부 분위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에서 종
  속변수로 사용되는 '재중심 영향 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에 주목하고자 함(Firpo et al., 2009).
  - 이러한 회귀분석 방식이 기존 회귀분석 방법과 다른 점은 종속변수로 RIF(또는 IF)을 사용한다는 점임.
- o IF는 특정 관측치가 분포 통계량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이상 치(outlier)를 탐색하여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됨 (Hampel, 1974).
  - 이는 '가토 도함수(Gâteaux derivative)' 또는 '방향 도함수

(directional derivative)'라고 일컬어짐.

- o IF는 개념적으로는 1차 미분계수와 유사함.
  - 이는 Y = y 지점의 분포 통계량 v의 영향함수 IF(y;v)는 Y = y 지점에서 분포  $F_Y$ 의 일부분에서 미세한 증가가 있을 경우 v가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의미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Hampel, 1974).

$$\mathit{IF}(y; v(F)) = \lim_{\epsilon \to 0} \left( \frac{[v(1-\epsilon)F + \epsilon \delta_y] - v(F)}{\epsilon} \right), \ 0 \le \epsilon \le 1$$

- 여기서 v는 Y의 분포 통계량이고, F는 Y의 누적 분포이고,  $\epsilon \delta_y$ 는 y지점에서 질량이 1인 분포를 가리킴.
- F라는 분포에서 y라는 특정 지점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분포 F와 y지점에서 F의 오염(contamination) 분포, 즉  $T=(1-\epsilon)F+\epsilon\delta_y$ 가 필요하며,  $\delta_y$ 는 y지점에서 이산 확률변수가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이 1인 퇴화분포(degenerate distribution)를 의미함.
- 따라서 분포 통계량(v(F))의 IF는  $\epsilon$ 가 0으로 접근함에 따라 얻어지는 방향 도함수(미분계수)인 v(T)임.
- RIF(y;v)는 y가 분포 통계량에 미친 영향의 1차 근사치 (approximation)이고(Davies et al., 2017), 이는 지니계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Firpo et al., 2009).

$$R\!I\!F\!(y;G) = 2\frac{y}{\mu}\,G + 1 - \frac{y}{\mu} + \frac{2}{\mu}\int_0^y\!F\!(z)d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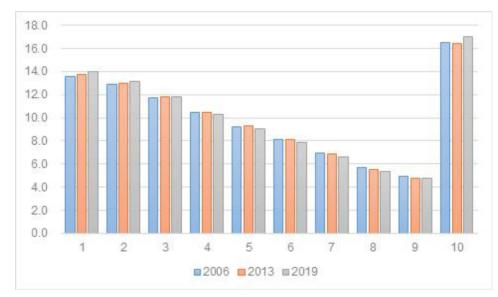
o RIF의 경우 개별 변수에 대해 지니-RIF를 구하고 이를 가중 합산하면 전

체 지니계수와 동일함.

- 개별 표본별로 각 부동산 자산의 지니-RIF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가중합산하면 전체 지니계수와 동일함.
- o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각 부동산 자산의 분위별로 해당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지니계수) 기여도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임.

### 2) 분석 결과

- o 분석 대상은 앞서와 같이 과표가 존재하는 서울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며, 분석 시기는 2006년, 2013년, 2019년임.
- 건축물의 경우 2006년, 2013년, 2019년 지니계수가 각각 0.719, 0.712, 0.699로 감소하였음.
- [그림 7-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물 2006년, 2013년, 2019년 시간
  의 흐름에 따라 1, 2, 3분위 및 10분위의 자산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음.
  - 서울시에서 건축물 자산의 지니계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과표가 있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면 감소하였지만, 1, 2, 3을 포함하는 저분 위와 최상위 10분위는 자산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증가하였음.
- 이는 건축물의 지니계수는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분위별로 불평등도를 들여다보면 자산 양극화의 단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건축물의 경우 4-9분위, 즉 중분위에서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음.
  - 당연하게도 불평등도가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의 상대적 거리를 나타내 므로 1, 2, 3의 하위 분위와 10분위의 자산 불평등 기여도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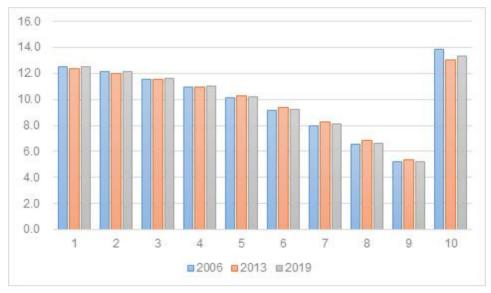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그림 7-13] 서울시 건축물의 자산 분위별 전체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 서울시 토지의 지니계수는 2006년 0.787, 2013년 0.805, 2019년 0.705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2010년대 중반에 불평등도가 높았으며, 그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세임.
  - 앞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의 불평등 추이는 건축물 및 주택의 그것과 다소 다른데, 즉 2000년대 후반에 불평등이 증가하다 2010년대 초반 에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에 하락하다가 최근 다시 반전하는 추세임,
- 토지의 불평등 추세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2006년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13년과 2019년 사이의 자산 분위별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저분위인 1-4분위의 불평등 기여도는 유지하거나 증가하였으며, 중분위인 5-9분위에서는 불평등 기여도가 다소 떨어졌으며, 최고 분위인 10분위의 불평등 기여도는 증가했음([그림 7-14] 참조).
- 2010년대 초반과 후반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의 자산 분위별 불평등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음.
- 2013년 불평등도가 높은 시기를 보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1-4
  분위 및 10분위의 불평등 기여도가 낮고, 반면에 5-9분위의 상대적 기여

#### 도가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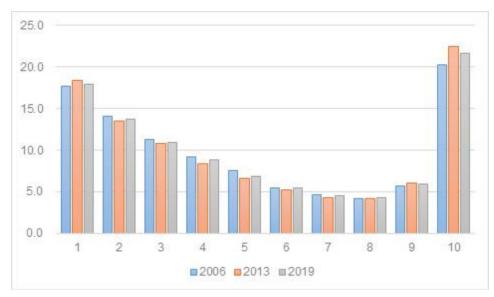
- 이는 토지 불평등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에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중 간 자산 분위의 격차 확대를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지니계수 는 중간 분위의 분포에 민감한 지표이기도 함.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그림 7-14] 서울시 토지의 자산 분위별 전체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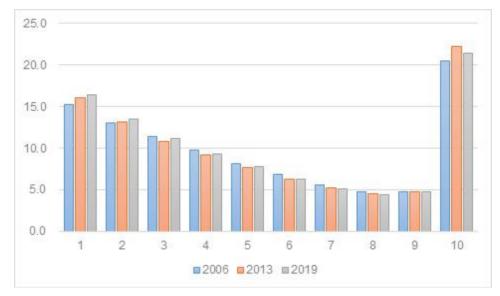
- 주택의 지니계수는 2006년 0.485, 2013년 0.434, 2019년 0.448로
  2010년대 초반에 불평등도가 떨어졌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음.
- 주택의 자산 분위의 기여도를 보면 2006년 대비 2019년에 상대적으로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한 분위는 1분위(2006년 17.7% → 2019년 17.9%), 8분위(2006년 4.2% → 2019년 4.3%), 9분위(2006년 5.7% → 2019년 5.9%), 10분위(2006년 20.3% → 2019년 21.7%)임[그림 7-15 참조].
  - 이는 건축물과 토지의 패턴과는 상이한 것임.
- 하지만 시기를 불변하고 하위 분위인 1-3분위 및 최고 분위인 10분위의 불평등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으며, 이는 앞의 건축물과 토지의 패턴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그림 7-15] 서울시 주택의 자산 분위별 전체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 주택의 분위별 불평등 기여도에서 건축물이나 토지의 그것과 다른 점은 9분위의 기여도가 그 이전 분위보다 높았다는 점임.
  - 중간 분위인 4-8분위의 불평등 기여도가 한 자리 숫자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9분위부터는 반전하여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경우 불평등 심화가 주로 자산 9분위와 10분위의 자산 상위 분위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 건축물, 토지, 주택을 합산한 전체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는 2006년
  0.625, 2013년 0.598, 2019년 0.586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과표가
  존재하는 서울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산 불평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림 7-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분위인 1분위와 2분위의 전체 부동산 재산 불평등 기여도가 시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최고 분위인 10분위는 2006년 20.5%, 2013년 22.2%, 2019년 21.4%이어서 2006년 대비 2019년 수치가 올라감으로써 저분위와 최고 분위에서 자산 불평등 도의 기여도가 늘어나는 자산 양극화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그림 7-16] 서울시 부동산 재산의 자산 분위별 전체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 o 3-9분위에서는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9분위부터는 자산 불평등 기여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
- o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재산 불평등도를 좌우하는 분위는 10분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

# 5\_소결

- o 주택 과표의 평균과 중위값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그 오름세가 매우 가 팔라졌음.
  - 평균값과 중위값 사이의 격차가 2014년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2018 년 이후 그 격차가 더욱더 커졌는데, 이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가격 격차 확대, 즉 가격 격차의 양극화를 수반하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음.
- 2019년 주택 과표의 평균값이 2.35억원이고, 평균 주택 공시가격이 60%
  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중이 60%로 잡으면, 평균 실거래가는 6.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KB 국민은행 시세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단독, 연립을 포함한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이 2019년 1월 63,819만원, 6월 63,998만원, 12월 현재 66.841만원이었음.
- 대략 추정한 서울시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와 KB 국민은행의 시세, 즉 평균 매매가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건축물의 불평등도는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2008-2013년 사이에 높아지고 주택가격이 오른 시기에는 그와는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 서울시 토지의 불평등도는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고, 그 이전에는 상승세였음.
- 2015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 간의 불평등도가 심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 부동산 총자산의 불평등도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최근에 주택가격의 급등세로 (10분위 평균/1분위 평균) 배율 이 늘어났음.
- 주택은 2006년 49.1% → 2013년 49.3% → 2019년 55.5%로 부동산 총
  자산의 지니계수 기여도가 증가하여 부동산 총자산 지니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 원천임.
- 건축물, 토지, 주택 등 자산 분위별 기여도를 보면 시기와 자산 유형을 불 문하고 1-3분위의 저분위 및 10분위의 최상위의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자산 양극화 패턴을 보여주는데, 불평등도의 심화에 가장 크게 기 여하는 분위는 최상위인 10분위임.
- o 주택의 경우에는 최상위인 10분위만이 아니라 9분위부터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다른 분위의 그것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



1\_서론 2\_분석 지표와 자료 3\_분석 결과

# 08. 소득 이동성 분석

# 1\_서론

#### 1) 문제제기

-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졌음. 특히, 최근에는 불평등 자체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한계적 유연화(비정규직 중심의 유연화)'와 로스쿨 도입 등 전문엘리뜨 자격 제도의 개편, 대학 입시에서의 수시의 확대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음.
  - 이 과정에서 불평등이 초래되는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단절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발전국가의 시기에는 새로운 기회 창출의 여지가 컸기 때문에 사회적 계층 이동이 활발하여, '상대적' 기회 격차의 문제 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성장률이 낮아지고 기회 확대가 정체 되면서 상대적 기회 격차의 문제와 사회이동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 음.
- 특히, 최근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에 대한 논란과 쟁점이 확산되고 있음.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인식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에서 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아질 가능성'에 대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91년 60.7%에서 2019년 29.4%로 감소



[그림 8-1] 계층 간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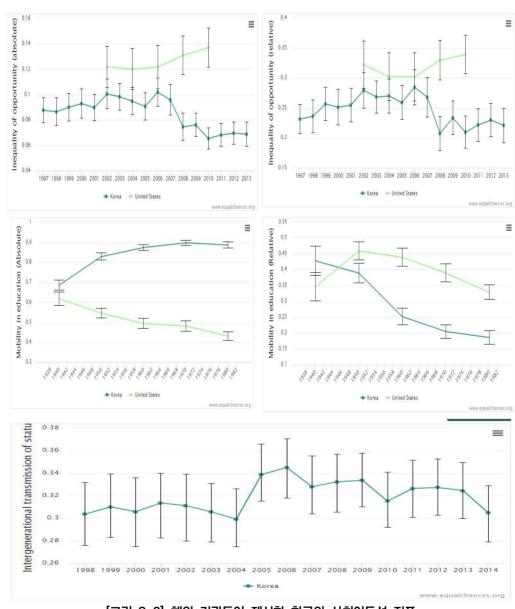
- 한국 사회 불평등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음. 반면에, 그리고 불평등을 초래한 원인과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연구를 사회적이동과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라는 맥락에서 접근한 연구는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본 연구는 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와 서울시의 사회 이동성을 파악해보고자 함.

#### 2) 사회이동성에 대한 기존 연구

- 기존의 국내 실증연구와 OECD, World Bank 등의 실증분석에서는, 지표 상의 이동성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기존의 연구들(김희삼 2009, 김봉근 외 2012)들도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0.2-0.3으로 낮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박현준(2020), (김창완 2020), 정인관 외(2020)도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의 세습은 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최근에도 사회

적 이동성은 저하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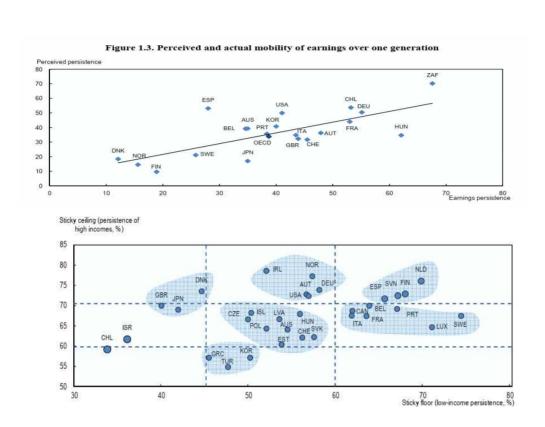
- 반면, 민인식(2017), 이경희· 민인식(2016)등은 1960~75년생 자녀에 비해 1976~96년생 자녀 그룹에서 기회불균등 정도가 더 크며, 청년층 일 수록 그들의 경제적 성과가 부모배경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이 더 높 아졌다고 실증분석하고 있음. 구교준·권혁용·서환주(2015)도 대학의 범위를 SKY로 한정할 경우 기회불평등 지수(소득분위별 대학입학가능성)가 크게 높아짐을 보였음.



[그림 8-2] 해외 기관들이 제시한 한국의 사회이동성 지표

자료: http://www.equalchances.org/web/index.php

- ㅇ 한국의 사회이동성과 기회불평등
  - OECD(2018)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이동성과 기회불평등은 OECD 중 간 수준 정도로 평가하고 있음.
  - 일본과 한국의 경우, 교육 이동성은 높은 반면, 소득 이동성은 OECD 평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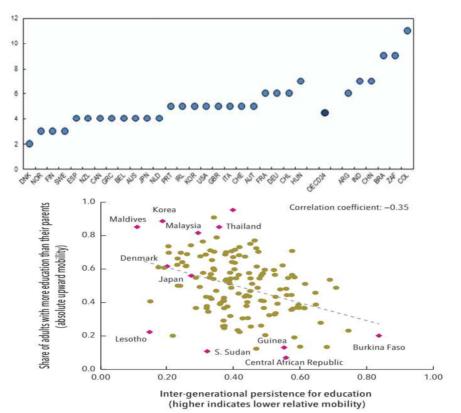


[그림 8-3] OECD와 Worldbank가 제시한 한국의 사회이동성 지표

자료: OECD(2018)

Figure 1.5. At the current level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t takes on average four to five generations for the offspring of a low-income family to reach the average income

Expected number of generations it would take the offspring from a family at the bottom 10% to reach the mean income in society



Source: Calculations based on data in GDIM 2018 (World Bank).

Note: 1980s cohort only.

[그림 8-4] OECD와 Worldbank가 제시한 한국의 사회이동성 지표

자료: OECD(2018)

-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실증 지표에서는 사회이동성 감소 현상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첫째, 실증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한국의 경우, 사회이동성 분석을 위한 장기 패널 자료가 미흡하여, 불편성 (unbiasedness)과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만족하는 추정치를 얻기 힘들다는 점에 기인할 수 있음.
  - 둘째,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교육의 현저한 양적 확대가 효과를 나타 남으로써 사회이동성이 약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임.

- 둘째,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교육의 현저한 양적 확대가 효과를 나타 남으로써 사회이동성이 약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임.
- 셋째, 전체 분포에서는 사회이동성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전체 분포의 상단이나 하단에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회이동성 연구를 진행할 것임.
  - 첫째,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규모가 큰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와 서울시의 사회이동성 관련 지표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여 기존의 서베이자료의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
  - 둘째,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규모가 큰 자료이기 때문에 세부 지역 수준에서의 이동성 지표와 지역의 특성이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수 있음. 서울시와 서울시 구 단위의 사회이동성 지표를 파악해보고자함

# 2\_분석 지표와 자료

# 1) 분석 지표

- ㅇ 소득이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는 매우 다양함
  - IGE(세대 간 탄력성, intergenerational elasticity)
  - IGC(세대 간 상관관계, intergenerational Correlation)
  - 순위 상관(순위-순위 기울기, Rank-rank slope or Spearman Rank Correlation
  - Conditional Expected Rank(조건부 예상 순위, CER)(CER25 = 25 분위 부모의 자녀 소득 순위)
  - 이행 확률(Transition Probabilites, TP)(*TP*20,80 = Pr(y1 > 80|y0 ≤ 20): 부모 하위 80분위에서 자녀 상위 20분위로)

- Directional Rank Mobility(ex: Upward Rank Mobility)(URM50,20 하위 50% 부모의 자녀 중에서 부모보다 20 분 위 상승할 확률)
- 절대적 이동성 지표(AU = Pr ( ychild > yparent)(부모소득을 능가할
  수 있는 확률)
- 형제 상관 sibling correlation:  $\rho$  =  $\sigma$ 2a /( $\sigma$ 2a +  $\sigma$ 2 $\mu$ )
- 이웃 상관 neighborhood correlation
- 기회불평등 지수(Index of In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 IOP)
- 세대 간 소득이동성에 관해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지만, 지표들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각각의 이동성 지표에서, 소득유형, 관찰단위, 측정단위가 달라짐에 따라 이동성의 개념, 해석,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서로 다른 지표들은 서로 다른 잠재된 메커니점을 파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생활 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음. 따라서, 한 지표에 집중하는 연구가 다른 차원에서의 이동성에 관한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 연구자들은 측정하고 하는 개념과 해석의 잠재적 한계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는 점. (Deutscher and Mazumder, 2021).
-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과 소득상관관계, 순위상관 등을 중심으로 분석 하고자 함.
- o 세대 간 탄력성(intergenerational elasticity, IGE)과 세대 간 상관관계 (intergenerational Correlation, IGC)
  - logYichild =  $a + \beta$  logYiparent  $+\epsilon i$
  - IGC=corr(ychild;yparent)
  - $IGE(\beta) = (IGC) \times (\sigma y child / \sigma y parent)$

- logYichild =  $a + \beta$  logYiparent  $+ \varepsilon i$
- IGE는 '평균으로의 회귀 정도'를 포착한다면, IGC는 '지위 이동성'을 포착한다고 볼 수 있음.
  - IGC는 일종의 이동성 지표. 자녀가 소득분포에서 동일한 지위를 차지 하기 위해 기대되는 정도를 나타냄
- o IGE는 부모와 자녀 소득의 관계와 한계 분포에 의해서 결정됨.
  - IGE는 IGC를 자녀로그소득 표준편차를 부모로그소득 표준편차로 나는 만큼 공분산 항목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IGC는 세대 간 불평등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IGE는 불평등 변화를 포함.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 비해 불평등 정도가 더 클 경우 IGE는 더 커지게 됨.
- $\circ$  소득 탄력성  $\beta$  의 의미
  - logYichild =  $a + \beta$  logYiparent  $+ \varepsilon i$
  - $\epsilon_{i} =$ 자녀 소득을 결정하는 다른 모든 요인들
  - Y가 결정되는 과정이 stationary하여, Y의 분산이 각 세대별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beta$  는 부모와 자녀 소득의 상관관계임. 다만,  $\beta$ 가 상관관계가 되려면,  $\epsilon$ i 와 Yiparent가 서로 독립적일 것을 필요로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음.
  - $\varepsilon i = ei + ui$
  - ei = 부모 소득에 따른 인적자본투자에 기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자녀가 가진 소득 역량(재능, endowments)
  - ei는 유전자(nature)와 양육(nurture)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자녀 특성들의 결합 효과를 나타냄.
  - 인종, 유전적 특성, 가족의 평판과 네트워크, 학습, 숙련, 목표, 기타 특정한 가족 문화에 속함으로써 얻어지는 일종의 '가족 상품 family

commodities' 등을 모두 포함

- ui = 시장에서의 운(market luck)
- 부모의 재능(ei-1)과 자녀의 재능(ei)은 서로 상관관계 AR(1)을 가짐.
- ei=  $\lambda$ ei-1 +  $\nu$ it where 0  $\langle \lambda \langle 1, \nu t$ 는  $\sigma 2 \nu$ 와 시계열적으로 독립적 임
- λ가 양의 값을 가지는 한(부모재능과 자녀 천부재능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εi 와 Yiparent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둘 다 et-1에 의존하기 때문임. 즉, 부모소득 이외의 소득결정요인들과 부모소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세대간 소득 상관관계는 단순히 β가 아니다.
- 상관관계는 다양한 패러미터들에 의존함. 자녀의 미래 소득에 대한 가족의 의사결정,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 세대 간 재능의 이전 강도, 세대 간 자산 이전이나 선별혼, 자녀에 대한 자원 배분의 차이나, 자녀들 사이의 상관관계, 시장에서 운과 재능 운에서의 분산의 크기 등등. 한 마디로, 부모 소득 이외에 다양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
- 이는 세대 간 이동성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Goldberger 1989).
- 간단한 예. 부모의 경우 소득-교육 관계가 약하고, 자녀의 경우 소득-교육 연계가 강하며, 부모의 교육이 (정보와 선호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회 A의 경우, 부모와 자녀 소득의 연계가약해서 소득이동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 소득 이동성에만 집중할 경우, 자녀 소득의 부모 특성에 대한 의존도는 모두 파악되지 않음. 부모 특성에 기초한 자녀 소득의 설명가능한 분산은 크지만, 부모 소득만으로는 매우 제한된 분산만 설명하게 됨
- 반면, 부모와 자녀 모두 소득-교육 연계가 높은 사회 B의 경우, 부모 소득은 자녀 소득과 밀접하게 연계됨. 따라서, 부모 교육 변수를 추정 식에 포함하더라도 자녀소득 예측력은 높아지지는 않음. 부모 소득만 으로도 높은 세대 간 이동성을 파악하는 '완전성' 정도가 높을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테스트해보는 간단한 방법은 교육을 예측변수로 선형모 델에 포함시키고, R2나 다른 적합도지표(measure of fit)를 검사해보는 것임. 자녀소득이 모든 예측변수에 대해서 선형일 것, 그리고 상호 작용항이 없을 것 이 두 가정이 충족될 경우에만 축약형 접근이 타당함.
- o 순위 상관 Rank-rank slope or Spearman Rank Correlation
  - $r1i = \alpha + \rho r0i + \varepsilon i$
  - rli = 자녀 소득 분위
  - r0i = 자녀 소득 분위
  - 스피어만 상관관계 1-  $\rho$ 는 강한 지위 이동성 지표를 제공
  - $\rho$ =0.4는 부모 세대에서 10 percentile 순위 차이가 자녀세대에서 4 percentile 차이를 의미.
  - 순위가 모집단 자체보다는 외부 벤치마크에 기초하여 고정될 때에는,
    ρ는 스피어만 상관관계라기보다는 rank-rank slope이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전국적 순위에 기초하여 지역 추정치를 산출할 경우, 이는 the Spearman correlation라기보다는 "rank-rank slope"라고 할 수 있음. (Dahl and Deliere(2008), Chetty et al (2014), Mazumder (2016))
  - R-R은 측정오차에 더 강건하고, 소득0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

#### ㅇ 분위소득상관관계 추정

- 부모소득과 자녀소득 간의 스피어만 상관계수
- CER25 = 25분위에서의 CER(Chetty et al (2014) 추정
- Chetty et al.(2014)는 29-32세 자녀소득을 측정하고 부모를 5년 평균 부모소득을 사용했는데, Mazumder(2020)는 40세 근처에서 측정할 경우 IGE가 0.6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Chetty et al(2014)는 R-R 감소로 세대 이동성이 증가했다고 분석.

그러나, 불평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족 배경은 과거보다 현재 더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해석. 다시 말해, 순위 대 개인의 소득을 사용할경우, 세대 간 지속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 간 비교에서도, 세대간 이동성은 개별 국가의 불평등 수준에 좌우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2) 자료와 표본

- ㅇ 사회이동성 분석 표본1
  - 전국 1985년~1990년생 출생자의 5% 샘플(개인)을 먼저 추출(2003년 기준으로 추출)
  - (1)에서 추출된 개인의 친족(1촌, 1촌 배우자, 2촌, 2촌 배우자)(해당 코드에 포함되는 친족 포함)((본인(0I), 배우자(0O), 부모(1A), 자녀 (1D), 손위형제자매(2A), 손아래형제자매(2D), 위아래가 불분명한 형제자매(2U), 양부모(1a), 양자녀(1d)))
  - 2003-2019년 각 년도에 한 번이라도 친족으로 연계된 사람은 모두 포 함
  - (1)과 (2)에 포함된 개인의 가구 정보(개인이 속한 가구주 ID를 기준으로 소속 가구원들의 정보까지 포함)

#### ㅇ 사회이동성 분석 표본2

- 전국 1955년~1995년생 출생자의 1% 샘플(개인)을 먼저 추출(2003년
  으로 기준)
- (1)에서 추출된 개인의 친족(1촌, 1촌 배우자, 2촌, 2촌 배우자)(해당 코드에 포함되는 친족 포함)(본인(0I), 배우자(0O), 부모(1A), 자녀 (1D), 손위형제자매(2A), 손아래형제자매(2D), 위아래가 불분명한 형제자매(2U), 양부모(1a), 양자녀(1d))
- 2003-2019년 각 년도에 한 번이라도 친족으로 연계된 사람은 모두 포함
- (1)과 (2)에 포함된 개인의 가구 정보(개인이 속한 가구주 ID를 기준으로 소속 가구원들의 정보까지 포함)

## 3 분석 결과

- o 자료 검증 차원에서 조건을 매우 제한해서 일차적으로 소득탄력성을 추정 하고자 함.
- ㅇ 기초 분석을 위한 표본 추출 방법
  - 위의 표본2에서 1987-1990년 출생자(자녀, C) 중에서 2006-2008년 도에 부(아버지)의 나이가 41-56세인 경우를 표본으로 추출함.
  - 1987-1990년 출생자들이 29-32세인 2019년 시점에 벌어들이는 소 득이 이들이 16-21세인 시점(2006-2008년)의 부(아버지)의 소득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추정하려고 함.
  - C의 2019년 총소득(Inc\_C)을 계산
  - C의 부의 총소득을 2006년-2008년 평균으로 계산 Inc\_P=Inc\_F+Inc\_M)
  - 종속변수 = log(Inc\_C)와 설명변수 = log(Inc\_P)인 단순 회귀 모형 을 추정해서 회귀값 추정

[표 8-1] 표본의 자녀와 부(아버지)의 출생연도와 연령

출생연도	연령				25세 출산 시 부의	35세 출산 시 부의	
EOL—	2019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출생연도	출생연도	
1987	32	19	20	21	1962	1952	
1988	31	18	19	20	1963	1953	
1989	30	17	18	19	1964	1954	
1990	29	16	17	18	1965	1955	
출생연도	25세에 출산한 부의		나이	.[이 35A		네 출산 부모 나이	
至らびエ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1987	44	45	46	54	55	56	
1988	43	44	45	53	54	55	
1989	42	43	44	52	53	54	
1990	41	42	43	51	52	53	

○ 일차적인 분석 결과인 [표 8-2]에서 볼 때, 부모소득과 자녀 소득 간의 탄력성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남녀 구분하지 않고 볼 때, 아버지소득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0.064로 서베이조사 결과치가 0.1-0.3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낮은 것으로 나 오고 있음.
- 남녀 구분해서 볼 경우, 남성은 0.063, 여성은 0.067로 큰 차이가 없음
- [표 8-3]에서 출생연도나 근속연수, 가입구분 등을 통제할 경우, 0.036 정도로 더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음.
- o 이렇게 소득탄력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건보공단자료가 저소득층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8-2] 소득에 대한 OLS 탄력성 추정 결과 1

변수	전체	남성	여성
Intercent	15.754***	15.912***	15.509***
Intercept	(0.078)	(0.097)	(0.125)
OUUTI A 드 코그가	0.064***	0.063***	0.067***
아버지 소득 로그값	(0.005)	(0.006)	(0.007)
Number of Observations Used	48,608	26,521	22,087
R-Square	0.004	0.0047	0.0039

주: \*\*\* p(0.01, \*\* p(0.05, \* p(0.1. ( )은 표준편차.

[표 8-3] 소득에 대한 OLS 탄력성 추정 결과 2(통제변수 포함)

변수	결과		
Intercept	14.616(0.034)***		
아버지 소득 로그값	0.036(0.002)***		
남성 더미	0.122(0.005)***		
1988년 출생 더미	-0.031(0.007)***		
 1987년 출생 더미	-0.065(0.007)***		
1990년 출생 더미	-0.096(0.007)***		
지역가입자 더미	-0.124(0.010)***		
근속년수	0.182(0.001)***		
Number of Observations Used	41,764		
R-Square	0.6022		

주: \*\*\* p(0.01, \*\* p(0.05, \* p(0.1. ( )은 표준편차.

○ [표 8-4]와 [표 8-5]에서 가구 자산 변수로 볼 경우, 가구자산로그값의 회귀계수값은 0.206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만, 부모 소득을 통제할 경우, 0.027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표 8-4] 소득에 대한 OLS 탄력성 추정 결과(가구자산 설명변수 포함)

변수	결과	
Intercept	14.238(0.142)***	
가구 자산 로그값	0.206(0.008)***	
Number of Observations Used	12,612	
R-Square	0.0532	

주: \*\*\* p<0.01, \*\* p<0.05, \* p<0.1. ( )은 표준편차.

[표 8-5] 소득에 대한 OLS 탄력성 추정 결과(기구자산 설명변수 포함, 통제변수 포함)

변수	결과	
Intercept	14.248(0.051)***	
아버지 소득 로그값	0.030(0.002)***	
- 가구 자산 로그값	0.027(0.002)***	
남성 더미	0.115(0.006)***	
- 1988년출생더미	-0.0307(0.008)***	
1987년출생더미	-0.067(0.008)***	
1990년출생더미	-0.103(0.008)***	
지역가입자 더미	-0.131(0.012)***	
근속년수	0.181(0.001)***	
Number of Observations Used	30316	
R-Square	0.599	

주: \*\*\* p<0.01, \*\* p<0.05, \* p<0.1. ( )은 표준편차.

○ [표 8-6]에서 성장 지역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서울이 0.078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전이 0.106으로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전반 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표 8-6] 지역별 OLS 추정 결과 (종속변수=소득로그값, 설명변수=아버지소득로그값, 통제변수 포함)

지어면 기어면 기가			
지역명	결과		
서울	0.078(0.010)***		
부산	0.069(0.018)***		
대구	0.046(0.021)**		
인천	0.059(0.021)***		
 광주	0.065(0.026)**		
 대전	0.106(0.026)***		
 울산	0.039(0.029)		
 경기	0.056(0.010)***		
 강원	0.101(0.026)***		
<del></del>	0.031(0.027)		
 충남	0.024(0.024)		
 전북	0.059(0.022)***		
 전남	0.063(0.024)***		
 경북	0.077(0.021)***		
	0.057(0.017)***		
 제주	0.077(0.037)**		

주: \*\*\* p<0.01, \*\* p<0.05, \* p<0.1. ( )은 표준편차.

- [표 8-7]에서 자녀소득의 백분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부모소득 백분위를 회귀 추정한 결과를 보면, 회귀계수값은 0.150 정도로 나오고 있음. 남성은 0.142, 여성 0.158로 차이는 크지 않은 편임.
  - 이는 부모소득분위가 10분위 높아질 경우, 자녀소득분위가 1.5분위정 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 Chetty et al.(2014)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한 값 0.341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수준임.

o 여타 변수들을 통제하여 추정한 [표 8-8]을 볼 경우, 0.084 정도로 나오고 있음.

[표 8-7] 소득 100 분위에 대한 OLS 탄력성 추정 결과

변수	전체	남성	여성
Intercept	41.731*** (0.283)	46.503*** (0.395)	36.449*** (0.395)
아버지소득 100분위	0.150*** (0.004)	0.142*** (0.006)	0.158*** (0.006)
Number of Observations Used	104,369	54,962	49,407
R-Square	0.0109	0.0096	0.0131

주: \*\*\* p<0.01, \*\* p<0.05, \* p<0.1. ( )은 표준편차.

### [표 8-8] 소득 100 분위에 대한 OLS 탄력성 추정 결과(통제변수 포함)

변수	결과	
Intercept	16.915(0.284)***	
아버지소득 100분위	0.084(0.003)***	
남성 더미	4.946(0.112)***	
1988년출생더미	-0.719(0.155)***	
 1987년출생더미	-2.128(0.156)***	
1990년출생더미	-3.148(0.159)***	
지역가입자 더미	-6.164(0.213)***	
근속년수	4.123(0.019)***	
Number of Observations Used	70,742	
R-Square	0.4886	

주: \*\*\* p<0.01, \*\* p<0.05, \* p<0.1. ( )은 표준편차.



1\_주요 발견 요약 2\_연구의 의의와 한계

# 09. 결론

# 1 주요 발견 요약

#### 1)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통계청 조사자료 비교

- 한국의 공식 분배지표 조사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건 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5년 귀속소득부터 국세청, 보건복지부를 비롯 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를 받아 소득정보를 보완하였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도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정보를 보완한 만큼 소 득에 대한 정보의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됨.
-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자료 간의 소득개념을 정리하고 최대한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소득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함.
- 소득개념뿐만 아니라, 가구의 개념 또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차이가 있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구 개념은 행정안전부 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세대 정보임.
  -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는 학업과 취업으로 동거하지 않더라 도 생계를 함께하면 동일한 가구로 분류함. 하지만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학업과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가구원은 다른 세대(가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추가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동 단위'의 동일주소와 친족관계 정보 를 이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개념과 유사한 가구도 정의해서 분석에 적용하였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총가 구 관계로 정의한 가구,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세대 기준의 가구 순으로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였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기준은 1인 가구를 과소 대표하는 문제가 있고,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주민등록세대는 행정적인 세대 분리로 인해 1인 가구를 과대 대표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그리고 각소득분위별로 비교한 결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있었음.
  - 첫째,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 자활소득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서 평균 근로소득이 낮았음.
  - 둘째,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사업소득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업소득에 비해서 대부분의 인구·사회적 집단에서 낮았고, 모든 분위의 평균에서도 낮았음. 1차연도 보고서에서도 짧게 언급하였지만, 낮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때문임.
  - 셋째,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금융소득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소 득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2018년 금융소득 까지는 2천 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파악하지 못했고, 2019년 금융소득 부터는 1천 만원 이하 금융소득을 파악하지 못함.
  -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금융소득이 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0.7%인 것에 비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61.1%임. 두 자료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의 비율의 차이가 60.4%p이니,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금융소득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이러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

와 상대빈곤율에 비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높게 나옴.

-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건강 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을 비교하였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본래의 목적은 국가의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 따라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이고 소득과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임.
  -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다양한 부가조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8월에 진행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에게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묻는 질문이 있음.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이 소득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인구조와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을 비교하였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소득이기 때문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소득으로 전화시켰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을 비교한 결과,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로소득 문제 가 또 발견되었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낮은 분위의 근로소득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 로소득보다 낮음.
  - 하지만 높은 분위의 근로소득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소득보다 높음.
  - 즉,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낮은 분위의 소득정보는 누락되어 있지만, 높
    은 분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장점이 있음.

# 2) 서울시 소득 분포 추이

1차연도 보고서의 연장 선상에서 2019년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서울
 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이를, 전국은 2018년과 2019년의 추

이를 분석하였음.

- 서울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만 20세 이상 성인 중 근로소득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2016년에는 42.7%였으나, 2019년에는 45.8% 였음.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라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인상되어서, 고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음.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2018년부터 꾸준히 근로소득자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6년부터 꾸준히 사업소득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임. 하지만 사업 소득자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꾸준히 감소하는 중임.
  - 사업소득자의 비율은 증가하지만, 사업소득자의 평균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노동의 형태가 유연화 되면서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인적 용역 사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런 직종에 있는 사업자들의 임금 은 불안정하고 낮기 때문에 평균소득이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금융소득자 비율은 0.47%에서 0.64%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2019년의 금융소득자 비율은 1.68%로 갑자기 크게 증가 하였음.
  - 2018년까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보유하고 있던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 소득은 포착하지 못했음.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금융소득의 과세기준이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기 때문임.
  - 하지만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앞서 금융소득 의 파악률을 높이고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부과하는 금융소득 기준이 2 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음.
  - 그 결과 2019년 귀속소득부터는 금융소득을 1천만원 이상이면 건강보

험공단 자료에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 2019년의 금융소득자 비율이 1.6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2018년 기준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 자의 비율이 3.65%에 불과한데, 2019년 기준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자 비율은 54.18%로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가 2019년에 갑자기 많이 포 함됨에 따라서 금융소득의 평균 소득이 2019년에 감자기 감소하였음.
- 금융소득의 파악 기준이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지만, 가계금융복 지조사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소득분배 에 관한 연구 자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득 파악의 사각 지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 만 60세 이상 공적연금소득자 비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이 있음.
  - 변동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2018년에 수급개시 연령이 1세 증가했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 성인 중 공적연금소득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 임.
  - 공적연금소득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 공적연금소득은 큰 변화 없이 800만원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음.
  -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지 않는 원인으로 공적연금이 성숙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고 있는데, 공적연금소득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공적연금소득이 낮은 수준이면 공적연금이 성숙화되더라도 노인 빈곤율 완화에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분배 현황을 지니계수와 상대 빈곤율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음.
  -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소득분배 현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음. 서울 기준 2016년에 지니계수는 0.579였지만, 2019년에는 0.563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상대빈곤율 또한 2016년에는 32.2%였으나, 2019년에는 30.8%로 감소하였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두 가지의 가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 는 주민등록세대 기준이고 다른 하는 인총가구 기준임. 2차 연도 보고 서에서는 인총가구 기준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도 분석하였는데, 주민등록세대 기준보다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더 낮게 나왔음.
-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주민등록세대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 이더라도 행정적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다른 가구(세대)로 분류 하기 때문에 인총가구 기준에 비해서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더 높 게 나타남.
-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을 분석할 때, 각 소득원천을 하나씩 추가했었을 때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해당 소득 원천이 소득분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 수 있음.
- 해당 분석을 진행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서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정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3) 서울시 1인 가구의 소득분배 현황

- 서울시는 2018년 기준 경기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인 가 구의 수가 122만 9,421가구로 가장 많음. 따라서 1인 가구는 서울시의 정책 입안에 있어서 중요한 집단 중 하나임.
-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구원 수와 가구주의 연 령을 교차 분석한 결과, 2016년 1인 가구가 36.0%였는데, 2019년에는 41.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1인 가구의 증가는 모든 연령대의 가구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30대와 40대임. 2019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o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가구(세대) 개념에 따라서 1인 가구의 비율에서도 차이가 발생함.
  - 전반적으로 주민등록세대 기준보다 인총가구 기준일 때 1인 가구의 비율이 감소함.

- 하지만 연령대별로 고려해보면, 청년층에서는 가구 개념이 달라져도 1 인 가구의 비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데, 고연령층에서는 가구 개념이 달라지면 1인 가구의 비율이 크게 변화함. 일례로 7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는 1인 가구 비율이 38.8이지만, 인총가구 기준으로는 31.6%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고 연령층에서 행정적인 세대 분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줌.
- o 1인 가구의 경제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와 평균 균등화 소득일 비교하였음.
  - 분석 결과, 가구원 수의 영향을 일부 조정한 균등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평균 총소득이 2019년 기준 2,177만원으로 4인 가구기준 4,668만원에 비해서 훨씬 취약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생각하기 쉬움. 하지만 1인 가구 내에서도 다양한 이질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례 수의 한계로 인해서, 연령대별 1인 가구의 평균 균등화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움.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행정 자료 로서 많은 사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하위 집단으로 분류 후에 분석할 수 있음.
  - 연령대별 1인 가구의 평균 균등화 소득을 분석한 결과, 가장 취약한 1 인 가구는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의 1인 가구임.
  -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1인 가구는 30대와 40대로 2019년 기준 균등화 총소득 평균이 각각 3,389만원, 2,876만원임.
  - 그리고 의외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집단이 50대 1인 가구임. 일반적으로 50대는 생애주기 과정에서 소득이 가장 높음. 하지만 50대 의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균등화 총소득 평균이 1,837만원으로 낮은 수 준임.

### 4) 서울시 청년층 소득 분포

- 어서울시는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중 하나임. 그렇기 때문에 청년 또한 서울시에서 중요한 인구 집단임.
- 청년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청년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여러 인구학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 본 보고서에서의 청년은 19세에서 34세로 정의했고, 청년 가구는 가구원 중에서 청년이 포함한 모든 가구로 정의하였음.
- o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중에서 가구주인 비율은 47.0%이고 가구원인 비율은 53.0%였음.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o 청년의 소득분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는 소속 가구의 가구원 수와 청년 가구주 여부임.
  -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가 많으면 청년의 균등화 소득은 높으며, 청년이 가구원인 경우에도 균등화 소득이 높음.
  - 이렇게 청년이 가구의 특성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청년과 동거하는 가구 구성원, 특히 부모의 소득의 영향이 크기 때문임.
- o 균등화 총소득을 10분위로 나눈 후에, 각 분위별로 가구원 수와 청년 가 구주 여부의 비율을 확인하였음.
  - 균등화 총소득이 1분위에 있는 청년들이 1인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기는 하나, 상당히 높은 분위에서도 여전히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1분위에 확실히 청년 가구주 비율이 57.4%로 다른 분위의 비율보다 높기는 하나, 2분위부터 9분위까지의 청년 가구주의 비율은 30% 내외로 큰 변화가 없음.
  - 따라서 청년 가구의 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년 1인 가구이냐, 그리고 청년 가구주이냐가 전부인 것은 아님.

- 청년의 소득 분배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특성 뿐만 아니라 청년의 인구학적 특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특히 연령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임.
- 30세-34세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로, 청년 가구주의 비율도 높은 편임. 그리고 1인 가구의 비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편임.
- 기존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되었음. 하지만 청년 1인 가구가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령층이 낮은 청년일수록 경제적으로 취약함.
-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때, 낮은 연령층의 1인 가 구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 5) 부동산 자산 분포 추정

- o 주택 과표의 평균과 중위값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그 오름세가 매우 가 팔라졌음.
  - 평균값과 중위값 사이의 격차가 2014년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2018 년 이후 그 격차가 더욱더 커졌는데, 이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가격 격차 확대, 즉 가격 격차의 양극화를 수반하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음.
- 2019년 주택 과표의 평균값이 2.35억원이고, 평균 주택 공시가격이 60%
  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중이 60%로 잡으면, 평균 실거래가는 6.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KB 국민은행 시세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단독, 연립을 포함한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이 2019년 1월 63,819만원, 6월 63,998만원, 12월 현재 66,841만원이었음.
  - 대략 추정한 서울시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와 KB 국민은행의 시세, 즉 평균 매매가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ㅇ 건축물의 불평등도는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2008-2013년 사이에 높아지고 주택가격이 오른 시기에는 그와는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 o 서울시 토지의 불평등도는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고, 그 이전에는 상승세였음.
- 2015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 간의 불평등
  도가 심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 부동산 총자산의 불평등도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최근에 주택가격의 급등세로 (10분위 평균/1분위 평균) 배율 이 늘어났음.
- 주택은 2006년 49.1% → 2013년 49.3% → 2019년 55.5%로 부동산 총
  자산의 지니계수 기여도가 증가하여 부동산 총자산 지니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 원천임.
- 건축물, 토지, 주택 등 자산 분위별 기여도를 보면 시기와 자산 유형을 불 문하고 1-3분위의 저분위 및 10분위의 최상위의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자산 양극화 패턴을 보여주는데, 불평등도의 심화에 가장 크게 기 여하는 분위는 최상위인 10분위임.
- o 주택의 경우에는 최상위인 10분위만이 아니라 9분위부터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다른 분위의 그것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

## 6) 소득 이동성 분석

- 전국 1955년~1995년생 출생자의 1% 샘플(개인)을 먼저 추출(2003년
  으로 기준)
- 위의 표본2에서 1987-1990년 출생자(자녀, C) 중에서 2006-2008년 도에 부(아버지)의 나이가 41-56세인 경우를 표본으로 추출함.
- 1987-1990년 출생자들이 29-32세인 2019년 시점에 벌어들이는 소
  득이 이들이 16-21세인 시점(2006-2008년)의 부(아버지)의 소득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추정하려고 함.

- C의 2019년 총소득(Inc C)을 계산
- C의 부의 총소득을 2006년-2008년 평균으로 계산 Inc\_P=Inc\_F+Inc\_M)
- 종속변수 = log(Inc\_C)와 설명변수 = log(Inc\_P)인 단순 회귀 모형 을 추정해서 회귀값 추정
- 일차적인 분석 결과인 [표 8-2]에서 볼 때, 부모소득과 자녀 소득 간의 탄력성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소득탄력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건보공단자료가 저소득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표 8-6]에서 성장 지역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서울이 0.078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전이 0.106으로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전반 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표 8-7]에서 자녀소득의 백분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부모소득 백분위를 회귀 추정한 결과를 보면, 회귀계수값은 0.150 정도로 나오고 있음. 남성은 0.142, 여성 0.158로 차이는 크지 않은 편임.

# 2\_연구의 의의와 한계

### 1) 1차연도 보고서와의 차이점과 연구의 의의

- 1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서울시의 소득분포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음.
  하였음. 하지만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에 대한 평가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음.
  - 1차 연도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서울시의 소득분포 시계열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
  - 그리고 1차 연도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인구학적 대표성 과 충분한 소득자 수를 포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음.
- ㅇ 하지만 1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소득'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부재하였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소득 정보를 이용하지만, 해당 소득 정보가 정확한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1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1차연도 보고서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건강보험 공단 자료의 소득에 대한 검토를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였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일 용근로소득과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낮은 분위 의 근로소득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차이가 있었음.
-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신고하는 자영업자가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서 모든 분위에서 사업소득 평균이 낮았음.
-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자의 비율이 0.7%로 매우 낮았음. 가계금융복지조 사의 금융소득자 비율은 61.1%인 것에 비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금융소득자의 비율은 너무 낮음.
- 1차연도 보고서와 2차연도 보고서의 두 번째 차이점은 2차연도 보고서는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임.
  - 서울시의 1인 가구의 수가 매우 많은 만큼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음.
  - 그리고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청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청년 가구가 주요한 인구 집단 중 하나임. 따라서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청년 가구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음.

#### 2) 연구의 한계

- 본 보고서의 한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하나는 자료의 한계이고,
  다른 하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한계임
- ㅇ 자료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다른 조사자료만큼 풍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못함. 일례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근로 상태에 대한 정보, 거주 주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건강보 험공단 자료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주제의 분석을 하는데 제약이 있음. 노동경제학에서는 근로형태와 근로상태에 대한 정보가 분석에서 중요한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해당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분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그리고 이러한 변수의 제약으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을 만들때,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을 이용한함.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가처분소득을 만들수 없기 때문에 가용한 변수만을 이용해서 제한된 의미로서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을 이용할수 밖에 없음.
- 마지막 자료의 한계로서, 다양한 가구 개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임. 소득분배 지표를 만들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개념은 OECD에서 만든 기준임. 가계금융복지조사도 OECD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전 강보험공단 자료가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 자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구개념으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도 필요함.
- ㅇ 본 보고서의 내용적 측면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패널 자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임.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패널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가 필요함.

# 참고문헌

강은나·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4).

구인회·강상경·김용득·홍백의·정찬미·한경훈·김동진, 2020,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및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낙년, 2016,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한국경제의 분석」, 22(3).

김낙년, 2020,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정책」, 27(1).

김봉근·석재은·현은주, 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추세", 「노동경제논집」, 35(2).

김비오. 2019,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3).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김수정, 2020,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 빈곤의 특수성", 「한국인구학」, 43(2).

김승연·유종성·최광은·이혜림·전병유·정준호·김민혜·이승주·유수진·박종헌·배세진, 2020, 「행정자료를 활용한 서울의 불평등과 빈곤연구(1차 연도): 건강보험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의 소득 및 자산분배」, 서울연구원.

김태완·강예은, 2020. "청년 가구의 경제 현황과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2020(6)

김태완·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017(2)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 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창환, 2020, "대학 졸업장의 직업 가치는 줄었는가", 미출간초고.

김희삼, 2009,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2009-03」, 한국개발연구원.

민경희·민인식, 2016, 「직업 및 소득 계층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현준, 2020, "세대간 사회 이동: 한국 사회 얼마나 개방적이 되어 왔나?"

변금선, 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3).

변미리, 2017,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서울연구원.

서울시 관악구, 2020, 「2020년도 재산세 이렇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손병돈·구인회·노법래·한경훈(2016)「맞춤형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종성·전병유·신광영·이도훈·최성수, 2020,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 「한국사회 정책」, 27(1).

유종성·김민혜·김승연·유수진, 2021, "소득분배 연구를 위한 건보공단 빅데이터의 의의와 한계: 서울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이태진·김태완·장의철·최은영·임덕영·윤여선·최준영·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오욱찬·이윤경·이원진·성재민·이길제·박형존·이병재, 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행정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승윤·이정아·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통계개발원

정경희. (2015).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 「보건·복지 Issue & Focus」, 300.

정인관·최성수·황선재·최율, 2020, "한국의 세대 간 계층이동과 교육 불평등: 기회 불평등은 심해져 왔는가"

정준호, 2020, "부동산 시가 평가체계 문제와 개선방안", 「2020 재정전문가네트워크 최종보고서 제출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ck, U.,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Vol. 13). Sage.

Chetty, R., Hendren, N., Kline, P., & Saez, E., 2014, Where is the land of opportunity? The geography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4), 1553–1623.

Dahl, M. W., & DeLeire, T., 2008,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earnings and fathers' lifetime earnings: estimates using administrative data.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avies, J. B., Fortin, N. M. and Lemieux, T. 2017, Wealth inequality: Theory, measurement and decompositio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50(5), pp. 1224~1261.

Deutscher, N. & Mazumder, B., 2020,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Australia: National and Regional Estimates Using Administrative Data'. Labour Economics, 66.

Emerald Group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1085-en.

Firpo, S., N., Fortin, M. and Lemieux, T., 2009,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s, *Econometrica*, 77(3), pp. 953~73.

Hampel, F. R., 1974, The influence curve and its role in robust estim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9(346), pp. 383~93.

Mazumder, B., 2016, Estimating the Intergenerational Elasticity and Rank Association in the United States: Overcoming the Current Limitations of Tax Data. In Inequality: Causes and Consequences (pp. 83–129).

Lerman, R. I., and Yitzhaki, S.,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 pp. 151–156.

Sastre, M and Trannoy, A., 2002, "Shapley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Some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Economics*, 9(1), pp. 51–89.

Shorrocks, A. F., 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 pp. 193–211.

Olivetti, C., & Paserman, M. D., 2015, In the name of the son (and the daughter):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1850–1940. American Economic Review, 105(8), 2695–2724.

http://kosis.kr/(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행정자료를 활용한 서울시의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연구(2차연도)

서울연 2021-CR-04

**발행인** 유기영

**발행일** 2022년 01월 3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0,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